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996-14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Ministry of Justice · Republic of Korea 2018





발간사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 조치는 2018년 1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작으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상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통상법 301조 발동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강력한 보복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의 실행 정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 될수록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간재 수요 동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미중 통상분쟁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간의 통상분쟁 가능성 또한 큰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은 사드 보복조치로서 한국 내 롯데마트 영업금지 및 중국인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마트 및 우리나라 관광업계 등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해당 보복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앞으로 언제 어떻게 통상보복조치를 부과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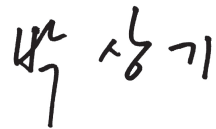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통상분쟁의 진행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한중 통상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통상분쟁 사례를 분석 및 검토하고, 향후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는 이번에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님, 전북대 강문경 교수님 그리고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태정 전문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책을 널리 활용하여 중국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집필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집필 과정에서 기울여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18년 8월

법무부장관 



목차 Contents

Ⅰ 요약문 _ X

— FOCUS 1 서 론 _ 1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FOCUS 2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과 평가 _ 5

- Ⅰ.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법원 5
- Ⅱ. 반덤핑조례 7
 - 1. 개관 7
 - 2. 반덤핑 조례의 주요 내용 8
 - 3. 평가 22
- Ⅲ. 반보조금조례 30
 - 1. 개관 30
 - 2.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유형과 현황 31
 - 3. 반보조금조례의 주요 내용 39
 - 4. 평가 52

IV. 세이프가드조례	60
1. 개관	60
2. 세이프가드 조례의 주요 내용	61
3. 평가	67
V. 시사점과 대응방안	71
1. 반덤핑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71
2. 반보조금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	76
3. 세이프가드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	79

3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사례 분석_85

I. 개 관	85
II. 반덤핑관세 분쟁 사례	87
1. 중국-X-ray 장비 사건	87
2. 중국-스테인레스 철강 사건	89
III.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중복부과 분쟁 사례 ...	91
1. 중국-전기강판 사건	91
2. 중국-닭제품 사건	93
3. 중국-자동차 사건	95



목차 Contents

IV.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98
1. 철강 세이프가드	98
2. 설탕 세이프가드	99
V. 평가와 시사점	101



4 한국과 미국의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 _ 103

I. 중국의 통상정책	103
1. 개관	103
2. 중국의 WTO 통상분쟁 해결정책	105
II. 최근의 한-중 통상분쟁과 시사점	108
1.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개관	108
2.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	112
3. 시사점과 대응방안	131
III. 최근의 미-중 통상분쟁과 시사점	140
1. 미-중 통상분쟁의 현황과 전망	140
2. 중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 ...	150
3. 시사점	151

— FOCUS 5 결 론_ 153

— FOCUS 참고문헌_ 157

— FOCUS 부록: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규_ 165



표 목차 Table Contents

〈표 1-1〉 한국에 대한 형태별 무역구제조치 발동 추이 (2017. 10. 9 기준)	2
〈표 1-2〉 한국에 대한 국가별 무역구제조치 발동 추이 (2017. 10. 9 기준)	3
〈표 2-1〉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	6
〈표 2-2〉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형태와 유형	34
〈표 2-3〉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38
〈표 3-1〉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의 판정 결과 비교	97
〈표 3-2〉 중국의 설탕 세이프가드조치	100
〈표 4-1〉 국가별/연도별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 추이	106
〈표 4-2〉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현황	114
〈표 4-3〉 미국 행정부의 무역규제 유형 및 근거	141
〈표 4-4〉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개시 및 조치 시행현황	144
〈표 4-5〉 중국-미국간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현황	147



그림 목차 Figure Contents

〈그림 3-1〉 중국의 설탕 수입동향	100
----------------------------	-----



요약문

본 연구과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무역구제조치의 증가 및 강화,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증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통상-외교 연계정책의 강화로 특징 지워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특히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의 운영 실태와 국제통상분쟁 사례를 분석·검토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중국 무역구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을 반덤핑조례와 반보조금 조례 및 세이프가드조례를 중심으로 각각 소개한 후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분쟁사례를 반덤핑관세와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사례 및 세이프가드 분쟁사례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평가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정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최근의 한-중 통상분쟁 및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식을 각각 분석하고 특히 WTO 협정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평가한 후,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운영과 관련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된 2001년 11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제정·개정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보장조치조례)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는데, 동 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기존 무역구제 제도의 내용과 실무적 집행절차를 관련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평가된다.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는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구제 관련 조항과 함께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동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은 2002년 2~3월에 거쳐 세부 시행세칙(部門規章) 19건을 제정, 공표 하였다. 중국법 체계상 ‘대외무역법’은 법률, 조례는 행정법규인 총리령, 부문규장은 부령에 각각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는 2004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다.

2014년에 개정된 ‘반덤핑조례’(총 6장, 59개 조문)는 총칙, 덤핑 및 피해,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치(잠정조치, 가격약속, 반덤핑관세), 기한과 재심, 부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반보조금조례’(총 6장, 58개 조문)는 총칙, 보조금 및 피해, 반보조금조사, 반보조금조치(잠정조치, 가격약속, 상계관세), 기한과 재심, 부칙, 수출보조금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이프가드조례’(총 5장, 34개 조문)는 총칙, 조사, 세이프가드조치, 기한과 재심,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례의 부칙은 보복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요약문

중국은 WTO 가입시 무역구제 관련 국내법규에 대해서도 관련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체로 ‘대외무역법’과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및 ‘세이프가드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의 무역구제에 관련된 상기 조례들은 관련 WTO 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미비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무역구제 제도를 남용하고 국제통상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시 반드시 분쟁해결기구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무역구제 관련 분쟁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당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지침의 결여로 인한 무역구제 관련 조례의 자의적 해석과 통상분쟁 개연성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무역구제도의 운용시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중국 조사기관에 요청하도록 한다. 둘째, 무역구제 관련 조례와 관련 WTO 협정에 세부지침이 결여된 경우, ‘한-중 FTA’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원용

하도록 한다. 셋째, 무역구제 관련 조례와 관련 WTO 협정에 세부 지침이 결여된 경우,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원용하거나 구체적인 절차규칙을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한다. 넷째,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허용하는 중국의 무역구제법규는 보복조치의 발동에 관한 절차 및 제한과 '상응한 보복조치'의 수준 등에 관한 기준 및 세부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DSU)에서 금하고 있는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국내법 규정이라 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한다.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협정'과 '분쟁해결양해'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을 고려하면서 관련 협정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일방적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중 FTA'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한중 무역구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중국의 무역구제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관련 조사과정에 한국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당한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중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모두 5건인데,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제소된 2건(중국-X-Ray 장비사건, 중국-스테인레스 철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중국-전기강판 사건, 중국-닭제품 사건, 중국-자동차 사건)은 모두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요약문

대한 위반을 이유로 제소된 것이다. 2018년 1월 현재 중국 상무부의 셰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된 사건은 없다.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DSB에 회부된 사건에서 패널 및/또는 상소기구는 중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고, 중국정부는 이행수준에 있어 제소국의 이의제기로 이행패널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대체로 DSB의 권고 및 판정에 부합되는 시정조치(철회)를 취하였다. 특이한 점은 상기 5건의 사건 모두가 무역강국인 미국과 EU 및 일본이 제소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관련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통상분쟁 사건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2018년 1월 현재까지 총 56건인데, 피소 건수(39건, 69.6%)가 제소 건수(17건, 30.6%)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은 중국의 자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규제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별 분쟁건수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과 EU가 對中 통상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5% (44건)로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즉 미국과 EU가 중국을 제소한 피소 건수는 29건으로서 중국 전체 피소 건수(39건)의 74.4%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제소한 건수 17건의 대부분(15건, 88.2%)이 미국과 EU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2009년 이후 중국과 관련된 WTO 통상분쟁 건수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반덤핑제소에 대해 중국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간의 중국의 WTO 분쟁해결 정책은 선진국(미국, EU 등)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입각한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보다는 양자간 협의 및 외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협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통상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2002년부터는 역으로 ‘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에 관련된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제보복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일방적 제재를 불법적인 것으로 비난해온 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증대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국제관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신정부(2002~2008)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기인한 것이라 추론된다.

중국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사례(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 포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 결과와 자국의



요약문

국제법적 이익을 유지하고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방적인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최근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자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재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당국은 사드 배치와 유사한 경제보복조치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고 우리의 외교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에 의해 제소당한 통상분쟁은 2018년 1월 현재 총 21건이며,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는 11건에 달하는데, 이중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5건은 위에서 소개된 중국 -X-ray 장비 사건(DS425), 중국 -스테인레스철강 사건(DS454), 중국 -전기강판 사건(DS414), 중국 -닭제품 사건(DS427), 중국 -자동차 사건(DS440)이다.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에 해당하는 11건의 통상분쟁 중에서 기타 6건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건으로 분쟁해결 절차 진행 도중에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로 철회되었거나(DS358, DS387, DS419, DS450), 패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DS489, DS519)이다.

특이한 점은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동 6건(즉 철회, 중단, 진행 건수)의 분쟁사례는 반덤핑관세 조치가 아닌 주로 중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DSB에 회부된 점이다. 그리고 상기 11건의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은 반덤핑관세 및/또는 상계관세가 원용된 사례들이나 세이프가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WTO에 회부된 무역관련 통상분쟁사례 11건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총 21건 통상분쟁의 52.4%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적용에 있어 명료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거나, 피해 산정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미국정부는 상무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무역구제조치 건수와 강도를 높여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리라 전망된다. 예상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i) 상무부의 자체조사 개시, ii) 불리한 입수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적극 활용, ii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불인정 등이 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고려해 볼 때, 미국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무역제재의 활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나,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되며 다자무역 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양자적 해결보다는



요약문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WTO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 관련 규정에 입각한 양자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 무역구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관한 본 연구는 국제통상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경향에 대한 진단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철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을 기치로 심각한 무역적자를 초래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보다 강화된 수입규제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시진핑 행정부 또한 對한국 사드 경제보복조치에서 보다시피 자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관철하는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무역구제조치의 증가 및 강화이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된 분쟁 531건 중에서 265건이 무역구제관련 사건으로서 전체의 절반 가량이 무역구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 총 265건의 무

역구제 분쟁 중에서 약 80%가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 관련 분쟁으로, 각각 98건, 96건이 제기되었으며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이 동시에 원용된 사건도 21건에 달한다.¹⁾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국내산업피해 구제제도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 및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한 핵심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증가이다. 2017년 10월 9일 현재 한국에 대한 형태별 무역구제 건수는 반덤핑 147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36건으로, 반덤핑관세 부과가 전체 무역구제의 77%를 차지한다(〈표 1-1 참조〉). 〈표 1-2〉에서 보듯이, 2017년 10월 9일 현재 한국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취한 국가는 인도,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 순서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FTA 체결이후 증가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여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1-1〉 한국에 대한 형태별 무역구제조치 발동 추이 (2017. 10. 9 기준)

형 태	반덤핑 (AD)	반덤핑/상계조치 (AD/CVD)	상계조치 (CVD)	세이프가드 (SG)	총계
건 수	147(28)	7(0)	0	36(12)	190(40)

* 주: ()은 전체건수 중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 출처: 한국무역위원회, “대한 수입규제 현황”, 『무역구제』, 제59권(2017. 9), 156면.

1) 한국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제59권, 2017년 가을호 (2017.9.30), 101면.

〈표 1-2〉 한국에 대한 국가별 무역구제조치 발동 추이 (2017. 10. 9 기준)

국가	인도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	캐나다	태국	호주	인니	기타	총계
건수	31(3)	31(8)	14(3)	14(5)	11(1)	10(1)	9(1)	8(1)	7(1)	55(16)	190(24)

* 주: 여기서의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의미함.

** 출처: 한국무역위원회, “대한 수입규제 현황”, 『무역구제』, 제59권(2017. 9), 156면.

넷째, 정치적 목적을 위한 통상-외교 연계정책의 강화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자국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영토분쟁, 인권, 안보 등 핵심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통상-외교정책 연계하는 경향이 현저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자국의 핵심적인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방적인 경제적 제재 또는 보복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는 무력의 행사 또는 위협이 금지된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리라 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무역구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관한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중국정부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의 운영 실태와 중국과의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사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중국정부의 부당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무역구제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기초로 분석 및 평가하는 전통적인 문헌적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무역구제에 관련된 중국의 국내법규와 관련 WTO 협정(특히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을 비교하는 비교법적 분석방식과 함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와 관련해서 무역구제의 집행과 통상분쟁해결 방식에 관련된 중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관련 무역구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적 접근방식도 적절히 도입하였다.

중국 무역구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을 반덤핑조례와 반보조금조례 및 세이프가드조례를 중심으로 각각 소개한 후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분쟁사례를 반덤핑관세와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사례 및 세이프가드 분쟁사례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평가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정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최근의 한중 통상분쟁 및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국 및 미국의 대응방식을 각각 분석하고 특히 WTO 협정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평가한 후,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운영과 관련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제2장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과 평가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법원

산업피해구제제도라고도 불리우는 ‘무역구제제도’란 관세인하와 수입자유화 등을 통한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규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역구제(trade remedy)를 위해 취해지는 통상규제조치에는 덤핑행위 및 보조금 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 발동되는 반덤핑 및 상계 조치와 수입증으로 인한 ‘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 발동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된 2001년 11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제정·개정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보장조치조례)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는데, 동 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내용과 실무적 집행 절차를 관련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평가된다.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는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구제 관련 조항과 함께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동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은 2002년 2~3월에 거쳐 세부 시행세칙(部門規章) 22건을 제정, 공표하였다.²⁾ 중국법 체계상 ‘대외무역법’은 법률, 조례는 행정법규인 총리령, 부문규장은 부령에 각각 해당한다.³⁾

〈표 2-1〉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

유형 구분	이행현황
반덤핑 관련 시행세칙	1.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傾銷調查聽證會暫行規則) 2. 반덤핑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傾銷調查立案暫行規則) 3. 반덤핑조사 현지실사 잠정규칙 (反傾銷調查實地核査暫行規則) 4. 반덤핑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傾銷問卷調查暫行規則) 5. 반덤핑조사 표본추출 잠정규칙 (反傾銷調查抽樣暫行規則) 6. 반덤핑 정보공개 잠정규칙 (反傾銷調查信息披露暫行規則) 7. 반덤핑조사 공개정보열람 잠정규칙 (反傾銷調查公開信息查閱暫行規則) 8. 반덤핑 가격약속 잠정규칙 (反傾銷價格承諾暫行規則) 9. 반덤핑 새수출상 재심 잠정규칙 (反傾銷新出口商復審暫行規則) 10. 반덤핑 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傾銷退稅暫行規則) 11.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 잠정규칙 (關於反傾銷產品範圍調整程序的 暫行規則)
보조금 관련 시행세칙	1.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補貼調查聽證會暫行規則) 2. 반보조금 조사입안 잠정규칙 (反補貼調查立案暫行規則) 3.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補貼問卷調查暫行規則) 4. 반보조금조사 현지실사 잠정규칙 (反補貼調查實地核査暫行規則)
세이프가드 관련 시행세칙	1. 세이프가드(보장조치)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調查立案暫行規則) 2.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保障措施調查聽證會暫行規則) 3. 세이프가드 제품 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칙 (關於保障措旣產品範圍調整程序的 暫行規則)
산업피해 관련 시행세칙	1. 산업피해조사 공청회칙 (産業損害調查聽證規則) 2. 반덤핑산업피해 조사규정 (反傾銷産業損害調查規定) 3. 보조금산업피해 조사규정 (反補貼産業損害調查規定) 4. 세이프가드(보장조치) 산업피해 조사규정 (保障措施産業損害調查規定)

2) 이승영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체계와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2004. 6), 637-638면 ; 최송자,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34호(2005. 6), 181면.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에는 반덤핑 관련 시행세칙 11건, 반보조금 관련 시행세칙 4건, 세이프가드 관련 시행세칙 3건, 산업피해 관련 시행세칙 4건이 있다.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송자,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이해』, 한국학술정보(2006) 참조.

3) 행정법규는 중국의 국가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공포하는 규범성 문건으로 규정(規定), 결정(決定), 조례(條例), 판법(判法), 잠행조례(潛行條例), 통지(通知), 해석(解釋) 등 명칭이 다양하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는 2004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례들은 과거 대외경제무역협작부와 경제무역위원회가 관할하던 조사를 모두 ‘상무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통합하고 몇몇 조항만을 개정한 것이다. 이하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를 중심으로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반덤핑조례

1. 개관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반덤핑 관련 절차규칙을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대외무역법’과 ‘반덤핑조례’ 및 ‘시행세칙’에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

2004년 4월 6일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구제와 관련된 규정이 대폭 보완되고 추가되었는데, 중국에 대한 무역관련 차별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제8조), 덤핑조사(제37조), 조사방법 및 결과의 공고(제38조),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국가이익 보호(제40조), 반덤핑조치(제41조), 제3국 시장 수출을 통한 반덤핑행위(제42조), 경제무역조약·협정 당사국의 위반에 대한 보복

조치(제47조), 대외무역 관련 협상 및 분쟁해결(제48조),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반회피조치(제50조) 등이 반덤핑조치에 관련된 조항이다.

2004년에 개정된 ‘반덤핑조례’(총 6장, 59개 조문)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상무부로 조사 및 관할기관을 통합하였고, 둘째, 반덤핑관세는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을 강화하였다. 특히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반덤핑제도의 운용이 특정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이익의 보호라는 정책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⁴⁾

2. 반덤핑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 적

중국 ‘반덤핑조례’의 목적은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반덤핑관세 부과와 발동요건

‘반덤핑조례’상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i) 덤핑이 존재해야 하고, ii) 덤핑수입이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의 발생

4) 강효백, 「G2 시대 중국법연구」(한국학술정보, 2010), 339면.

또는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여야 하며,
 iii)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① 덤핑의 존재

‘반덤핑조례’상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 중 수입제품이 그 정상가격 이하의 수출가격으로 중국시장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제3조). 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무역과정’이란 정상적이지 못한 무역과정, 예컨대 WTO ‘반덤핑협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수출가격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 ‘반덤핑조례’는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교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제4조 제1항).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해당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에 대해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동종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의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해당 동종제품의 원산지(지역, 국가) 생산비용 및 합리적으로 산출한 부대비용에 이윤을 더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제4조 제2항). 수입제품이 직접 원산지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닌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확정한다. 다만, 제품이 수출국에서 단순히 환적했거나 제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출국 중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종제품의 원산지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제4조 단서).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은 상황에 따라 첫째, 수입제품이 실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할 가격이 있는 경우 동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하며, 둘째,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수입제품을 최초 독립구매인에게 전매한 가격에 근거해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이라 한다. 다만, 해당 수입제품이 독립구매인에게 전매되지 아니한 경우나 수입된 상태로 전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무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할 수 있다(제5조).

‘덤핑마진’은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부분을 의미한다. 덤핑마진의 산정방법에 대해 ‘반덤핑조례’는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불변요인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비교해야 하며, 덤핑마진의 확정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거나 또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일일이 거래한 기초로 비교해야 한다. 수출가격이 구매인, 지역, 시기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여 전관 규정에 의해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단일 수출거래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제6조).

② 국내산업피해의 존재

국내산업의 ‘피해’란 덤핑으로 인해 이미 확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의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담당하며, 그중 농산물과 관련된 반덤핑 국내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을 통해 진행한다.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할 경우, ‘긍정적[명백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덤핑수입제품의 수량(덤핑수입제품의 절대수량 또는 국내동종제품과 비교할 때 생산 또는 소비된 양의 대량증가 여부, 또는 덤핑수입제품의 대량 증가가능성을 포함), 덤핑수입제품의 가격(덤핑수입제품의 가격 삭감 또는 국내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 억제, 압박 등의 영향 발생을 포함),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덤핑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지(지역)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 재고 현황,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인을 심사해야 한다(제8조).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단순한 고발, 추측 또는 지극히 낮은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아니되며,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덤핑 이외의 요소로 야기된 피해를 덤핑의 원인으로 돌려서는 아니된다(제8조 단서).

‘반덤핑조례’에서는 누적평가(cumulative assessment)의 요건을 덤핑수입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역)로부터 수입되고 동시에 두 가지 조건(① 각 국가(지역)에서 수출된 덤핑수입제품의 덤핑마진이 2% 이상이며 그 수입량이 미소물량을 초과하고, ② 덤핑수입제품간 및 덤핑수입제품의 중국 국내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을 누적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여기서 ‘미소물량’(무시할만한 수준 또는 최소 허용수준)이란 1개 국가에서 수출된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다만 3% 이하인

국가의 총수입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제9조). 누적평가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제3.3조)과 동일하다.

‘반덤핑조례’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수입제품의 영향 평가는 국내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확정하되,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동종제품을 포함한 최소한의 제품군 또는 범위내의 생산에 대한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제10조). 여기서 ‘국내산업’이란 중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총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⁵⁾ 그러나 국내생산자가 수출입업체와 관계가 있는 경우나 생산자가 그 상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데,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내의 한 ‘지역시장’내 생산자가 그 시장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동종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에서의 동종제품의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역의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아닐 경우 하나의 단독산업으로 볼 수 있다(제11조).

‘반덤핑조례’에서 ‘동종제품’(like products)이란 덤핑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의미하며, 동일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간주한다(제12조). 동종제품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 제2.6조(“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제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제품 즉, 고려중에 있는 제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제품을 의미하

5) 여기서 ‘주요 부분’이란 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나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가리킨다. 다만 신청인의 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50% 미만이면,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와 신청을 반대하는 국내생산자 가운데 신청지지자의 생산량이 신청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 신청은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반덤핑조사입안잠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며, 그러한 제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제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⁶⁾

③ 인과관계의 존재

‘반덤핑조례’에서 상무부는 특수상황 하에서 서면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덤핑과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안 조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제18조),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확정할 경우 반드시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덤핑 이외의 요소로 야기된 피해를 덤핑의 원인으로 돌려서는 아니된다(제8조 단서).

3) 반덤핑관세 부과와 신청절차와 제소자 적격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체(이하 “신청인”)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① 신청자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②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즉 제품의 명칭,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지(지역, 국가), 이미 알려져 있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수출국 또는 원산지의 국내시장의 소비가격 정보, 수출가격 정보 등, ③ 중국 동종제품의 생산수량 및 가격,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6)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은 동종제품의 판정시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용도, 생산 설비와 기술,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제품의 대체성, 판매 경로,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 이는 동종제품의 해석에 관한 WTO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주요 판시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보조산업피해조사규정(제11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미치는 영향, ④ 신청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제14조). 신청서에는 또한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덤핑 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5조).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경우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지지를 표명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제17조). 신청절차와 제소자 자격에 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⁷⁾

4) 조사절차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 신청서 내용 및 첨부된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입안조사[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입안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제16조). 다만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의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덤핑과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제18조).

7) 다만 ‘반덤핑조례’와 달리 반덤핑협정⁷⁾에는 국내 동종제품 생산자의 피고용인[노동자] 또는 그 대표자[노동조합]도 조사의 신청 또는 신청지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5.4조, 각주 14).

입안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무부는 이를 공고하는 동시에 신청인 및 관련 수출업체와 수입기업, 수출국(지역)의 지역 및 기타 이해 관계조직체, 개인(이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입안조사 결정이 공고됨과 동시에 상무부는 관련 수출업체와 수출국 정부에 신청서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제19조). 상무부는 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무부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과 논거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담당자를 관련 국가에 파견해 조사할 수 있다(제20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조사에 이해관계인은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정한다(제21조). 상무부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허가하나, 다만 비밀로 처리된 자료는 제외된다(제23조).

이해관계인은 제공된 자료가 누설돼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무부에 대해 해당자료의 비밀유지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유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자료를 비밀유지자료로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비밀유지가 필요없는 해당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 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제22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 피해와 양자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예비판정에 의해 덤핑,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마진, 피해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하고 공고한다.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상무부는 최종판정이 근거한 기본사실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25조). 반덤핑 조사는 입안조사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26조).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즉 ①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덤핑, 피해 또는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④ 덤핑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피해가 미소불량인 경우, ⑤ 상무부가 반덤핑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에서 조사 대상 수입제품이 상기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료되며, 상무부가 그 사실을 공고한다(제27조).

5) 잠정 반덤핑조치

예비판정으로 덤핑성립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① 잠정 반덤핑관세의 징수, ②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 제공 요구)의 ‘잠정 반덤핑조치’(이하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데, 잠정 반덤핑관세액 또는 제공한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금액은 예비판정을 거쳐 확정된 덤

평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제28조). 잠정 반덤핑관세의 징수는 상무부의 제안에 기초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함.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무부가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며, 세관은 공고에 규정된 실시일부터 집행한다(제29조).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잠정조치의 결정공고에 규정된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수한 경우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반덤핑 입안조사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제30조).

6) 가격약속

덤핑수입제품의 수출업체는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상무부와 가격변동 또는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가격약속’을 할 수 있다.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s)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인상 조정하여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절차가 정지되거나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격약속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거의 동일하다.⁸⁾

상무부는 수출업체에게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가격약속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제31조). 수출업체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거나 가격약속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덤핑 안전에 대해 조사 및 확정은 방해하지

8)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에서는 가격약속을 “조사에 임하는 수출상과 생산업자가 외경무부(현재는 상무부)를 향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덤핑가격으로 피조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상무부의 접수를 거쳐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약속(승낙)”으로 정의한다(제3조).

못한다. 수출업체가 계속해서 수입제품을 덤핑할 경우 상무부는 피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제32조).

수출업체가 제안한 가격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공공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거나 잠정 반덤핑조치 또는 반덤핑관세 징수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덤핑 조사중지 또는 종료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는데, 상무부가 가격약속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수출업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1차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가격약속을 요구하거나 접수해서는 아니된다(제33조).

반덤핑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업체의 청구에 따라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덤핑 및 피해에 대해 계속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해 부정적 판정이 났을 경우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긍정적 판정이 났을 경우 가격약속은 계속 유효함(제34조). 상무부는 수출업체에게 가격약속 이행 관련 상황과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제35조).

수출업체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조사 재개를 즉시 결정할 수 있고,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입각하여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발동 90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약속 위반 이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된다(제36조).

7) 반덤핑관세의 부과

최종판정으로 덤핑이 성립된다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덤핑관세는 마땅히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제37조). 반덤핑관세의 납세자는 덤핑제품을 수입한 기업이다(제40조). 반덤핑관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며, 세관은 공고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집행한다(제38조).

반덤핑관세는 최종판정 공고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되지만, 본 조례 제36조(가격약속 위반 시)와 제43조 및 제44조(소급적용 시)에서 규정된 상황은 제외된다(제39조). 반덤핑관세는 상이한 수출기업의 덤핑마진에 따라 각각 확정해야 하는데, 심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기업의 덤핑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합리적 방식에 따라 적절한 반덤핑관세를 확정해야 한다(제41조). 반덤핑관세의 세액은 최종판정시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2조).

수입제품이 반덤핑관세를 징수당한 후 조사기간 중 해당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은 신규 수출업체가 반덤핑관세를 징수받은 수출업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에 덤핑마진에 대한 단독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기간 중 본 조례 제28조 제1관 2호에 규정된 조치(즉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제공 요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해당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제47조).

8) 소급적용과 환급

최종판정에 의해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하고, 아울러 이미 잠정

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관세는 이미 잠정조치를 취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다. 최종판정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우려가 존재한다고 확정하고, 사전에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정해 이미 잠정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다(제43조). 다만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반덤핑관세가 이미 납부했거나 또는 납부해야 할 잠정 반덤핑관세 또는 예상되는 담보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징수하지 않으며, 반덤핑관세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잠정 반덤핑관세 또는 예상되는 담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환급하거나 다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제43조).

그러나 두 가지 상황(첫째,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수출업체가 덤핑행위 또는 덤핑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해당 수입기업이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둘째, 덤핑수입제품이 단시일에 대량 수입되어 곧 실시되는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를 엄중하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실시 90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으나, 다만 입안 조사하기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제외한다(제44조).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했거나 최종판정을 거쳐 반덤핑관세를 추징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잠정 반덤핑관세와 현금보증금을 즉시 환급하고 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제45조).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기업은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의 세액이 덤핑마진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상무부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

무부는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사실로 인정한 경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를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세금 환급을 결정하면, 세관이 이를 집행한다(제46조). 소급적용과 환급에 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9)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과 가격약속의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나, 다만 재심결정에 근거해 반덤핑관세의 징수 종결 후 덤핑과 피해의 연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제48조). 반덤핑관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대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격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대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제49조).

재심 결과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며, 또한 상무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가격약속의 유지, 수정 및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제50조). 재심절차는 본 조례의 반덤핑조사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하며, 재심기한은 재심 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1조). 재심기간 중의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52조).

10) 보복과 분쟁해결

본 조례의 제25조(반덤핑조사에 관한 최종판정의 공고)에 의한 최종판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례 제4장(반덤핑조치)에 의한 반덤핑관세의 징수여부의 결정 및 소급추징, 세금환급,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징세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또는 본 조례의 제5장(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에 의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3조). 어떤 국가[지역]가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6조). 상무부는 반덤핑과 관련된 대외협상, 통보 및 분쟁해결을 책임지고 있다(제58조).

3. 평가

일반적으로 덤핑행위는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시장질서를 저해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WTO 체제하에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반덤핑관세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WTO 체제하에서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통한 외국기업의 불공정무역 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⁹⁾

1) 정상가격의 정의와 산정방법

‘반덤핑조례’상 정상가격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반덤핑협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는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5%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제2.2.1조에서는 내수판매에서 원가 미만인 판매가 총 판매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내수판매가격 자료를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반덤핑조례’에는 없다. 또한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는 수출자의 회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내용(제2.2.1.1조, 제2.2.2조)도 ‘반덤핑조례’에는 없다.

2) 덤핑마진의 산정방식

덤핑마진의 산정방법에 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에 대체로 부합된다. 다만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고려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반덤핑협정’상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시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해져야 함을 기술하

9)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328면.

고,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 환율의 변동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개념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개념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동일하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확정할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반덤핑협정’에서는 명백한 평가(positive evidence)는 물론 ‘객관적 조사’(objective examination)에도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조사할시 판매와 이윤 및 생산량의 감소, 덤핑마진의 규모, 고용 및 임금 등과 같이 해당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요소와 지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3.4조).

4) 실질적 피해의 심사

실질적 피해의 우려 및 확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에 대체로 부합된다. 다만 ‘반덤핑조례’와 달리, ‘반덤핑협정’은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하며, 피해위험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i) 상당한(significant) 수입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덤핑수입의 현저한(substantial) 증가율, ii) 덤핑수출을 현저히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급격하고 상당한 증가, iii)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인하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및 수입에 대한 수요의 추가적인 증가가능성, iv) 조사 대상제품의 재고현황 등을 조사기관이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관련요인은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나, 조사기관은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의 덤핑수출이 급박하고 또한 보호조치가 없이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정해야 한다(협정 제3.7조).

5) 분리된 국내산업의 존재

시장분할에 관한 ‘반덤핑조례’ 제10조의 규정은 ‘반덤핑협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분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산업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도 ‘반덤핑협정’ 제4.1조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반덤핑협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분리된 산업’(separate industry)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반덤핑협정’에서는 분리된 시장내의 생산자가 관련제품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해당시장내에서 판매하고, 분리된 시장내의 수요의 현저한 부분이 당해 국가내의 여타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개 수입회원국내에 2개 이상의 분리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 시장의 국내생산자는 반덤핑절차의 목적상 별개의 분리된 국내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리된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리된 시장에 덤핑수입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해당시장내의 관련생산자 전체 또는 대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제4.1조), 2개국 이상의 국가가 ‘1994년 GATT’ 제24조상의 관세동맹을 구성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single, unified market)

으로 발전된 경우는 전체 통합지역내의 산업을 국내산업으로 간주한다(제4.3조).

6) 인과관계의 존재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반덤핑조례’의 상기 규정은 ‘반덤핑협정’ 제3.5조(“덤핑수입품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에 비해 구체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다.

7) 반덤핑 조사절차

반덤핑 조사절차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긴 하나,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full opportunity)를 보장받고(제6.1조), 최

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조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으며(제6.9조), 조사당국은 이 해당사자, 특히 소규모 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제6.13조).

8) 잠정적 반덤핑조치

잠정조치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나 연장기간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다. ‘반덤핑협정’의 경우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할 수 없고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한 한 단기간에’(as short a period as possible)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제7.3조, 제7.4조).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경우, 동 기간은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제7.4조). 그리고 정상관세(normal duty)와 반덤핑관세 추정액이 표시되고, 평가보류가 다른 잠정조치와 동일한 조건을 따를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유보(withholding of appraisal)도 적절한 잠정조치로 인정된다(제7.2조).

9) 반덤핑관세의 부과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유사하나, 세부적인 절차규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예컨대 ‘반덤핑협

정'에는 반덤핑관세가 미국에서와 같이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에 입각하여 산정된 경우 관세지불에 대한 최종판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종산정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반덤핑관세가 EU 등에서와 같이 '장래적 기초'(prospective basis)에 입각하여 산정된 경우,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분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물품 수입자가 환급을 요구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되,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덤핑관세의 환급은 가능한 한 신속히 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해진다(제9.3조).

10) 기한과 재심

기한과 재심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반덤핑협정'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규정한 점,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한 점 등에 있어 자의적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덤핑조례'의 규정(제48조)은 일몰재심(sunset review)의 요건과 신청절차 및 기한제한 등이 불명확하며,¹⁰⁾ 5년이라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도입한 '반덤핑협정'(제11.3조)의 취지에 위반된다.

10) 최원목, “한·중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절차관련법규의 WTO협정과의 합치성”, 『무역구제』(2005. 10), 76면.

11) 보복과 분쟁해결

행정재심 신청과 인민법원 소송에 관한 ‘반덤핑조례’의 제53조는 ‘반덤핑협정’제13조(사법적 심사)에 부합되는 규정인데, 다만 ‘반덤핑협정’은 재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11.4조). 또한 ‘반덤핑협정’은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다른 회원국의 주장에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adequate opportunity)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덤핑조치에 관련된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을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규정(제17조)을 두고 있는데 반해, ‘반덤핑조례’는 중국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은 WTO ‘분쟁해결양해’(제22조, 제23조)에 명백히 위반된다.¹¹⁾ 반덤핑조치에 관련된 회원국 간의 분쟁에는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규정(제17조)과 함께, ‘분쟁해결양해’가 ‘반덤핑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회원국 간의 분쟁에 적용된다.

11) WTO 협정 상,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보복조치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최승환, 전게서, 247-256면 참조.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행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최승환 “WTO 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제 1호 (1996. 5), 108-111면; 최승환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의정연구』, 통권 제7호 (1998. 7), 181-198면.

III 반보조금조례

1. 개관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반보조금 관련 절차규칙을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중국의 반보조금제도는 ‘대외무역법’과 ‘반보조금조례’ 및 ‘시행세칙’에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

2004년 4월 6일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구제와 관련된 규정이 대폭 보완되고 추가되었는데, 반보조금조치에 관련된 조항으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관련 차별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제8조), 보조금 조사(제37조), 조사방법 및 결과의 공고(제38조),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국가이익 보호(제40조), 반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제43조), 경제무역조약·협정 당사국의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제47조), 대외무역 관련 협상 및 분쟁해결(제48조),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반회피조치(제50조) 등이 있다.

2004년에 개정된 ‘반보조금조례’(총 6장, 58개 조문, 수출보조금 리스트)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상무부로 조사 및 관할기관을 통합하였고, 둘째, 반보조금조치는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반보조금조치의 소급적용을 강화하였다. 특히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반보조금제도의 운용이 특정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이익이라는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유형과 현황

1) 중국 보조금 정책의 특징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계획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히 국가경제의 근간인 국유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발전과 고용보장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래 국내 보조금 제도와 관련 법규를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왔으나,¹²⁾ 아직도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의 재정 지원이 존속되고 있는 등 체제 전환국의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른 특징들 예컨대, 소수민족 우대를 위해 부분적인 세수결정권을 해당 지방에 양도함으로써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관할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조치들이 혼재함으로써 복잡한 양태를 띠고 있는 점, 국내법상 공식적인 법규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어 그 형식(법규, 통지, 잠정방법, 잠정조치, 계획, 의견, 규정, 지도의견, 실행규칙, 건의, 지지, 지원, 장려 등)이 다양하다는 점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시하

12) 중국은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모두 철폐하고, WTO 가입 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지불이나 조세감면 등을 통한 일체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공약하였다. 또한 금지보조금 성격을 갖는 중국 내 경제특구에서 제공되는 일부 보조금에 대해 중국정부는 동 보조금의 주요 목적이 지역개발 및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있으며,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은 가입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WTO 협정을 경제특구와 소수민족자치구 등을 포함한 전국의 관세영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박월라 외 4인,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20 (2011. 12), 60-61면.

고, 지방정부는 현지실정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¹³⁾

과거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국유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여,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 보조금,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조정·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형태면에서도 세제지원, 수출 및 수입대체 보조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기술지원, 연구개발비지원, 대출금 이자감면 등 간접적인 방식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문서에서 보조금 목록을 제출한 이후 2006년 4월(78개 목록),¹⁴⁾ 2011년 10월(93개 목록),¹⁵⁾ 2013년 5월(78개 목록),¹⁶⁾ 2015년 10월(86개 목록)등 총 네 차례만 통보의무를 이행하였다. 2015년 10월 30일에 통보된 보조금 내역은 2009년~2014년에 공여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86개의 보조금 목록은 특혜세제 형태의 보조금 42건 (에너지 및 하이테크 관련 외자기업,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환경보호와 물 및 에너지 보전 프로젝트,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선박, 청정발전 메커니즘, 장애인 고용/제품 관련 기업, 기술이전 촉진, 기업의 R&D, 농업/임업/축산/수산물제품의 가공, 장비수입, 집적회로의 연구개발, 종자/종축/어류/야생동물 및 식물 수입, AIDS 예방 의약품 등)과 재정배당 형태의

13) 이상은 주로 다음을 참조 : 박월라 외 4인, 상게서, 70면, 94면; 노광, "WTO체제에서의 중국 보조금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무역규제』, 제30호 (2008. 8), 90면; 유예리, "WTO 체제하에서 중국의 현행 농업보조금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11집 (2009. 6) 171면.

14) G/SCM/N/123/CHN, 13 April 2006.

15) G/SCM/N/155/CHN, G/SCM/N/186/CHN, 21 Oct. 2011.

16) G/SCM/N/95/CHN, 16 May 2013.

보조금 44건 (풍력발전설비의 산업화, 산업기술 연구개발, 소상공인 발전 및 서비스제도 구축, 국제경제무역발전, 기계 및 전기제품과 하이테크제품의 최적화, 농업/경공업/섬유제품의 무역촉진, 우수 계통과 종자 촉진, 농업투입을 위한 종합적 보조, 농업인 직접보조, 농기구 구입, 농업종합개발, 농업용 물질약 관개를 위한 용자의 이자감면, 농업생산에 있어 재난방지 및 구제, 산림 병충해 예방,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 폐차지원, 바이오에너지/바이오화학 원료 기지, 에너지절약 변형, 효율적인 전기제품, 에너지절약 제품의 증진, 재생가능한 에너지절약 빌딩 재료, 에너지보전/배출가스 감축, 전략에너지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

최근 중국정부는 차세대 IT 기술, 고급디지털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 설비 및 첨단선박, 신진 궤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을 10대 핵심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⁸⁾ 중국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기 10대 핵심전략산업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집중적으로 활용되리라 예상된다.

2)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보조금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성장과 산업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기 위

17) G/SCM/N/220/CHN, G/SCM/N/253/CHN, G/SCM/N/284/CHN, 30 Oct. 2015.

18) http://news.xinhuanet.com/finance/2015-05/20/c_127819790.htm [2015년 5월 20일 최종방문].

해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조정·진흥계획을 공표하였다. 동 10대 핵심산업에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방직, 경공업,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물류산업이 포함되는데, 동 10대 산업 중에서 물류산업을 제외한 9대 산업의 공업부가가치가 전체 공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며, GDP의 1/3을 차지한다. 동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내역은 아래 <표 2-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¹⁹⁾

<표 2-2>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형태와 유형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철강	P	수출보조금	수출신용대출, 수출관세 환급률 인상, 수출신용보험	「철강산업발전정책」 제27조, 「철강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1항 10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대출이자 대납, 재정지원 대형 핵심기업 지원	「철강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3항 9항
자동차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국제 자동차부품 구매체계 포함된 부품생산기업 지원, 국산 브랜드 차량의 국내외 시장점유 목표 확정	「자동차산업 발전정책」 제31조,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2조 3항
	A	금융지원	중앙정부의 자금투입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9항
조선	P	수입대체보조금	제품의 내수판매 지원(부가세 환급)	「선박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4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우대대출, 투자자금 설립 지원 선박 조기 건조 위해 예산자금 투입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	「선박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1항, 「선박공업의 평온하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공업정보화부 의견」 제5조

19) 동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공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월라 외 4인, 전거서, 96-111면 참조.

제2장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과 평가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석유 화학	A	수출보조금, 수입 대체보조금	신용대출, 기술개조 전용자금 설립, 합병 및 재편 지원 세수수대	「석유화학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3항, 제4조 5항, 8항, 「농약산업정책」 제25조, 「타이어 산업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공고」 제10조
방직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 환급률 인상, 방직산업의 국산화 지원	「방직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3조 7항, 제4조 1항과 3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정부의 면화, 생사 구매 강화, 방직산업의 기술개조, 합병과 재편 지원, 신용대출 우대, 부실채권 심의요건 완화,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업채권 발행지원 대출확대 등	「방직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 3항, 5항, 6항, 「중소형 방직기업 지원을 위한 국무원판공청 의견」
경공업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 환급률 인상, 국산장비 생산 지원, 수출신용대출, 수출 신용보험, 대외무역발전기금	「경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 5항, 6항, 7항
	A	금융지원 기술지원 특정기업 지원 구조조정 지원	농민의 전차제품 구매 시 장부보조, 기술지원, 신용대출과 대출금 상환 연기, 부실채권 삭제, 중소기업 신용담보, 중소기업 발전 전문기금,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및 요율 인하, 기업합병 재편 지원	「경공업 조정과 진흥계획」 1항, 5항, 6항, 7항, 9항
비철 금속	P	수출보조금	수출관세 환급률 인상	「비철금속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1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구조조정지원	대출이자 대납, 대형 기업 합병재편 지원, 핵심기업에 대형 광구 배치, 핵심기업의 주식과 채권발행 지원	「비철금속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3항, 8항, 9항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장비 제조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국산장비에 대한 지원과 국산장비의 사용 지원 수출관세 환급률 인상 수출신용대출	「장비제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항 3항 4항 5항
	A	세제지원 구조조정 지원 금융지원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의 환급, 기업합병 및 재편 지원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지원, 농기구 구매보조금 지원	「장비제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6항 7항 8항
전자 정보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 환급,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대출 제공,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인종비용 지원, 기업소득세 감면, 지배권 신장비용 등의 지원 국산장비에 대한 지원	「전자정보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6항,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고무하는 일부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제7조, 제12조, 제17조, 「소프트웨어 수출에 관한 통지」 제1조 4항 2절 제1조 6항, 제15조,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 수출에 관한 지도의견」 제11항, 제20항, 「반도체 조명 에너지절약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등의 통지」 제4조 5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자금지원,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 지원, 우대금리에 의한 수입신용대출 제공, 합병과 재편 지원, 수입관세 면제	「전자정보산업 조정과 진흥계획」 제4조 2~4항, 「반도체 조명 에너지절약 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등의 통지」 제4조 3항 및 5항
물류	A	금융지원	인프라 시설 건설자금 지원 대출이자 대납	「물류업 조정과 진흥계획에 관한 국무원 통지」 제5조 5항

* 주: 1) P - 금지보조금, A - 조치가능보조금.

2) 이 표에서 보조금의 유형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그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실제 사안
에서 금지 혹은 조치가능보조금 여부의 판단은 위의 보조내용 및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인 피해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박월라 외 4인, 전계서, 110-111면.

3)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중국정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기존의 10대 핵심산업 이외에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조치를 공표하였다. 동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포함된다. ‘신흥산업 창업 투자계획 주식참여 창업투자 기금관리 잠정방법의 인쇄 배포에 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에 의하면 신흥산업 투자를 위한 주식참여기금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를 통한 전통산업 개조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해당 기금의 등록자본금 또는 약속한 출자액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7조, 제8조).²⁰⁾

7대 신흥산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산업: 고능률과 에너지절약, 선진과 환경보호, 자원순환이용의 핵심 기술장비, 제품과 서비스; ② 차세대정보기술 산업: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3망의 융합,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집적회로, 신형 모니터, 첨단 프로그램, 첨단 서버와 정보 서비스; ③ 바이오 산업: 바이오 의약, 바이오의학 공정제품, 바이오농업, 바이오 제조업; ④ 첨단 장비 제조산업: 항공설비, 위성 및 응용, 궤도 교통장비, 스마트 제조장비; ⑤ 신에너지 산업: 차세대 핵에너지, 태양에너지의 이용과 풍력발전 기술 장비, 스마트 전력시스템, 바이오 에너지; ⑥ 신소재 산업: 신형 기능재료, 선진 구조재료, 고성능 섬유 및 그 복합재료, 공성(共性) 기초재료; ⑦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전기사용식 혼합동력 자동차, 전기사용 자동차와 연

20) 상계서, 113면

료전지 자동차 기술, 동 7대 신흥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내역은 아래 <표 2-3>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¹⁾

<표 2-3>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전략적 신흥산업	A	금융지원, 세제지원	발전기금 설립과 자금투입, 세수지원, 신용대출과 위험 보상, 창업투자자금 투입 및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 제7조 1항,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 제7조 1~3항, 5항, 「신흥산업 창업 투자계획 주식참여 창업투자 기금관리 잠정방법의 인쇄 배포에 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제2조, 제7조, 제8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P	수출보조금	수출지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분야 금융서비스 업무의 개진과 강화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지도의견」 제3조 2항
	A	금융지원	주차요금 우대, 신용대출 지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형 소형차 발전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의견 관련 국무원판공청 통지」 제3조 1항, 2항
바이오	A	금융지원, 특정기업 지원, 세제지원	정부의 바이오 제품구매의 무, 연구개발 지원, 기업소 득세 인하, 석유가격 인상 에 대한 보조, 특정 기업 보조, 세수우대	「바이오 산업의 가속발전 촉진에 대한 일부 정책의 인쇄 발행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제6조 21항, 22항,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화공 재정세무 지원정책 발전에 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의 실시의견」 제2조 4~6항
신에너지 자동차	A	금융지원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	「개인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보조금 시범실시 에 관한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 제5조

21) 동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공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게서, 96-111면 참조

산업	분류	유형	보조 내용	관련 규정
신에너지	P	수입대체 보조금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 설비의 국산화 생산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전문자금 관리장정방법」 제3조 5항, 제17조
	A	세제지원	기업소득세 특혜 부여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의 인쇄 배포 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제8조 5항, 「풍력발전설비 산업화 전용자금관리 잠정방법 의 인쇄 배포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 제4조

* 주: 1) P - 금지보조금, A - 조치가능보조금.

2) 이 표에서 보조금의 유형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 금지 혹은 조치가능보조금 여부의 판단은 위의 보조내용 및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피해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박월라 외 4인, 전거서, 119면.

3. 반보조금조례의 주요 내용

1) 목 적

중국 ‘반보조금조례’의 목적은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반보조금조치의 발동요건

‘반보조금조례’상 반보조금조치(즉 상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i) 해당 수입제품에 외국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존재해야 하고, ii)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이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의 발생 또는 우려를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여야 하

며, iii) 보조금이 지급된 제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제2조). ‘반보조금조례’상 반보조금조치의 세 가지 발동요건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요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① 보조금의 존재

‘반보조금조례’상 ‘보조금’이란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하 “수출국 정부”)이 자국 수출업체에 재정지원과 기타 형식의 수입(收入) 또는 가격지원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재정지원에는 수출국 정부가 i) 재정지출, 대출, 자본투입 등 형식으로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출담보 형태로 잠재적으로 자금 또는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ii) 마땅히 받아 들여야 하는 조세수입을 포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iii) 일반 인프라 시설 이외의 화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iv) 자금 지원기구에 대한 자금지급을 통해 또는 민간기구에 위탁·명령을 통해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조).

본 조례에 따라 조사 및 반보조금조치가 발동되는 보조금은 반드시 ‘특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 5가지 형태(즉 i) 수출국 정부가 명확하게 한정된 일부의 기업이나 산업이 받은 보조금, ii) 수출국의 법률, 법규가 명확하게 한정된 산업이 획득한 보조금, iii) 지정된 특정지역내의 기업이나 산업이 획득한 보조금, iv)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획득한 보조금, v) 자국 제품(지역)으로 수입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보조금)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으로 간주된다(제4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7가지 방식(즉 i)

무상자금 지원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기업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계산; ii) 대출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대출 받은 기업이 정상적인 상업대출을 받는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와 대출이자 차액을 계산; iii) 대출금 담보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이자와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실제 지불해야 할 이자의 차액을 계산; iv) 자금투입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기업이 실제로 받은 자본금액을 계산; v) 화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은 화물 또는 서비스의 정상가격과 기업이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액을 계산; vi) 화물구매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정부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과 그 물품의 정상가격의 차액을 계산; vii) 조세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취하지 않는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업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차액을 계산)으로 계산해야 하며, 동 7가지 방식 이외의 기타 보조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확정한다(제7조).

② 국내산업피해의 존재

국내산업의 ‘피해’란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으로 인해 기존의 관련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7조).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무역에 미친 영향,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의 수량(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의 절대적 수량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량에 대비한 수량증가 여부 또는 보조금이

지원된 제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을 포함),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 제품의 가격(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의 가격인하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포함),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이 국내산업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미치는 영향,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지(지역, 국가)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 대상제품의 제고 상황,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 등 총 6가지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제8조).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고발, 추측 또는 지극히 낮은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에 의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피해를 초래한 보조금 이외의 외적 요소를 보조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제8조 단서).

‘반보조금조례’에서는 누적평가(cumulative assessment)의 요건을 보조수입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역)로부터 수입되고 동시에 두 가지 조건(① 각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보조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미량보조에 속하지 않고 수입량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② 보조수입제품간의 경쟁조건 및 보조수입제품과 중국 국내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조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을 누적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여기서 ‘미량보조’(최소허용수준)란 제품가격의 1% 미만인 보조금을 의미하지만 개도국(지역)에서 수입된 보조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제9조). 누적평가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상기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제15.3조, 제11.9조)과 동일하다.

‘반보조금조례’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수입제품의 영향 평가는 국내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확정하되,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동종제품을 포함한 최소한의 제품군 또는 범위내의 생산에 대한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제10조). 여기서 ‘국내산업’이란 중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총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생산자가 수출입업체와 관계가 있는 경우나 생산자가 보조금제품 또는 동종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데,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내 한 ‘지역시장’의 생산자가 그 시장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동종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에서의 동종제품의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역의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아닐 경우 하나의 단독산업으로 볼 수 있다(제11조).

‘반보조금조례’에서 ‘동종제품’(like products)이란 보조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의미하며, 동일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간주한다(제12조). 동종제품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1조 각주 46(“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제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제품 즉, 고려중에 있는 제품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제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제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제품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③ 인과관계의 존재

‘반보조금조례’에서 상무부는 보조금과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확정할 경우 반드시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보조금 이외의 요소로 야기된 피해를 보조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후문의 단서).

3) 상계관세 부과 신청절차와 제소자 적격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체(이하 “신청인”)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신청서에는 ① 신청자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②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제품의 명칭,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지(지역, 국가),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를 포함), ③ 중국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수량 및 가격에 대한 설명, ④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⑤ 신청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4조). 신청서에는 또한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의 증명,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는 증빙서류, 보조금과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확인에 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5조).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경우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지지를 표명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제17조).

4) 조사절차

피해의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담당하며, 그중 농산물과 관련된 국내산업에 미친 보조금의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을 통해 진행한다(제7조).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 신청서 내용 및 첨부된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입안조사[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심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입안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수출국(지역) 정부에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제16조).

특수상황 하에서는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의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보조금과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제18조). 입안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무부는 이를 공고하는 동시에 신청인 및 관련 수출업체와 수입기업, 수출국(지역)의 지역 및 기타 이해 관계조직체, 개인(이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입안조사 결정이 공고됨과 동시에 상무부는 관련 수출업체와 수출국 정부에 신청서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제19조).

상무부는 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무부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과 논거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담당자를 관련 국가에 파견해 조사할 수 있다(제20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조사에 이해관계인은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국(지역) 정부가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한다(제21조). 상무부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허가하나, 다만 비밀로 처리된 자료는 제외된다(제23조).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국(지역) 정부는 제공된 자료가 누설돼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무부에 대해 해당 자료의 비밀유지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유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자료를 비밀유지 자료로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비밀유지가 필요 없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로 처리된 자료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제22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 피해와 양자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제25조). 예비판정에 의해 보조금, 피해 및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및 보조금액, 피해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상무부는 최종판정이 근거한 기본사실을 모든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6조). 반보조금 조사는 입안조사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6개월(즉 총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27조).

그러나 다음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무부는 조사절차를 반드시 종료하여야 하며 대외 공고하여야 한다. 즉 ①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보조금, 피해 또는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보조금액이 적은 경우, ④ 보조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피해가 미소보조인 경우, ⑤ 관련 국가(지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여 계속적인 반보조금 조사의 실시가 필요해진 경우, ⑥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국가 또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피조사제품이 상기 ②, ③, ④, ⑤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제품의 반보조금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제28조).

5) 잠정조치

예비판정으로 보조금 지원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의 초래가 인정된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① 현금보증금, 또는 ②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잠정 상계관세의 징수)의 ‘잠정 반보조금조치’(이하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제29조). 잠정조치의 발동은 상무부의 제안에 기초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며, 세관은 공고에 규정된 실시일 부터 집행한다(제30조).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잠정조치의 결정공고에 규정된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보조금 입안조사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제31조). 잠정조치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제17조)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6) 가격약속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s)이라 함은 수출국정부가 보조금의 철폐나 제한, 또는 보조금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조정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잠정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절차가 정지되거나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격약속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거의 동일하다.

반보조금 조사기간 동안 수출국(지역) 정부가 보조금 또는 기타 조치를 철폐하거나 제한할 것을 약속하거나 수출업체가 가격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상무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상무부는 수출업체나 수출국(지역) 정부에게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수출업체에게 가격약속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제32조). 수출업체와 수출국(지역) 정부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거나 가격약속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보조금 안전에 대해 조사 및 확정은 방해하지 못한다. 수출업체가 계속해서 수입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상무부는 피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제33조).

수출업체가 제안한 가격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공공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무부는 반보조금 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거나 잠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상계관세[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보조금 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며, 상무부가 가격약속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수출업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긍정

적인 예비판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가격약속을 요구하거나 접수해서는 아니 되며, 수출업체가 가격약속을 해도 본국(지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가격약속을 요구하거나 접수해서는 아니된다(제34조).

반보조금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국(지역) 정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금 및 피해에 대해 계속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보조금 또는 피해에 대해 부정적 판정이 났을 경우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긍정적 판정이 났을 경우 가격약속은 계속 유효하다(제35조). 상무부는 수출업체 또는 수출국(지역) 중부에게 가격약속 이행 관련 상황과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제36조).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보조금 조사 재개를 즉시 결정할 수 있고,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입각하여 잠정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발동 90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약속 위반 이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된다(제37조).

7) 반보조금조치의 부과

협상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 판정으로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상계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상계관세는 마땅히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제38조). 상계관세의 납세자는 보조금 제품의 수입기업임(제41조). 상계관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며, 세관은 공고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집행한다(제39조).

상계관세는 최종판정 공고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되지만, 본 조례 제37조(가격약속 위반시)와 제44조 및 제45조(소급적용시)에서 규정된 상황은 제외된다(제40조).

상계관세는 수출업체가 보조받은 금액에 따라 각각 확정해야 하는데, 실제 조사를 받지 않은 수출업체의 보조금 수입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상계관세를 확정해야 한다(제42조). 상계관세의 세액은 최종판정시 확정된 보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3조).

8) 소급적용과 환급

최종판정에 의해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하고, 아울러 이미 잠정 조치를 취한 경우, 상계관세는 이미 잠정조치를 취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추정할 수 있다. 최종판정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우려가 존재한다고 확정하고, 사전에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정해 이미 잠정조치를 취한 경우, 상계관세는 잠정조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추정할 수 있다(제44조).

다만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상계관세가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보증서의 담보금액 보다 많은 경우 차액부분은 징수하지 않으며, 담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된다(제44조).

그러나 세 가지 상황(첫째, 보조금 수입제품이 비교적 단시일에 대량 증

가하고 있을 경우, 둘째, 이러한 증가가 국내산업에 구제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경우, 셋째, 이러한 제품의 이익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실시 90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다(제45조). 다만 최종판정에서 상계관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또는 상계관세의 소급추징을 미확정한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에 수취한 보증금을 즉시 환급하고 보증서는 해제해야 한다(제46조). 소급적용과 환급에 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9) 상계관세와 가격약속의 기한 및 재심

상계관세의 징수기간과 가격약속의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나, 다만 재심결정에 근거해 상계관세의 징수 종결 후 보조금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 상계관세의 징수기간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제47조).

상계관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대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상계관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격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대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제48조).

재심 결과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며, 또한 상무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가격약속의 유지, 수정 및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제49조). 재심절차는 본 조례의 반보조금 조사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하며, 재심기한은 재심 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재심기간 중의 재심절차는 반보조금 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51조).

10) 보복과 분쟁해결

본 조례의 제26조(반보조금 조사에 관한 최종판정의 공고)에 의한 최종판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례 제4장(반보조금조치)에 의한 상계관세의 징수여부의 결정 및 추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또는 본 조례의 제5장(상계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에 의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2조).

어떤 국가[지역]가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보조금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5조). 상무부는 반보조금 조치와 관련된 대외협상, 통보 및 분쟁해결을 책임지고 있다(제56조).

4. 평가

정부의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극빈자 소득보조, 공중교육, 보건 및 환경

보호, 운송,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이나 기업 등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는 보조금은 수출장려나 수입억제 등과 같은 무역왜곡(trade distortion)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²²⁾ 반보조금제도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 그 보조금액의 한도 내에서 별도의 상계관세를 포함한 반보조금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공정무역질서와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WTO 체제하에서 반보조금제도는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 질서를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 보조금의 개념 및 존재

보조금의 개념 및 존재에 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반보조금조례’가 적용되는 ‘혜택’의 구체적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고, 보조금의 ‘특정성’에 대한 정의도 없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는 법률상(*de jure*) 특정성이 있는 경우와 사실상(*de facto*) 특정성이 있는 경우 모두를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특정보조금’(*de jure specific subsidy*)은 공여기관이나 관련법규가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명백히 ‘특정기업’(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한정하는 경우 존재한다(협정 제2.1조(a)). 다만 공

22) 최승환, 전거서, 343면.

여당국이나 관련법규가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 기준 또는 조건”²³⁾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혜자격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동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 ‘법률상의 비특정 보조금’(de jure non-specific subsidy)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상의 특정 보조금’(de facto specific subsidy)이 될 수 있다. 즉 상기 원칙을 적용한 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더라도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reasons)가 있는 경우에는 ① 제한된 특정기업에 의한 보조금계획의 사용, ②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압도적인 사용, ③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불균형적 지급, ④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2.3조). 특정성에 대한 결정은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초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제2.4조).

2) 국내산업 피해의 개념 및 존재

국내산업 ‘피해’의 개념 및 판정 요인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상기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판정시 검토되어야 할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4조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시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가동율의 실제적 및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

23) 여기서 객관적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함은 종업원의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특정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성격상 경제적이며 적용시 수평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협정 제2조 각주 2).

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계획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시장분할

시장분할에 관한 ‘반보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분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산업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1조 및 제16.2조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서는 2개국 이상의 국가가 ‘1994년 GATT’ 제24조상의 관세동맹을 구성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single, unified market)으로 발전된 경우는 전체 통합 지역내의 산업을 국내산업으로 간주한다(제16.4조).

4) 인과관계의 존재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반보조금조례’의 상기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5조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보조금의 효과를 통해서 이 협정의 의미내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

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해 초래하는 피해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당해 상품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수입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외 생산자간의 무역 제한적인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의 개발 및 국내산업의 수출실적과 생산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국당국의 실무적 운용상 대체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5) 신청절차와 제소자 적격

상계관세 부과와 신청절차와 제소자 적격에 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제14조~제17조)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서는 신청서에 보조금액과 피해, 수입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11.2조).

6) 조사절차

조사절차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긴 하나,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조사가 통관절차를 방해할 수 없으며, 조사절차가 즉시 종결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조사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

하는 즉시 신청은 기각되고 신속하게 종결되며, 또한 보조금액이 최소허용 수준(*de minimis* : 가액대비 1% 미만)인 경우와 보조금 지급제품의 수입 물량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면 즉각 조사가 종결되어야 함(협정 제11.9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서는 모든 이해당사 회원국과 이해관계인은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당국이 요구로 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ample opportunity)가 주어지며(제12.1조), 이해당사 회원국과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정보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제12.2조), 조사당국은 가능한 한 언제나 모든 이해당사 회원국과 이해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상계관세 조사시 당국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하며(제12.3조), 조사당국은, 충분한 시간전에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 회원국이 조사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1) 당해 기업이 동의하고 (2)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기업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제12.6조),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 특히 소규모 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제12.11조).

7) 반보조금조치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

계조치협정'과 대체로 유사하나, 세부적인 절차규정이 다소 미흡하다. 예컨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데, 다만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19.3조).

8) 기한과 재심

기한과 재심에 관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규정한 점,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관세의 계속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한 점 등에 있어 자의적인 상계관세 부과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상계관세의 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한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제47조)은 일몰재심(sunset review)의 요건과 신청절차 및 기한제한 등이 불명확하며,²⁴⁾ 5년이라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도입

24) 최원목, 전계 논문, 76면.

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제21.3조)의 취지에 위반된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WTO 협정의 해석상 중간재심이든 일몰재심이든 상계관세(또는 반덤핑관세)의 지속적 부과 필요성과 조치 철회시 산업피해 발생의 개연성(likelihood)을 입증할 책임이 조사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당국이 입증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요구한다면 WTO 협정에 위반된다.²⁵⁾

9) 보복과 분쟁해결

행정재심 신청과 인민법원 소송에 관한 ‘반보조금조례’ 제52조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3조(사법적 심사)에 부합되는 규정인데, 다만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재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21.4조). 또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보조금의 유형별(즉 금지보조금, 상계대상보조금, 허용보조금)로 각각 협의와 구제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규칙(협정 제4조, 제7조, 제9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기간의 전 과정을 통해 보조금 관련 사안에 대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reasonable opportunity)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보조금조치에 관련된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을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규정(협정 제13조, 제30조)을 두고 있는데 반해, ‘반보조금조례’는 중국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²⁶⁾

25) 상개논문, 77면.

26) 여기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라는 문구는 상계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한다. 상개논문, 80면.

그러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은 WTO ‘분쟁해결양해’ (제22조, 제23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련된 회원국간의 분쟁에는 금지보조금, 상계대상보조금, 허용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규칙에서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규정(제4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30조)과 함께, ‘분쟁해결양해’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회원국 간의 분쟁에 적용된다.

IV 세이프가드조례

1. 개관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세이프가드 관련 절차규칙을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중국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과 ‘세이프가드조례’ 및 관련 ‘시행세칙’에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

2004년 4월 6일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구제와 관련된 규정이 대폭 보완되고 추가되었는데,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조항으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관련 차별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제8조), 세이프가드 조사(제37조), 조사 방법 및 결과의 공고(제38조),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국가이익 보호(제40조),

세이프가드조치(제44조), 제3국 수입규제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제46조), 경제무역조약·협정 당사국의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제47조), 대외무역 관련 협상 및 분쟁해결(제48조),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반회피조치(제50조) 등이 있다.

2004년에 개정된 ‘세이프가드조례’(총 5장, 34개 조문)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상무부로 조사 및 관할기관을 통합하였고, 둘째, 세이프가드조치는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셋째, 기존에는 예비판정을 내린 후에 최종판정을 내려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특히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반보조금제도의 운용이 특정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이익이라는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이프가드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 적

중국의 ‘세이프가드조례’의 목적은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으로써,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2조).

2)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i) 수입제품의 물량이 증가하고, ii) 이로 인해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초래하고(제2조),²⁷⁾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수입제품의 물량증가와 국내산업이 입게 된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제11조). 여기서 수입제품의 물량증가는 수입제품의 물량이 국내 생산량과 비교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제7조). 상무부는 최종판정에 의해 수입제품의 물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제20조).

3)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와 제소자 적격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위한 신청절차는 수입제품의 물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초래하는 경우(이하 “피해”) 국내산업과 관련있는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이하 “신청인”)가 상무부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서면으로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상무부는 제소자자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3조). 상무부는 서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제품의 증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4조).

27) 동종제품과 직접경쟁제품을 확정할 때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생산 설비와 기술, 제품의 용도, 제품의 대체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 경로, 가격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세이프가드산업피해조사규정 제8조).

조사개시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는데, 상무부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속히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지한다(제5조).

제소자 적격의 문제에서 국내산업은 중국 국내의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생산업체나 또는 제품의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총생산량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업체를 의미한다(제10조).

4) 조사절차

수입제품의 물량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 공평무역국에서, 피해조사와 판정은 상무부 피해조사국에서 각각 책임지고 실시한다. 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피해조사는 상무부 피해조사국과 농업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제6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제품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율과 증가량, 증가한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수입제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수준,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이용율, 이윤 및 결손, 취업 등에 대한 영향 포함),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국내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확정함에 있어 기타 요소에 의한 피해를 수입증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되며, 심각한 피해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피해의 신고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아니된다(제8조).

상무부는 수입기업, 수출업체 또는 기타 이익관계자에게 의견의 진술과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나 공청회 또는 기타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제12조). 다만 조사과정에서 입수된 관

련자료에 대해 자료 제공자가 비밀유지를 요청할 경우 조사기관은 비밀자료로 취급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처리요청이 타당할 경우 자료 제공자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자료로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기밀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동 자료의 개요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조사기간중 상무부는 심사한 사건의 내용, 경위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심사결과를 적시에 공표해야 한다(제9조).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 피해의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내용은 상무부가 공표한다.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관련사항을 세이프가드조치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제14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예비판정[초보적 재결결정] 또는 최종판정 [최종 재결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공고한다(제15조). 즉 2004년 3월 31일에 개정된 ‘세이프가드조례’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5) 잠정조치와 최종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상무부가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잠정조치”)와 최종 세이프가드조치(“최종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제품의 물량증가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잠정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하면 국내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관세율 인상방식을 취한다(제16조). 다만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잠정조치의 발동 결정 공고에 정해진 실시일로부터 2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8조). 최종판정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확정된 경우 최종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데, 최종조치는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제19조).

잠정조치의 발동은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 규정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잠정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상황을 세이프가드조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제17조). 관세율 인상방식을 통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은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수량제한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은 상무부가 결정·공고하고, 세관은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제20조).

6)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와 제한

세이프가드조치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국가(지역)에 차별없이 실시해야 하며(제22조), 심각한 피해 방지와 구제 및 국내산업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제23조). 수량제한조치를 발동할 경우 제한 후의 수입량은, 심각한 피해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해 상이한 수준의 수량제한조치를 발동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최근 대표적인 3개 연도의 평균수입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량제한조치를 취할시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지국가(지역)와 수량할당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제21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제품의 수출업체와 실질적 이해가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제25조). 최종판정에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지 않기로 확정한 경우 징수한 잠정관세는 환급해야 한다(제25조).

7) 세이프가드조치의 기한과 재심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i)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ii) 관련 국내산업이 현재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iii) 대외통지, 협상에 관한 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는 경우, iv) 연장후의 조치가 연장전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 한 건에 대한 실시기간 및 연장기간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6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초과 실시기간 중에 점진적으로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7조). 실시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상무부는 실시기간내에 해당조치에 대해 중간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사내용은 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산업의 조정 상황 등을 포함한다(제28조).

관세율 인상방식을 통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상무부는 재심결과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존 관세율 조치를 유지하거나 철폐 또는 완화에 대해 제안해야 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고 상무부는 그 결과를 공고한다(제29조).

동일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재차 실시할 경우 1차 실시한 세이프가드조치와의 시간 간격은 1차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시한 기간 보다 짧으면 아니되고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만 두 가지 조건(즉 ① 해당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실시일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될 것, ② 세이프가드조치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제품에 대해 2차 이상 세이프가

드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합되고 존속기간이 180일 또는 180일 이내인 세이프가드조치는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30조).

8) 보복 및 분쟁해결

‘세이프가드조례’는 보복조치의 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국가도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그 차별정도에 따라 그 국가(지역)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1조). 상무부는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대외협상, 통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책임진다(제32조).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에도 보복조치에 대한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국에 대해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지제한 및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1조).

3. 평가

‘세이프가드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 measures)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4년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 비해, WTO ‘세이프가드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은 safeguards 또는 safeguard

measures 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취해지는 세이프가드조치는 '1994년 GATT'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에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²⁸⁾ '세이프가드제도'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경쟁자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시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로서 기능한다.²⁹⁾

1)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세이프가드 조례'의 발동 요건은 '세이프가드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례'와 '세이프가드협정'에는 모두가 인과관계의 존재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신청절차와 제소자 적격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위한 신청절차는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된다. 제소자 적격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례'의 규정 또한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되는데, 다만 '세이프가드 조례'와 '세이프가드협정'은 '주요한 비중' 또는 '상당부분'이 몇 % 이상인지 여부, 대상물품의 수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28) 다만 양자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세이프가드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부속서 1A에 대한 해석지침).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1994년 GATT' 제19조에 따른 긴급조치(emergency action)가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1항(a)).

29)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 Sheela Rai, *Recognition and Regulation of Safeguard Measures under GATT/WTO* (Routledge, 2011); 최승환, 전게서, 360-375면; 최승환·심어진, "한중마늘분쟁 이후 한국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무역구제」, 통권 제40호 (2010. 10), 36-70면; 성재호·채은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 성과 최혜국대우," 「통상법률」, 통권 제91호 (2010. 2), 10-49면;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 연구」(법무부, 2006.); 조복연, "긴급수입제한제도운용에 관한 고찰(상/하)," 「통상법률」, 통권 제35호/제36호 (2000.8/2000.10), 105-150면/ 99-129면.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리된 시장도 국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3) 조사절차

조사절차에 관한 ‘세이프가드조례’의 규정은 ‘세이프가드협정’에 대체로 부합된다. 다만 비밀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세이프가드협정’은 ‘세이프가드조례’와 달리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제출자의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3.2조).

4) 잠정조치와 최종조치

잠정조치와 최종조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례’의 규정은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된다. 다만 ‘세이프가드조례’와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은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 및 연장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7.3조).

5) 통제와 제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대한 ‘세이프가드조례’의 통제와 제한은 ‘세이프가드협정’에 대체로 부합된다. 다만 ‘세이프가드조례’와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은 원산지에 따른 선별적 수량할당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자세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입국은 세이프가드위원회의 주관 하에 정당한 절

차에 따른 협의를 거쳐 특정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표적 기간 동안의 당해물품의 총수입량에 비해 불균형한 비율로 증가하고, 일탈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탈의 조건들이 관련물품의 모든 공급자에게 ‘동등하게’(equitably) 적용된다는 점을 동 위원회에 입증할 경우, 쿼터[할당] 배분 방식으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일탈(departure)은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협정 제5.2조 (b)).

6) 기한과 재심

기한과 재심에 대한 세이프가드조례 상의 통제는 ‘세이프가드협정’에 대체로 부합된다. 다만 ‘세이프가드협정’은 잠정조치 발동기간(최대한 200일)과 세이프가드의 최초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협정 제7.3조), ‘세이프가드조례’는 최대 10년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총 8년을 초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상무부가 발동할 경우 ‘세이프가드협정’ 위반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7) 보복과 분쟁해결

보복조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례’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한 것인데, 보복조치의 발동에 관한 절차 및 제한과 상응한 보복조치의 수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DSU)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국내법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후 4년 동안, 대중국 세이프가드조치에는 2~3년 동안의 보복조치 발동을 금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례’와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에는 보상을 위한 협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협정 제8.1조),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보상적 구제조치’(compensatory remedies)에는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나 시장접근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실시 이후 90일 이내에 ‘1994년 GATT’하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 즉 보복조치(retaliatory measures/response)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동 보복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 발동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제8.2조). 또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본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보복조치가 발효된 최초 3년 동안에는 ‘정지권’(right of suspension)과 같은 보복조치를 행사할 수 없다(제8.3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는 특정물품에 대한 보복관세의 부과, 시장접근의 축소 등이 포함된다.

V 시사점과 대응방안

1. 반덤핑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중국은 WTO 가입시 반덤핑관련 절차규칙을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대외무역법’과 ‘반덤핑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반덤핑협정’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제도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비시장경제국으로 대우받는 특례를 WTO 가입 후 15년간 인정받았다. 즉 중국은, 가격비교의 산정에 관하여, 예컨대 정상가격 산정시 제3국 국내가격과 생산비용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덤핑조례’는 ‘반덤핑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미비한데,³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반덤핑제도를 남용하고 통상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시 반드시 분쟁해결기구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차별적인 반덤핑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반덤핑조례 제56조)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반덤핑관련 분쟁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당국에 의한 ‘반덤핑조례’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지침의 결여로 인한 ‘반덤핑조례’의 자의적 해석과 통상분쟁 개연성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을 반덤핑제도의 운용시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중국 조사기관에 요청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중 FTA’에서도 한중 양국이 ‘반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제7.7조 제3항) 예컨대,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단에 대해 ‘반덤핑협정’은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30)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은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모두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송자, 전계 논문, 171면 참조

것이어야 하며, 피해위험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i) 상당한(significant) 수입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덤핑수입의 현저한(substantial) 증가율, ii) 덤핑수출을 현저히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급격하고 상당한 증가, iii)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인하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및 수입에 대한 수요의 추가적인 증가가능성, iv) 조사 대상제품의 재고현황 등을 조사기관이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관련 요인은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나, 조사기관은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의 덤핑수출이 급박하고 또한 보호조치가 없이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정해야 한다(협정 제 3.7조). 또한 ‘반덤핑조례’는 현장 확인조사 방식을 통한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부 절차규칙이 없는데 비해, ‘반덤핑협정’ 부속서 1에는 현장 확인조사에 관한 상세한 절차규칙(총 8개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질의서에 대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문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당해 회원국 정부의 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대표가 이러한 방문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부속서 1, 제6항).

둘째, ‘반덤핑조례’와 ‘반덤핑협정’ 모두에 세부지침이 결여된 경우, ‘한-중 FTA’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원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반덤핑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있어 ‘반덤핑조례’(제21조)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반덤핑협정’(제5.2조)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한-중 FTA’는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

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하며,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2항). 또한 덤핑마진을 결정함에 있어 ‘한-중 FTA’는 ‘반덤핑협정’³¹⁾에서와 달리 대체가격 및 제3국의 대체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오직 당사국간의 교역에 있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7조 제4항), 덤핑마진의 계산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잉’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제7.7조 제5항)을 둬으로써 덤핑마진의 인위적인 확대 산정을 제한하고 있음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반덤핑조례’와 ‘반덤핑협정’ 모두에 세부지침이 결여된 경우,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원용하거나 구체적인 절차규칙을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한다. 예컨대 ‘반덤핑조례’ 제55조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우회덤핑에 해당하는지,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규칙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상무성의 덤핑마진의 산정방식이 관련된 ‘미국-제로잉 조치 사건’에서 WTO 항소기구는 원심 조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 및 일몰재심에 있어서도 그 적용사례뿐만 아니라 그 제도 자체로도 ‘제로잉’(Zeroing) 계산 방식은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음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³²⁾

31)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는 수출국의 국내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US-Measures Relating to Zeroing and Sunset Reviews*, WT/DS322/AB/R (2007).

넷째,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허용하는 ‘반덤핑조례’는 보복조치의 발동에 관한 절차 및 제한과 ‘상응한 보복조치’의 수준 등에 관한 기준 및 세부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에서 금하고 있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국내법 규정이라 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한다.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협정’과 ‘분쟁해결양해’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을 고려하면서 관련 협정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일방적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중 FTA’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한중 무역구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반덤핑에 관련된 절차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있어 양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반덤핑규제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국 관련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한중 무역구제위원회’에, 적절한 경우, 덤핑관련 업체 또는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와 자문을 받음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정책결정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중국의 반덤핑 조사과정에 한국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덤핑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은 해당 기업의 책임이긴 하나,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조사당국의 요구나 조치에 대해 ‘반덤핑협정’에 근거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 조사당국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경우 ‘반덤핑조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반보조금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중국은 WTO 가입시 반보조금 관련 절차규칙을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반보조금제도는 ‘대외무역법’과 ‘반보조금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보조금조례’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미비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반보조금제도를 남용하고 통상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몇몇 선진국(미국, EU,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정부는 일반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개도국들과의 통상분쟁을 외교협상을 통한 우호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현재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고 한국 역시 중국을 상대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³³⁾ 이는 기업의 덤핑조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와 달리, 보조금 및 상계조치의 경우,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보조금 관련 산업정책을 정면으로 문제삼는 것을 자제하려는 한국과 중국 정부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시 반드시 분쟁해결기구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차별적인 반보조금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규

33) 마광·응가로, “WTO의 원자재 보조금 규범 및 중국의 실행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3), 145면

정(반보조금조례 제55조)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반덤핑관련 분쟁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당국에 의한 ‘반덤핑조례’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비해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결여된 ‘반보조금조례’의 적용으로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반보조금조치 또는 상계관세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국 조사당국과의 협의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관련 세부규정을 적극 준수해 주도록 요청하도록 한다. 예컨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조사절차가 즉시 종결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조사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하는 즉시 신청은 기각되고 신속하게 종결되며, 또한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 가액대비 1% 미만)인 경우와 보조금 지급제품의 수입물량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면 즉각 조사가 종결되어야 함(협정 제11.9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서는 모든 이해당사 회원국과 이해관계인은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당국이 요구로 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ample opportunity)가 주어지며(제12.1조), 이해당사 회원국과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정보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제12.2조), 조사당국은 가능한 한 언제나 모든 이해당사 회원국과 이해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상계관세 조사시 당국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

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조사과정에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2.3조). 또한 ‘반보조금조례’는 현장 확인조사 방식을 통한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부 절차규칙이 없는데 비해,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 6에는 현장 확인조사에 관한 상세한 절차규칙(총 8개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질의서에 대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문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당해 회원국 정부의 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대표가 이러한 방문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부속서 6, 제6항).

둘째, ‘반보조금조례’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모두에 세부지침이 결여된 경우, ‘한-중 FTA’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원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반보조금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있어 ‘반덤핑조례’(제21조)는 “사실에 기초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반보조금협정’(제11.2조)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한-중 FTA’는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하며,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2항).

셋째, ‘반보조금조례’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구체성과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든 조항의 해석 적용에 따른 통상분쟁의 경우 관련 WTO 판례 상의 해석을 원용·활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보조금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혜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즉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을 받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캐나다-항공기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수혜자가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는 경우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는데,³⁴⁾ 이는 수혜자가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른바 “market terms”)으로 재정적 기여를 부여받을 경우 에는,³⁵⁾ 비록 수혜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더라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세이프가드조례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중국은 WTO 가입시 무역구제 관련 절차규칙을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과 ‘세이프가드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이프가드조례’는 ‘세이프가드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미비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세이프가드제도를 남용하고 통상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시 반드시 분쟁해결기구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차별적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34)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 Aug. 1990, para. 158.

35) 예컨대 조선업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한국-조선보조금 사건’에서 패널은 한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참여가 상업적 고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73/R, 7 Mar. 2005, para. 8.2.

규정(세이프가드조례 제31조)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반덤핑관련 분쟁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당국에 의한 ‘세이프가드조례’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세이프가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세이프가드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한-중 FTA’ 무역구제위원회 등을 통한 양국간 협의 채널을 활용해서 적극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예컨대 ‘세이프가드협정’은 잠정조치 발동기간(최대한 200일)과 세이프가드의 최초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협정 제7.3조), ‘세이프가드조례’는 최대 10년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총 8년을 초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상무부가 발동하는 것은 ‘세이프가드협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둘째, ‘세이프가드조례’에 해석기준이 모호하거나 세부지침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또는 ‘한-중 FTA’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원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수입증가 및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한-중 FTA’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이전에 조사에 관한 정보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해서 “실행가능한 최대한 초기”에 상호 협의하고,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항, 제4항).

셋째, ‘세이프가드조례’와 ‘세이프가드협정’에 구체성과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든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통상분쟁의 경우 관련 WTO 판례 상의 해석을 원용·활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세이프가드 조례’와 ‘세이

프가드협정'에는 모두가 인과관계의 존재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과관계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미국-육류 세이프가드 사건'³⁶⁾에서 WTO 항소기구는 원인(수입급증)과 결과(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간에 "진정하고 실질적인 관련성"(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을 판정함에 있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와 수입급증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를 분리·구별하고, 수입증가 만에 의한 피해 여부를 판정한 후 수입급증과 피해간에 "진정하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³⁷⁾ 또한 상기 '미국-육류 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예상된 심각한 피해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개연성'(high degree of likelihood)을 의미한다고 판정하였다.³⁸⁾

넷째, 세이프가드조치에 따른 한-중 통상분쟁에 대해 '한-중 FTA'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양해' 또는 FTA 분쟁해결 절차규칙을 선택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제20.3조)에 의하면 일단 특정 분쟁해결 포럼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후 다른 포럼의 이용은 배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따른 통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것인지 '한-중 FTA' 분쟁해결챕터(제20장)를 원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일단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따른 통상분쟁시 양국간 협의를 통한 협력 및 해결을 시도하되,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규범(즉 세이프가드협정)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

36) *US-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WT/DS177/R(New Zealand, DS178/AB/R(Australia), 16 May 2001.

37) *Ibid.*, paras. 168, 177, 179.

38) *Ibid.*, para. 136.

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관련 국제규범의 적용이 한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중 FTA’ 분쟁해결챕터에 따른 양국간 협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세이프가드조례’에 구체성과 명료성이 미비하거나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세이프가드협정’ 또는 ‘한-중 FTA’상의 관련 규정을 활용하도록 한다. ‘세이프가드협정’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경우 해당 국가를 위한 ‘보상’(compensation)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존재하며, ‘한-중 FTA’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에는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한-중 FTA’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고, 한중 양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제7.4조 제1항).

여섯째,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허용하는 ‘세이프가드조례’는 보복조치의 발동에 관한 절차 및 제한과 ‘상응한 보복조치’의 수준 등에 관한 기준 및 세부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에서 금하고 있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국내법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산 마늘수입에 대한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중국정부가 한국산 제품(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중국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했던 한-중 마늘분쟁³⁹⁾에서

와 같이,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협정’과 ‘분쟁해결양해’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중 FTA’상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관련 협정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중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불법적인 것으로 판정받는다면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⁴⁰⁾ 중국정부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이후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한국정부와 개시할 경우에는 ‘한-중 FTA’ 규정상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수출당사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는 중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즉 보복)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수출당사국인 한국은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적용 당사국인 중국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동 보복조치를 취할 수출당사국의 권리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필요성이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도출되고 그러한 조치가 본 협정에 합치하는 한, 그 세이프가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⁴¹⁾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제7.4 조).

39) ‘한-중 마늘분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을 참조 : 최승환,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2000. 8); 최승환, 『WTO 농산물무역분쟁사례연구』(법무부, 2003), 311-342면

40) 최승환·심어진, “한중 마늘분쟁 이후 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무역구제』 (2010. 10), 63면. WTO 협정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승환, “WTO 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제1호 (1996. 5).

41) ‘세이프가드협정’(제8.3조)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장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사례 분석

I 개 관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WTO DSB에 제소당한 통상분쟁 사안은 대부분 중국 국내법상의 무역제도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보조금, 덤핑,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WTO 협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중 수출입과 관련된 사안은 수량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조금, 차별적 조세 등이 통상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⁴²⁾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당한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중 최종 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모두 5건인데,⁴³⁾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제소된 2건 (중국-X-Ray 장비사건, 중국-스테인레스 철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중국-전기강판 사건, 중국-닭제품 사건, 중국-자동차 사건)은 모두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제소된 것이다. 2018년 1월 현재 중국 상무부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된 사건은 없다.⁴⁴⁾

42) 서창배, “중국의 WTO 분쟁사례 분석,” 『중국법연구』, 제29집 (2017, 2, 28), 439면.

43)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으로 DSB에 회부된 기타 6건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건으로 분쟁해결절차 진행 도중에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로 철회되었거나(DS358, DS387, DS419, DS450), 패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DS489, DS519)이다.

44) 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중국이 제소국 자격으로 WTO 분쟁해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5건 중에서 1건(스테인레스 철강사건)은 일본이, 2건은(중국-X-Ray 장비사건, 중국-스테인레스 철강사건)은 EU가, 3건(중국-전기강판 사건, 중국-닭제품 사건, 중국-자동차 사건)은 미국이 각각 제소하였다.⁴⁵⁾ 상기 사건 중 한국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는 없으며, 다만 ‘중국-스테인레스 철강사건’과 ‘중국-전기강판 사건’에서 한국은 협의 및 패널 절차에 제3국으로서 참가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초기에는 안정된 무역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무역상대국과의 갈등 보다는 협의에 의한 우호적 해결을 중시하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통상분쟁에 대처하는 중국정부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다소 공격적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이 제소국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통상분쟁 해결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9월 14일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한 ‘US-Prelimina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on Coated Free Sheet Paper from China 사건’⁴⁶⁾ 부터이다.

2007년 한해 동안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총 13건의 분쟁 중, 중국관련 분쟁건수는 피소 4건, 제소 1건 등 모두 5건에 달하는데, 이는 당

결기구에 회부한 유일한 사건인 ‘미국-철강제품 사건’(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WT/DS248, 249, 251, 252, 253, 254, 258, 259/AB/R, 10 Nov. 2003)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입산(중국,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등)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정부의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증가 사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reasonable and adequate) 설명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와 제3.1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45) ‘중국-X-Ray 장비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EU와 일본이 모두 중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단일 패널 설치)이란 점에서 여기서는 1건으로 취급하였다.

46) WT/DS368/1, 18 Sep. 2007.

해 연도 분쟁건수의 38.5%를 차지하였다.⁴⁷⁾ 본장에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련된 중국정부의 발동사례와 WTO에 제소되어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WTO 통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주요 법적 쟁점 및 이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II 반덤핑관세 분쟁 사례

1. 중국-X-ray 장비 사건

1) 사실관계

EU로부터 수입된 X-ray 보안검사장비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EU가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1년 7월 25일 제소하였다.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한 EU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월 20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2013년 4월 24일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⁴⁸⁾ 인도, 일본, 노르웨이, 태국, 미국 등은 동 사건에 제3국으로 참여하였다. EU는 EU산 X-ray 보안검사장비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반덤핑 조사절차와 반덤핑판정에 관련된 ‘반덤핑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47) 서창배, 전제 논문, 15면.

48) *China-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X-Ray Security Inspection Equipmen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25/R, 24 April 2013.

2) 주요 판시내용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피해판정을 위해 명백한 증거에 대한 객관적 심사(objective examination)에 기초하지 아니하고(고에너지 및 저에너지 스캐너간의 상당한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가격삭감 및 가격영향을 분석한 점(반덤핑협정 제3.1조와 제3.2조 위반), 피해 판정시 모든 관련된 경제적 요인들(특히 덤핑마진의 크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내산업의 상태 조사가 비객관적·비합리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점(반덤핑협정 제3.1조와 제3.4조 위반), 피해판정과 가격영향 분석시 제품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인과관계를 적절히 규명하지 못한 점(반덤핑협정 제3.1조와 제3.5조 위반), 중국정부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요약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지 못한 점(반덤핑협정 제6.5.1조 위반), 필수적 사실(essential facts)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반덤핑협정 제6.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3) 이행현황

2013년 5월 24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 및 판정을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패널의 권고안과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이행기간에 대해 EU와 합의하에 패널보고서 채택 이후 9개월 25일을 부여받았는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9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었다. 중국정부는 2014년 2월 26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EU산 X-ray 검사장비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를 종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로써 중국정부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 및 판정을 완전히 이행하였다.

2. 중국-스테인레스 철강 사건

1) 사실관계

EU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고성능 스테인레스 철강제품(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EU와 일본이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3년 6월 13일 제소하였다.⁴⁹⁾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한 EU와 일본의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 24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2015년 2월 14일에 패널보고서가 10월 14일에 상소보고서가 각각 회람되었다. 분쟁해결기구는 2015년 10월 28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도,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등은 동 사건에 제3국으로 참여하였다. EU와 일본은 고성능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반덤핑협정’과 ‘1994년 GATT’ 제VI조의 절차적·실체적 규정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2) 주요 판시내용

상소기구는 중국 상무부가 동종제품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actual data)에 기초하여 관리, 판매 및 일반비용을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2.2.2조를 위반하였고, 피해판정과 관련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중대한 가격삭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무부의 가

49) *China—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WT/DS/454/AB/R (Japan), WT/DS460/AB/R (EU), 14 Oct. 2015.

격영향 평가는 ‘반덤핑협정’ 제3.1조와 제3.2조를 위반하였고, 덤핑수입제 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부적절하게 의존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가격영향과 영향분석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점과 기타 알려진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 피해가 덤핑수입에 귀속되지 않음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제 3.1조와 제3.5조를 위반하였으며, 덤핑판정을 뒷받침하는 필수적 사실(essential facts)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것은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제3.4조는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조사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사에 기초하여 수입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조사당국이 도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가격삭감의 확인과 관련한 제품유형의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면서, 중국이 제3.1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는 피제소국의 청구를 거부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3) 이행 현황

2015년 11월 25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 및 판정을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 및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이행기간에 대해 일본과 합의하여 2016년 2월 19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이후 9개월 25일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2016년 8월 22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었다.⁵⁰⁾

50) WT/DS454/14, 23 February 2016.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중복부와 분쟁 사례

1. 중국-전기강판 사건

1) 사실관계

미국은 미국산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가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 기구에 2010년 9월 15일 제소하였다.⁵¹⁾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11년 3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2012년 6월 15일에 패널보고서가 10월 12일에 상소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다. 한국, 일본, EU, 인도, 베트남, 혼두라스,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동 사건에 제3국으로 참여하였다. 중국정부가 문제로 삼은 보조금은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미국정부의 경제적 혜택인데, 이는 2009년 미국부흥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과 정부조달 법상의 미국산구매(Buy America)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2) 주요 판시내용

패널과 상소기구인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충분한 증거’ 없이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점(상계조치협정 제11.2조, 제11.3조 위반),

51) *China—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China—GOES”)*, WT/DS414/R, WT/DS414/AB/R, 16 Nov. 2012.

덤핑마진과 보조금 비율의 산정시 ‘입수가능한 사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7조 위반), 피해판정시 명백한 증거/객관적 심사 요건과 가격영향 및 수량에 대한 증거를 잘못 적용한 점 (반덤핑협정 제3.1조와 3.2조; 상계조치협정 제15.1조와 제15.2조를 각각 위반), 수입제품의 증가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부적절한 점(반덤핑협정 제3.5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5.5조 위반), 필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반덤핑협정 제6.9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8조 위반), 비밀정보의 상세한 요약문을 제출하도록 신청인들에게 요구하지 못했다는 점(반덤핑협정 제6.5.1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4.1조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관련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3) 이행현황

중국정부는 항소기구의 권고안 및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이행기간을 미국이 요청한 중재패널에서 2013년 7월 31일까지 8개월 15일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정부의 불성실한 이행에 2014년 2월 13일 이행패널의 설치를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하였고, 2015년 7월 31일 이행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⁵²⁾ 중국정부는 동 이행패널 보고서에 따라 2015년 4월 10일자로 미국산 수입제품(Goes)에 대한 해당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모두 철회하였다.

52) *China—GOE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14/RW, 31 July 2015.

2. 중국-닭제품 사건

1) 사실관계

미국정부는 미국산 닭제품(broiler products: 생닭, 가공닭, 통조림닭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닭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1년 9월 20일 제소하였고, 2013년 9월 25일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⁵³⁾ 미국 및 중국 정부는 패널보고서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기간을 패널보고서 채택 일자로부터 9개월(즉 2014년 7월 9일까지)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미국산 닭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상계조치가 보조금 조사절차와 상계관세 판정에 관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산 닭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의 경우 50.3% ~ 105.4%를, 상계관세의 경우 4% ~ 303.%를 각각 중복해서 부과하였다.⁵⁴⁾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사우디 아라비아, 태국, 칠레, 멕시코 등은 동 사건에 제3국으로 참여하였다.

2) 주요 판시내용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의견진술을 표명할 적절한 기회를 이해관계인에게

53) *China—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China—Broiler Products”)*, WT/DS427/R, 25 Sep. 2013.

54) 중국 상무부는 재정지원, 특정성, 혜택 등 3가지 관점에서 직접지급과 농산물보험제도에 대해 분석한 후 미국정부가 옥수수, 콩의 재배자들에게 특정성이 인정되는 재정지원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혜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국 ‘반보조금조례’ 상의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마광·응가로, “WTO의 원자재 보조금 규범 및 중국의 실행에 관한 연구”, 『국제경 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3), 133면.

제공하지 못한 점(반덤핑협정 제6.2조 위반), 필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반덤핑협정 제6.9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8조 위반), 정상가격의 선정시 비용할당과 사유설명을 부당하게 거부한 점(반덤핑협정 제2.2.1.1조), 덤핑 비용산정에 있어 입수가능한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반덤핑협정 제6.8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7조 위반), 보조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한 점(상계조치협정 제19.4조 위반), 피해판정에 있어 가격효과 분석을 부적절하게 한 점(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5.1조, 제15.2조 위반), 통보요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한 점(반덤핑협정 제12.2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22.3조, 제22.5조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⁵⁵⁾

3) 이행현황

중국정부는 패널의 권고안과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이행기간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에 패널보고서 채택 이후 9개월 14일을 부여받았고, 2014년 7월 9일 이행기간이 종료되었다. 2014년 7월 22일 DSB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재조사를 통해 반덤핑관세의 경우 특정 미국기업에 대해 46.6% ~ 73.8%를, 상계관세의 경우 4% ~ 4.2%로 낮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의 이행수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요청한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자 이행패널의 설치를 2016년 5월 27일에 요청하였고,⁵⁶⁾ 2016년 7월 18일에 이행패널이 설치되었다. 2018년 1월 18일

55) *China—Broiler Products*, *supra* note 53, para. 8.1.

이행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어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⁵⁷⁾ 이행패널은 중국 정부의 이행조치가 여전히 반덤핑협정과 상계조치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결하였다.⁵⁸⁾

3. 중국-자동차 사건

1) 사실관계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2500cc 이상의 특정 자동차에 대한 중국당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정부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2년 7월 5일 제소하였고, 2014년 6월 18일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⁵⁹⁾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정부의 상계조치가 보조금 조사절차와 국내산업 피해 판정 등에 관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 EU, 인도, 일본, 한국,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등은 동 사건에 제3국으로 참여하였다.

56) *China-Broiler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14/RW, 20 Oct. 2016.

57) *China-Broiler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27/RW, 18 Jan. 2018.

58) *Ibid.*, para. 8.2 & 8.6.

59) *China-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China-Automobiles")*, WT/DS440/R, 18 June 2014.

2) 주요 판시내용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비밀정보를 제외한 적절한 요약본을 제출해 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못한 점(반덤핑협정 제6.5.11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4.1조 위반), 필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반덤핑협정 제6.9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8조 위반), 제3의 수출업자에게 적절한 통보 없이 입수가능한 사실을 최종판정을 내리기 위한 증거로 이용한 점(반덤핑협정 제6.8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2.7조 위반), 피해판정에 있어 인과관계 및 가격효과 분석을 부적절하게 한 점(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및 상계조치협정 제15.1조, 제15.2조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⁶⁰⁾

3) 이행현황

패널이 채택한 중간보고서의 회람기간 중, 중국정부는 미국산 특정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최종보고서 불채택을 요청하였으나, DSB는 해당 관세의 철회에 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문서(official documentation)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완료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중국정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미국정부는 해당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중국 정부당국의 부당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중복부과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⁶¹⁾

60) *Ibid.*, para. 8.1, 8.2.

61) ICTAD Reporting, "WTO Panel Finds in US' Favour in China Automobile Duties Dispute," *Bridges Weekly*, Vol. 18, No. 19 (28 May 2014), p. 13 [Available at <https://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view/bridgesweekly18-19.pdf>].

〈표 3-1〉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의 판정 결과 비교

(2018년 1월 현재)

분쟁사례	제소국 / 승소여부	규제사유	판정결과	이행현황
① 중국 - X-ray 장비 (DS-425)	EU/ 승소	EU산 X-ray 검사장비에 대한 자의적 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협정 위반	- 이행: 2014년 2월 EU산 X-ray에 대한 반덤핑관세 철회 통보.
② 중국 - 스테인레스 철강(DS-454)	EU, 일본/ 승소	EU 및 일본산 고성능 스테인레스 철강(HPSST)에 대한 자의적 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협정 위반	- 이행약속: 2015년 11월 중국정부는 이행을 약속함. - 2016년 8월 22일 이행기간이 종료됨.
③ 중국 - 전기강판 (DS414)	미국/ 승소	미국산 전기강판(Goes)에 대한 자의적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중복 부과	반덤핑협정 /상계조치 협정 위반	- 불이행: 미국은 중국정부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 2014년 2월 DSB에 이행패널 설치를 요청함. - 이행: 중국정부는 이행패널보고서에 따라 2015년 4월 10일자로 미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모두 철회함.
④ 중국 - 닭제품 (DS427)	미국/ 승소	미국산 구이용 닭제품에 대한 자의적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중복 부과	반덤핑협정 /상계조치 협정 위반	- 이행보고: 2014년 7월 22일 DSB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이행 완료를 보고함. - 불이행: 미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이행패널은 중국정부의 이행조치가 여전히 반덤핑협정/상계조치협정을 위반됨으로써, DSB의 판정과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결함.
⑤ 중국 - 자동차 (DS440)	미국/ 승소	미국산 특정 자동차에 대한 자의적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중복 부과	반덤핑협정 /상계조치 협정 위반	- 이행보고: 2013년 12월 중국정부는 해당 관세를 철회하였다고 보고함.

IV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2018년 1월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사건은 없다. 여기서는 WTO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과제의 대상인, 중국 정부당국이 수입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철강 세이프가드

중국은 2002년 11월 9일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산 냉연박판과 열연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종의 철강 제품에 대해 2002년 5월 24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최종 세이프가드조치를 확정 공고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발동한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였다. 상기 세이프가드조치는 통상적인 무역량을 보장하고 최종제품 생산업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최종조치는 관세율쿼터(TRQ)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제1차 년도(2002.12~2003.5)의 총 쿼터는 512만톤, 쿼터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관세율 10.3%~23.2%를 적용하고, 제2차 년도(2003.5~2004.5)에는 총 1,067만톤, 관세율 9.5%~21.3%이고, 제3차 년도에는 1,129만톤, 관세율 8.7%~19.6%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⁶²⁾ 당시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 중국 철강수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⁶³⁾

62) 중국은 2003년 12월 26일 상기 5종의 수입산 철강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종결한다고 공표하였다. 동 사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승영,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체계와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 (2004. 6), 649~651면 참조.

2. 설탕 세이프가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결과와 확정조치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22일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8개월 만에 확정조치를 공고한 것이다. 2016년 7월, 중국 광시당업협회(廣西糖業協會)는 중국 설탕업계를 대표해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국 정부당국은 2개월 후인 9월 22일 조사입건 공고를 발표하였는데,⁶⁴⁾ 신청서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였다.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호주, 브라질, 한국, EU, 대만 등)과 브라질, 호주 제당협회, 한국 제당협회 관련 외국기업 8개사와 중국 수입업체 20개사가 신청자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으나,⁶⁵⁾ 중국당국은 수입설탕의 증가로 중국 설탕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수입물량의 증가와 중국 업계의 손실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품목은 설탕(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 확정조치 기간은 2017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까지 3년간, 추가관세는 매년 하향조정했다. 추가관세는 중국 해관 심사를 거친 세금 납부 후 가격인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정산방식은 ‘추가관세 = 완세가격*추가관세율’이다.

63) 한선희 외 5인 『주요 교역대상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 미국, 중국, 인도』, 한국무역위원회 (2011. 12), 184면.

64)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705/20170502579130.shtml> [2018년 1월 10일 최종방문].

65) 한국 측은 한국 제당협회, CJ 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 등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3-2〉 중국의 설탕 세이프가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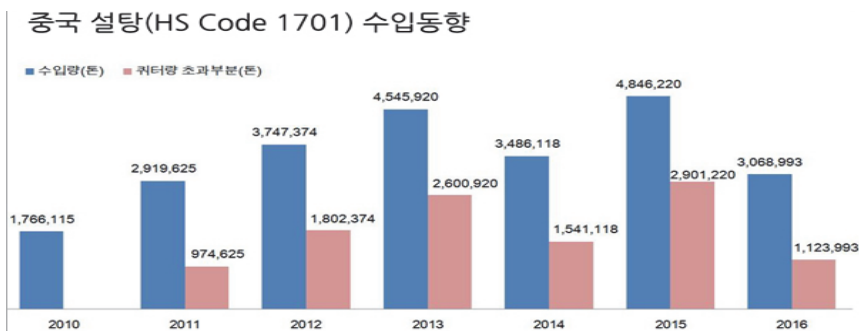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쿼터량(만톤)	관 세 (쿼터 외)	추 가 관 세		
			2017.5.22. ~ 2018.5.21	2018.5.22. ~ 2019.5.21	2019.5.22 ~ 2020.5.21
설탕	194.5	50%	45%	40%	35%

※ 출처 : KOTRA 베이징 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869> [2018년 1월 10일 방문]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2010년까지 수입쿼터인 194만5000톤 이내 2011년부터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최초로 쿼터량을 초과해 291만9000톤에 달했으며 2013년 설탕 수입량은 454만6000톤, 즉 쿼터 초과부분(260만1000톤)이 최초로 쿼터를 초과했다. 2015년 중국 설탕 수입은 480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 쿼터 초과부분은 2011년의 전체 중국 설탕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6.4%의 수입시장 점유율(수입물량 기준)로 4위에 올랐다.⁶⁶⁾

〈그림 3-1〉 중국의 설탕 수입동향



* 출처: 중국 해관통계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869> [2018년 1월 10일 방문]

66) KOTRA 해외시장뉴스, 中 수입산설탕에 세이프가드 전격발동.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869>> [2018년 1월 10일 최종방문].

V 평가와 시사점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DSB에 회부된 사건에서 패널 및/또는 상소기구는 중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고, 중국정부는 이행수준에 있어 제소국의 이의제기로 이행패널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대체로 DSB의 권고 및 판정에 부합되는 시정조치(철회)를 취하였다. 특이한 점은 상기 5건의 사건 모두가 무역강국인 미국과 EU 및 일본이 제소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표 3-1〉 참조).

중국정부의 통상규제조치에 대해 미국은 WTO에 가장 적극적으로 제소해서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중국 국내정책의 시정과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역시 미국정부의 對중국 통상규제조치에 대해, 개도국들과의 분쟁해결방식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WTO 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통상규범의 권리를 관철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정부의 WTO 제소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미국 승소판정은 결과적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기대된다.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

I 중국의 통상정책

1. 개관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경제의 대외 개방, 해외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무역의 활성화, 무역대상국과의 호혜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데,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고성장 모델을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에 근거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자본과 고급기술 및 노하우를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수출지향적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0년 간 수출은 중국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국력제고, 고용창출, 외환보유고 증대,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중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간·지역 FTA의 체결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과 2010년 6월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체결하였고, 2012년 8월에는 세관협력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2013년 6월에는 서비스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2017년 10월 현재 대만과 상품협상이 진행 중이다.⁶⁷⁾ 또한 중국은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와 체결한 FTA가 발효 중이고, 2018년 1월 현재 조지아와 몰디브와의 FTA 협상이 타결된 상태이며, 노르웨이, 스리랑카, 한-중-일, 걸프협력회의(GCC), RCEP 참여 16개국들과 양자간 또는 지역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⁶⁸⁾

2001년 12월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은 WTO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 관련 법규, 정책, 관행 및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반독점법, 기업소득세법, 특허법, 정부정보공개조례 등을 신규로 제정·개정하는 법제 정비사업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중국은 수출 세계 2위, 수입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EU, 미국, 일본 그리고 ASEAN 국가들이며,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대만이다. 중간재 수입국가인 한국과 대만에게는 무역적자를 최종재를 수출하는 미국과 EU에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 왔지만, 거액의 무역흑자로 인해 중국 화폐의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빈번한 무역분쟁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기존의 수출형 제조업에서 녹색, 신성장산업, 그동안 투자가 제한되었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환될 것

67) 중국은 WTO 회원인 홍콩 및 마카오와도 2014년 1월에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11월에 홍콩 및 마카오와 체결한 서비스자유화협정은 2016년 6월에 발효되었다.

68)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으로 보이며, 자원절감형산업, 신에너지산업, 통신, 관광, 교육, 의료, 문화, 출판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던 기초산업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가 선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개방은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산업 구조조정,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의 WTO 통상분쟁 해결정책

중국은 2001년 12월에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전반적으로 WTO 가입 초기에 중국정부는 미국, EU 등이 여러 차례 중국을 WTO 분쟁해결 기구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도 주로 양국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이는 안정된 무역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무역상대국과의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⁶⁹⁾ 다만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함께 2002년 3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여 승소한 것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에 중국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⁷⁰⁾

그러나 WTO 가입 초기(즉 WTO 가입 이후 5년 동안) 이후 다른 회원

69) 서창배, 전제논문, 443면.

70) 다만 동 사건(DS252)은 EU 등(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중국, 뉴질랜드, 브라질)의 제소에 중국이 편승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창배, 전제논문, 446면 참조.

국들이 중국산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통상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세도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2006년 3월 미국이 EU, 캐나다와 함께 중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문제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면서부터 적어도 선진국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2007년부터 통상분쟁에 임하는 중국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다소 공격적으로 전환된 사실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분쟁 건수는 총 13건인데, 이중 중국관련 분쟁건수는 피소 4건, 제소 1건 등 모두 5건에 달하였다(〈표 4-1〉 참조).⁷¹⁾ 동 제소 1건(DS368)은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예비판정과 상계관세 결정에 대해 중국정부가 2007년 9월 14일 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한 사건이다.⁷²⁾

〈표 4-1〉 국가별/연도별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 추이

(기준: 2018년 1월 현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비중 (%)
미국	제소	0	0	1	0	1	3	2	1	3	1	3	0	0	2	3	1	21	48.5
	피소	1	0	0	0	0	1	1	2	0	1	2	1	0	0	1	0	10	69.2
EU	제소	0	0	0	0	1	0	1	1	1	1	1	1	0	0	1	0	8	21.2
	피소	0	0	0	0	0	0	0	1	1	0	1	0	0	1	1	0	5	30.8
일본	제소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2	6.1
	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멕시코	제소	0	0	0	0	0	1	1	1	0	0	1	0	0	0	0	0	4	12.1
	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71) 이상은 다음 자료를 참조: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최종검색일: 2017.12.10.); 서창배, 전계논문, 432, 444면.

72) 다만 동 사건(DS368: *US—Prelimina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on Coated Free Sheet Paper from China*)은 협의 단계에 그치고 패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비중(%)
캐나다	제소	0	0	0	0	1	0	1	0	0	0	0	0	1	0	0	0	3	9.1
	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과테말라	제소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3.0
	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계	제소	0	0	1	0	3	4	5	4	4	2	7	1	1	2	4	1	39	100.0
	피소	1	0	0	0	0	1	1	3	1	1	3	1	0	1	2	0	15	100.0

* 주: 1) <표-1>의 제소는 타국이 중국을 제소한 사안이며, 피소는 중국이 타국을 제소한 사안임.
 2) 동일 사안으로 중국을 제소한 사례로는 2006년: DS339(EU), DS340(미국), DS342(캐나다)/ 2007년: DS358(미국), DS359(멕시코)/ 2008년: EU(DS372), 미국(DS373), 캐나다(DS378), 멕시코(DS388), 과테말라(DS390) 등/ 2009년: 미국(DS394), EU(DS395), 멕시코(DS398) 등임. 반면에, 중국의 동일 사안 제소는 없는 상태.

** 출처: 서창배, 전제논문, 431면.

중국과 관련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통상분쟁 사건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2018년 1월 현재까지 총 56건인데, 피소 건수(39건, 69.6%)가 제소 건수(17건, 30.6%)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은 중국의 자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규제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별 분쟁건수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과 EU가 對中 통상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5%(44건)로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즉 미국과 EU가 중국을 제소한 피소 건수는 29건으로서 중국 전체 피소 건수(39건)의 74.4%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제소한 건수 ‘17건’⁷³⁾의 대부분(15건, 88.2%)이 미국과 EU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2009년 이후 중국과 관련된 WTO 통상분쟁 건수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반덤핑제소에 대해 중국의 국내산업보호를

73) 독립된 건수로 보면 15건이나(DS452는 EU, 그리스, 이탈리아 3국이 모두 분쟁당사국임), 분쟁 당사국 기준으로 보면 17건(EU 5건, 그리스 1건, 이탈리아 1건, 미국 10건)이라 할 수 있다.

위한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간의 중국의 WTO 분쟁해결 정책은 선진국(미국, EU 등)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입각한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보다는 양자간 협의 및 외교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협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통상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II 최근의 한-중 통상분쟁과 시사점

1.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개관

1) 對韓 수입규제와 통상정책 동향

2017년 6월 30일 현재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4건으로, 반덤핑 13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 중 반덤핑 3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건, 화학 9건, 섬유 2건, 기타 제품 2건에 해당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및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며, 교역구조 또한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 재무부는 2016년 12월 23일 '2017년 관세조정방안'을 공개하여,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 대상 품목수를 늘였으며(2016년 787개 → 2017년 822개, 2017년 7월 1일 이후엔 잠정세율 대상 805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잠정세율을 실시하던 소듐아크릴레이트폴리머, 번류 기능을 가진 반도체모듈, 변성알코올 등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과일 생산을 해결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수출세율을 조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질소·인산비료, 천연흑연 등 50개 품목의 수출 관세율을 철폐하고, 삼원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 등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율은 적절히 인하하였다.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산업육성 및 산업구조조정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첨단설비, 핵심부품, 에너지 원자재, 직접회로 테스트 선별장비, 항공기용 액압동력 장치, 직접회로 테스트 분리기, 열분해기 등 최근 중국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관련 품목은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수입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 2017년 6월 12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화장품 안전 위험경고 통보’를 통해 2017년 첫 불량기록 업체리스트를 발표하였다. 2014년 7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 실시세칙(進口食品不良紀錄管理實施細則)’을 시행한 이래,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이번까지 총 6차례의 불량기록 기업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중국당국의 ‘경고’를 받은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해외수출업체는 각각 46개사, 36개사, 40개사로 총 122개 업체에 해당되는데, 이중 한국기업은 해외생산업체 11곳, 해외수출업체 8곳, 총 19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당국은 중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검역강화에 따라 수입불허제품 품목을 공개하고 있다.

일대일로 ‘2.0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맞이하여,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모색을 거쳐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및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모색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통상·경제협력·지역개발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7년 5월 중국이 처음으로 조직한 국제경제협력 논의체인 실크로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동 포럼에는 28개국 정상상을 포함해 130여 개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현재 회원국은 8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지위의 인정과 관련하여 미국·EU·일본 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 호주 등 80여 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일본 등은 시장경제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 11일자로 1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미국과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EU와 일본은 중국의 저가상품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고,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2016년 5월 11일 압도적인 표차(찬성 546/ 반대 28/ 기권 77)로 중국 시장경제지위의 인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⁷⁴⁾ 미국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적극적인 반덤핑 제소를 통해 중국제품의 수입급증을 규제해온 미국, EU, 일본 등 수입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과거만큼 높은 반덤

74) 2017년 6월 중-EU 정상회담에서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하여 중-EU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1월 현재 중국은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⁷⁵⁾

2) 수입규제 예상품목

예상되는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으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의 경우,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2017년 상반기 신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6건 모두가 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법제정비 가속화, 당국의 검역강화 등으로 중국 해관당국의 수입식품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최근 수입불허한 식품 및 화장품은 2010년 1692건에서 2016년 303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생검역의 지속적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외국산 식품의 수입불허 건수는 대만,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수입불허의 최다 원인은 미생물수 기준치 초과이다. 2016년 화장품에 대한 수입불허 건수 최다국은 한국인데,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났다. 향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정비될 것이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과 위생검역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5) 2016년 12월 12일, 중국은 중국산제품을 수반한 반덤핑절차에 있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국가를 위한 정상가격의 결정에 관한 특정 미국법과 EU법 규정에 관해 미국(DS515)과 EU(DS516)와 각각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동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2.1조, 제2.2조, 제9.2조, 제18.1조, 제18.4조, 1994년 GATT 제:1조, 제M:1조, 제M:2조, WTO 설립협정 제XVI: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US-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515/1 G/L/1169 G/ADP/D115/1, 15 Dec. 2016.

집적회로 및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에도, 산업구조조정 기조 하에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에 따른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6월 ‘국가집적회로산업 발전추진 요강’을 발표하며 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하였고, 2015년 차세대 제조산업 육성계획을 담은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노선도’에도 직접회로산업을 명단에 포함시킨바 있다. 2016년 5월 중국 재무부는 직접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와 직접회로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

컨버팅 기능을 가진 반도체 모듈(HS 85044091)은 2016년의 수입 잠정 관세율 3%에서 2017년에는 5%로 오히려 2% 높아졌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16년 1월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의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고시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이 NCM 삼원계 배터리 생산기술을 확보할 시간을 벌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당국은 2016년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을 탈락시켰다. 2017년 6월 말까지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2.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⁷⁶⁾

1)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내용

최근 한·중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및 공격 위협(이하

76) 이하는 주로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 학회논총』 제62권 제3호 (2017. 9), 169-193면 참조.

“핵위협”)에 대해 자위권적 대응조치로 취해진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하 “사드”) 체계의 한국 영역내 배치 결정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⁷⁷⁾ 이후 각종 무역규제는 물론 흡쇼핑과 전자상거래, 중국내 롯데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각종 문화협력, 여행·관광 서비스,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 한국산 상품의 통관 및 수입 등에 대해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제한명령)으로 드러난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강화되었다.⁷⁸⁾

한국산업연구원이 2017년 5월에 발간한 산업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2016년 총 700만명)은 2017년 3월 15일 사드보복에 의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이후 한달간 전년도 동월과 대비하여 60% 가량 감소하였다. 중국인 1인당 쇼핑비용(약 180만원)을 고려해 시나리오 별로 분석한 결과, 한한령이 6개월 지속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동기 대비 30% ~ 70% 감소하는 경우 국내유통부문의 매출손실 피해액이 최소 5조 6천억원, 최대 8억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⁷⁹⁾ 한국은행이 2017년

77)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전력 중 하나로,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레이더와 인공위성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한다. 2017년 4월 27일 사드 발사대 2기가 성주지역에 배치되었는데, 한국정부는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사드발사대 4기를 사드부지에 임시배치하기로 7월 30일 결정하였고,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단행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9월 7일 오전 잔여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사실상 완료하였다. 다만 정부당국은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임시로” 배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드배치의 최종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경향신문』, 2017. 9. 9, 1면).

78)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현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휘정, “중국의 한한령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2017. 2. 21), 1~3면 참조.

79) 이임자·조용원, “한한령조치가 국내 소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I-KET 산업경제이슈』, 제19호(산업연구원, 2017. 5. 22), 6~7면 참조.

8월 3일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는 77억 40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35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중국관광객 수는 66% 감소되었는데, 여행수지 적자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⁸⁰⁾

〈표 4-2〉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현황⁸¹⁾

유형/대상	규 제 내 역	규제이유	정부조치 여부	관련 협정 합치 여부
①상품	한국산 상품(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2016.8 ~)	사드배치에 대한 反韓 감정	×	— (시민의 자발적행위)
②상품/ 위생검역	한국산 상품(화장품, 비데, 식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통관 및 수입금지(2016.11 ~)	구비서류 미비 위생, 식품안전	○	합치추정 (SPS 협정 준수여부 검토 필요)
③상품/ 세이프가드	한국산 설탕수입 세이프가드 조사 (2016.10 ~)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구제	○	합치 추정 (세이프가드협정 준수여부 검토 필요)
④상품/ 덤핑	한국산 폴리아세틸 반덤핑 조사(2016.10 ~)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2016.11 ~)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구제	○	합치 추정 (반덤핑협정 준수여부 검토 필요)
⑤상품/ 보조금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공 취소/배제 (2016.12 ~)	자국산업 육성	○	합치 추정 (보조금협정 준수여부 검토 필요)

80) 한국은행, “2017년 6월 국제수지(잠정)”, 『보도자료』(2017. 8. 3) 참조

81) 〈표 4-2〉의 규제 내역은 주로 아래 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 한재진, 『사드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제17-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7. 3. 7) ; 산업은행, “사드배치와 한중관계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Weekly KDB Report』(2017. 3. 20).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

유형/대상	규 제 내 역	규제이유	정부조치 여부	관련 협정 합치 여부
⑥외국인 투자/기술 규정	롯데마트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 (2016.3~), 중국내 롯데마트 23개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2017.3 ~)	소방안전시설 미비, 사드배치 협조 불만	○	합치 추정, 비합치(자의적 차별인 경우)
⑦국제 항공운송 (여객)	한국행 부정기 항공편(전세기) 1~2월 운항 불허 (2016.12 ~)	사드배치 불만 등	○	합치(개방), (최혜국대우 면제)
⑧뮤지컬 공연 등	백건우, 조수미, EXO(한국 男그룹), 뮤지컬(지킬앤하이드 월드투어) 등의 중국 공연 취소 (2017.1 ~)	사드배치 불만 등	△	합치추정(미개방), 비합치(자의적 차별인 경우)
⑨미술품 전시	한국 미술작가들의 중국전시 무기연기(상해 시립 유조미술관) 등 (2017.4 ~)	사드배치 불만 등	△	합치추정(미개방), 비합치(자의적 차별인 경우)
⑩시청각 서비스	한국 영화, 드라마 및 각종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중국내 방송배급 거절, 중단 또는 제작 유보 (2016.8 ~)	사드배치 불만 등	△	비합치(개방),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차별적 규제
⑪관광, 여행서비스	한국행 단체관광객 20% 감축지시 (2016.10) 한국 관광서비스상품 판매금지 (2017.3 ~)	사드배치 불만 등	○	비합치(개방), (Mode 1, Mode 2에 대한 차별적 규제)

- ※ 주: 1) ○ : 정부조치/관여 해당
 2) △ : 정부조치 불분명하나 정부지침을 통한 관여 의심 있음
 3) × : 정부조치 무관/ 비해당
 4) - : 관련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사드 문제는 한국자동차의 중국시장 판매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6월 1일 현재 현대·기아차의 중국판매는 전년대비 약 65% 감소하였는데, 판매량 감소로 인해 중국 현지 판매망이 와해될 조짐까지 보인다고 한다. 현대·기아차의 중국판매 감소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 협력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⁸²⁾ 사드배치에 관련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상품, 위생검역, 세무 및 안전조사, 반덤핑조사, 보조금 공여 배제, 외국인투자 제한, 시청각 방송, 뮤지컬 공연, 미술품 전시 등에 대한 취소, 한국 관광서비스상품 판매금지 등 규제의 유형 및 대상이 다양하다.⁸³⁾

〈표 4-2〉에 소개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의 현황은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당국, 중국의 공기업과 사기업, 민간기관 및 일반 시민들에 의해 취해진 각종 경제보복조치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11가지), 규제내역, 규제이유, 정부조치 여부, 관련 협정 합치여부로 구분해서 요약·정리한 것이다. 관련 협정(WTO 협정 또는 한중 FTA 등)에의 합치 여부와 관련하여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관련 협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①), 관련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②~⑦), 합치로 추정되나 자의적인 비차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합치로 판정될 수 있는 경우(⑧, ⑨), 구체적인 약속을 위반하여 비합치로 추정되는 경우(⑩, ⑪)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⁸⁴⁾

82)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5월까지 대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총 15억 6938만 달러로 전년대비 33.2% 감소하였는데, 해당 물량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해 현대·기아차 중국 공장에 납품한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2017. 7. 4), 19면.

83) 2017년 3월 17일에 접수된 피해사례(총 67건)의 구체적인 내역(통관 지연 및 불허, 중국어표시, 인증, 반송, 계약보류 파기, 행사취소, 홍보금지, 불매 등)에 대해서는 김기현 “수입조건 변경, 통관지연, 바이어 연락 두절 등 대중 무역애로 신고 봇물”, 『함께하는 FTA』, 통권 제59호(산업통상자원부, 2017. 4. 1), 30-31면 참조.

2)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특징

1978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2002년부터는 역으로 ‘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⁸⁵⁾에 관련된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제보복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⁸⁶⁾ 전통적으로 일방적 제재를 불법적인 것으로 비난해온 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증대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국제관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신정부(2002~2008)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기인한 것이라 추론된다.⁸⁷⁾

84) ‘관련 협정’에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 판단은 분야별 WTO 협정과 ‘한-중 FTA’를 모두 참조하였다. 예컨대 <표-1>의 시청각서비스(⑩)의 경우, 중국은 자국의 WTO 서비스양허표(GATS/SC/135, 14 Feb. 2002)에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비디오 유통서비스, 녹음물 유통서비스, 영화관서비스 부문의 <Mode 1>과 <Mode 2>에 있어 아무런 제한없이(“none”) 양허하였는데, 다만 영화의 행정에 관한 중국 규정의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그러한 수입편수는 연간 20편이어야 한다”는 추가적 약속을 명기하였다 (이는 한-중 FTA, 부속서 8-가-1,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77-17면)와 동일함). 특이한 점은 ‘한-중 FTA’에서 양국은 문화교류의무(제17.21조), 방송 및 서비스 부문에 있어 상호간 협력증진 노력의무(제17.23조), 영화 공동제작 협력(부속서 8-나), 방송용 TV 드라마, 더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장려(부속서 8-다)를 합의하였다.

85) 일반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영토, 주권(특히 대만에 관련된 하나의 중국정책, 티벳 독립에 대한 민족자결권 부인정책 포함), 안보, 중국의 인권정책(특히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 규제, 헌법에 기초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체제의 지속적 안정) 등에 관한 문제를 전략적 핵심이익/가치로 간주한다. 정치 및 군사분쟁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활용 사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집 제2호 (2017. 6), 171~176면 참조.

86) James Reilly, “China’s Unilateral Sanctions,” 35 *The Washington Quarterly* 21 (Fall 2012), p. 121.

87) 중국의 자안지송(簡基松) 법학교수는 중국의 증대된 국제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국의 국제법적 이익을 유지하고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일방적 경제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것을 주장한다. 簡基松, “关于单边经济制裁的‘司法性’与‘合法性’探讨”, 『法学』, 제1호 (2007), 87면.

〈표 4-2〉에 열거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지시 또는 관여를 전적으로 부인하며(“비공식성”), 사드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경제보복조치(〈표 4-2〉의 ①, ⑧~⑩)는 중국 인민과 관련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제한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2017년 3월 2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관광상품 판매중단방침은 관광여행 담당부서인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전달하면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말라는 함구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⁸⁸⁾ ‘한한령’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행정지침에 대해 중국 정부당국은 정부방침이 아닌 ‘인민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강조해 왔다.⁸⁹⁾ 중국 정부당국(공기업 포함)의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표 4-2〉의 ②~⑦), 경제규제조치는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또는 제재로서가 아니라 WTO 협정과 같은 국제규범과 중국의 관련 국내법규를 집행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경우 중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협정위반 판정을 피하기 위한 법리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중국의 일반대중과 협력[공모]해서 특정국가 제품의 불매운동을 권장하거나 관변 언론단체를 동원해서 민족주의

88) 2017년 3월 2일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베이징 상위 20개 여행사와 주요 省·市 20곳 간부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가여유국 긴급회의’라는 제목의 7대 지침(①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전면중단(3월 15일부터), ②한국행 개인여행 업무 전면 중단, ③모든 한국관련 상품은 매진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삭제, ④롯데관련 여행상품은 모두 내릴 것, ⑤한국 저가여행 근절, ⑥크루즈선은 한국부두 정박 불허, ⑦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을 하달하였다. 『조선일보』(2017. 3. 4), A3면.

89) 2017년 3월 1일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중국의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도 국민감정이 있고, 국민감정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정부당국도 조심스러웠다. 자발적 움직임은 있으나, 정부가 조처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http://www.hani.co.kr/arti/PRINT/785037.html> [2017년 6월 23일 최종방문].

적 감정에 호소하고 경제보복조치의 정당성을 홍보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경제보복조치의 효용성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는 중국 일반대중의 분노를 자극해서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니, 경제보복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논거를 중국 외교관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⁹⁰⁾ 이러한 전략은 경제보복에 따른 일반대중의 불만과 비난을 완화시키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와 국민단합 확보는 물론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취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경제보복조치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상징성이 강하고 중국기업 및 산업에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표 4-2〉의 ①~⑩)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중국측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보복조치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선별적(targeted)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⁹¹⁾ 예컨대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연구한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 경제연구소 안드레 푸스(Andreas Fuchs)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그것을 통해 중국의 체제안정에 주는 정치적 이득이 무역전환에 따른 손실을 초과할 경우에 만연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⁹²⁾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은

90) James Reilly, *supra* note 76, pp. 124-125 참조.

91) 일반적으로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를 선호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선별적 제재(targeted or smart sanctions)를 선호하는데,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선별적 제재가 보다 효과적이며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ong Zhao, "Sanction Experience and Sanction Behavior: An Analysis of Chinese Perception and Behavior on Economic Sanctions," 16 *Contemporary Politics* 263 (2010), pp. 266, 275 참조.

92) A. Fuchs and N. Klann,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9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64, p. 166.

“한국경제에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영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⁹³⁾

넷째,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국문화콘텐츠 수입에 대한 중국의 규제 강화(〈표 4-2〉의 ⑩ 참조)는 중국의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지주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제개편 및 정책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⁹⁴⁾ 〈표 4-2〉의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관련 사례(⑤)와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2016년까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 12월 29일에 발표한 목록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였다.⁹⁵⁾ 중국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한 대당 2만~4만 4000위안(약 330만~73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버스나 트럭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⁹⁶⁾ 중국정부의 새로운 보조금 제

93) “중 경제보복 당한 국가들의 교훈해 자칫대 확보”, <http://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1.html?type=> [2017년 6월 23일 최종방문].

94) 장은정, “중국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의 이해”, 『중국법연구』 제30집 (2017. 5), 353-355, 375면 참조.

95)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2015년 ‘자동차 동력축전지 산업규범조건’(汽车动力蓄电池行业规范条件)을 채택하였는데, 동 ‘규범조건’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자동차용 동력축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리튬이온 동력축전지 개체기업 연간생산능력은 2억 와트(2017년 수정초안은 80억 와트로 변경), 니켈금속수소화물 동력축전지 개체기업 연간생산능력은 1천만 와트(2017년 수정초안은 1억 와트로 변경) 이상 이어야 하고(제2조 8항), 개체기업은 ‘최근 2년 동안’(2017년 수정초안에서 추가됨) 생산경영 및 제품응용면에서 중대한 사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연구개발인원이 기업직원 총수의 10% 이상 또는 총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고(中華人民共和國 工業和信息化部公告), 2015년 제22호. <http://miit.gov.cn/n1146295/n1652858/n1653100/n3670459/c3679115/content.html> ; 2017년 수정본 http://news.xinhuanet.com/auto/2016-11/29/c_1120009222.html [2017년 7월 8일 최종방문].

96)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분야를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300만 대로 늘리겠다고 공표하였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상태이다. <http://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1.html?type=> [2017년 6월 23일 최종방문].

도 때문에 삼성 SDI와 LG화학의 중국 배터리공장의 가동률은 10~20% 수준까지 감소한 실정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축전지 산업규범조건’은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한 부품(бат데리)을 사용한 전기승용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특정성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규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한국산 бат데리가 보조금 공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볼 때, 중국정부는 한국산보다 성능이 미흡한 중국산 бат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보호 육성 수단으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위생검역, 식품안전, 환경, 안전관리에 관련된 중국인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정책과 중국의 10대 핵심전략산업 보호육성정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⁹⁷⁾ 예컨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통관 불허 조치는 대부분 수입상의 서류미비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불허 사유는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기준을 초과한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화된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정책과 중국의 10대 핵심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국내법에 따른 중국의 통상규제는 사드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⁹⁸⁾

97) 10대 핵심전략산업: 차세대 IT 기술, 고급디지털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 설비 및 첨단선박, 신진 궤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http://news.xinhuanet.com/finance/2015-05/20/c_127819790.htm [2017년 7월 8일 최종방문].

98) 예컨대 중국의 2016년도 수입상품 불합격순위는 대만(2016년 1~11월 631건)이 가장 많았으나,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2014년 808건, 2015년 746건)에도 중국통관에서 불합격된 대만산 식품과 화장품이 가장 많았다. <http://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1.html?type=> [2017년 6월 23일 최종방문].

3) WTO 협정상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위법성 분석

(1) WTO의 관할권 존재 여부

WTO 협정상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위법성 논의에 앞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쟁점 또는 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① 정부조치의 존재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중국의 ‘정부조치’(governmental measure)가 존재하여야 한다. WTO체제하에서 ‘분쟁해결양해’를 원용할 수 있는 제소사유에는 ① 협정위반 조치로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는 경우, ② 협정위반이 아닌 조치로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③ 기타 상황의 존재로 인해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다 (DSU 제3.8조, 제26조).

중국정부는 사드 관련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이므로 정부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드 관련 경제보복조치가 한국정부에 의해 WTO에 회부될 경우 중국 정부당국의 국가책임을 부인함으로써 WTO 협정의 적용성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DS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부조치라 함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로서 이에는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여하한 작위나 부작위’(any act or omission)도 포함된다.⁹⁹⁾ 예컨대 ‘EC-생명공학제품 사건’에서 패널은 EC의 유통승인절차는 EC에 귀속되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유통승인절차 상의 ‘사실상의 일반적인 모라토리움’(de facto general moratorium) 또한 EC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결하였다.¹⁰⁰⁾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DSB에 회부하기 이전에는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중국정부의 조치가 존재하였으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에 중국정부 당국이 관련 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WTO 합치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패널설치 이후에 정부조치가 철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패널의 심리범위(terms of reference)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패널에게 있다.¹⁰¹⁾

② 정부조치의 구속성

DSB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제소국의 ‘정부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동 정부조치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시행된 ‘법 또는 규정’(laws and regulations)이 포함되나, ‘법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에 미치지 못하는 기타 정부조치’(other governmental actions short of legally enforceable enactments)도 포함된다.¹⁰²⁾ 따라서 사드

99) *US—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Germany*, AB Report, WTO/DS213/AB/R, 28 Nov. 2002, para. 81.

100)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Panel Report, WTO/DS291, 292, 293/R, 29 Sep. 2006 (“*EC—Biotech Products*”), paras. 7,1290–1295.

101) *Ibid.*, para. 7,1308 ;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Panel Report, WT/DS54, 55, 59, 64/R, 2 July 1998, para. 14,9. 그러나 협정위반 제소절차와 달리, 협정비위반 제소절차의 경우에는 정부조치가 제소이후에 철회되었거나 종료된 조치가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조치여야 한다.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Panel Report, WTO/DS44/R, 31 Mar. 1998, para. 10,57.

배치에 관련된 중국정부의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취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주의 일당(공산당) 독재국가라는 중국의 특이한 정치체제를 고려해 볼 때, 구속력이 결여된 특정의 행정지도 또는 지침에 따라 경제보복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사실상 정부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DSB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패널은 WTO 협정에의 부합성 여부를 평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따른 민간기관의 조치

GATS의 경우에도 ‘회원국의 조치’에는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기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해 취해진 조치도 포함되는데, 각국은 자국영역내의 지역, 지방정부 및 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제I.3조 ④). GATS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비정부기관’은 민간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민간당사자(사기업 및 민간기관)의 행위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관여(위임 또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¹⁰³⁾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정부의 개입과 관여는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긴 하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고위공무원의 강력한

102) *ibid.*, para. 10.43.

103) *ibid.*, para. 10.56. ‘일본-필름 사건’에서 패널은 정부조치를 조치의 ‘효과성’(effectiveness)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장려 / 행위억제기준’(incentives / disincentives test)과 민간당사자의 ‘순응 가능성’(likelihood of compliance)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구속적 조치의 정부조치성을 폭 넓게 해석함으로써 대부분의 조치(16개 중 12개)를 협정비위반제소 요건상의 정부조치로 인정하였다.

비난발언이 행해질 때마다 경제보복조치가 연속적으로 취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국정부의 개입 및 관여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DRAMs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개별적 정황증거 자체가 정부조치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정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조치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⁴⁾ 따라서 사드배치에 관련된 중국정부의 조치가 사기업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취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의 특이한 정치체제를 고려해 볼 때,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특정의 행정지도 또는 지침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볼때 중국내 사기업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對韓 경제보복조치를 위임 또는 지시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조치가 정부조치로 간주되는 것으로 DSB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패널은 WTO 협정에의 부합성 여부를 평결할 권한을 가진다.

④ 미양허 품목 또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관할권 여부

WTO 협정에서 중국정부가 양허하지 않은 품목 및 서비스부문에 관련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도 ‘1994년 GATT’ 또는 GATS 위반 여부를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WTO 협정 상 미양허 품목 및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경제보복조치가 허용되는가? 만약 미양허 품목 및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WTO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양허 품목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104)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WT/DS296/AB/R, adopted 27 June 2005, paras. 153-154, 157.

서비스무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약속한 범위내에서만 의무가 발생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달리, 회원국은 최혜국대우원칙과 투명성원칙과 같은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에 대해서는 ‘양허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최혜국대우는, 최혜국대우 의무면제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¹⁰⁵⁾ 양허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분야든(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야도 포함)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즉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any measure)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treatment no less favourable)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GATS 제II.1조).

다만 서비스무역의 경우 미양허(“unbound”)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의무가 없으며, 양허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유보한(“commitment with limitation”) 양적 제한조치(즉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제한)는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있어(예컨대 <표-1>의 ⑩, ⑪의 경우)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시행되도록 보장한다(GATS 제VI.1조). 따라서 중국 정부당국은 GATS(제VI.1조)와 ‘한-중 FTA’ 규정(제8.7조 제1항) 상 시청각서비스, 관광여행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적 경제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105) 중국은 해운운송서비스, 국제운송서비스, 화물 및 여객서비스 이외에는 GATS 제II.2조에 따른 최혜국대우 의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GATS/EL/135, 14 Feb. 2002.

상품무역의 경우 미양허 품목에 대해서도 ‘1994년 GATT’의 일반의무(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상품무역의 경우 관세양허의무는 양허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관세양허에 관한 GATT 의무는 i) 관세양허에 대한 의무와 ii) 양허표에 기재된 물품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GATT 의무로 이분할 수 있는데,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와 같은 일반의무는 관세양허의 회피나 이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¹⁰⁶⁾

(2)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제보복조치의 위법성

WTO 협정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보복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일반국제법상 자국 관할권내의 人, 物, 行爲에 대해서 이른바 역내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영역국가의 배타적 관할권행사가 허용되는데, 역내적 관할권 행사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허용원칙은 주권평등원칙과 영역주의 우위성원칙에도 부합된다.¹⁰⁷⁾

WTO 협정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상규제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정치적 목적의 통상규제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없다는 이유로,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일반국제법상의 상기 일반적 허용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통상규제조치(수출입, 시장접근, 외국인

106) 비관세장벽은 관세양허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규제하는 모든 GATT 및 WTO 규칙들은 ‘1994년 GATT’ 제1조상의 관세양허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107) 국제법상 역내적 관할권과 역외적 관할권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최승현, 전거서, 105-108면 참조.

투자 등에 대한 제한)와 일반의무(즉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과 같은 기본 법원칙)에 대한 여하한 통상제한은 일반국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회원국인 WTO 협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¹⁰⁸⁾ 예외규정(일반적 예외, 안보예외, 국제수지방어 예외, 지역무역협정 예외, 의무면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상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예컨대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WTO 협정상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할 수 있겠는가? GATT 및 WTO 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제한조치를 WTO 법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1994년 GATT’(제XXI조),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제XIV조의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제73조) 등은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통상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상기 안보예외 조항은 ‘한-중 FTA’(제21.2조)를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국간 투자협정(BIT)에도 포함되어 있다.¹⁰⁹⁾

그러나 상기 안보예외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일반적인 통상규제를 허

108) WTO ‘분쟁해결양해’(DSU)는 절차규칙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일방적 보복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SU 제23.2조). DSU 상의 절차규칙은 원칙적으로 WTO 협정상의 분쟁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긴 하나, WTO 협정밖의 분야에 관한 분쟁이나 협정비위반에 관련된 분쟁시에도 특정국가의 자의적인 국내법기준에 입각하여 일방적 보복조치를 실제로 취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간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WTO 체제의 기본원칙인 다자주의 원칙 또는 정신에 위반된다. 일방적 통상보복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승환, “WTO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전계논문, 91-108면 참조.

109)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2006.12) 15~16면. 다만 GATS 상의 안보예외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는데, 회원국이 국가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 조치 및 관련정보를 가능한 한 충분히 통보한다(제XIV조의 2, 제2항).

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거적 요건(①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공개 거부, ② 핵물질 및 군사용 품목거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 기타 비상조치, ③ 유엔헌장상의 의무이행조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의 대상이 된 규제품목이 중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아니며, 사드배치와 규제대상품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對韓 경제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기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¹¹⁰⁾

(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위반

GATS는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measures by Members)에 대해 적용된다(제I.1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affecting)이라는 용어는 ‘관계되는’(relating to)이라는 용어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라 함은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기타 형태 등으로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any measure)를 의미한다(제XXVIII조 ①a). 회원국의 조치에는 i)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ii)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iii) 다른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인(人)의 주재를 포함한다(제XXVIII조 ①c). 다만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I.3조 ①b). 여기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

110) 같은 견해: 이재민, “THAAD 배치와 중국 정부의 對韓 관광산업 제한조치: GATS 협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7. 7), 32면.

스'란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같이 상업적 차원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다른 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 III.3조 ©). 따라서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는 GATS 위반 여부를 원용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행정지도하에 중국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서비스상품(호텔 및 식당 예약 서비스, 항공권 예약 및 판매 서비스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GATS에 위반되는가? 중국여행사들에 의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는 중국인들의 한국내 여행관광 관련 서비스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여행사들을 통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 금지조치는 GATS 규정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WTO 사무국에 제출한 서비스양허표의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분야에서 중국은 '호텔(아파트 포함) · 레스토랑'(Hotels(including apartment buildings) and Restaurants)과 '여행알선 대행'(Travel Agency and Tour Operator) 서비스 부문의 <Mode 1>과 <Mode 2>에 있어 모두 아무런 제한없이("none") 양허하였기 때문에,¹¹¹⁾ 중국여행사를 통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GATS 제XVI.1조¹¹²⁾(시장접근)와 제

111) GATS/SC/135, 14 Feb. 2002, pp. 38-40 참조. 중국의 WTO 서비스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무역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약속(horizontal commitments) 부분에서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의 지분문제(외국인 투자비율은 자본의 25% 이상), 토지소유권 문제(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기업과 개인의 최대 토지사용기간 설정)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중국의 한국 관광서비스상품 판매금지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없다(bid, pp. 2-4 참조. 한-중 FTA, 부속서 8-가-1,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중국)에서도 동일함). '한-중 FTA'의 서비스양허표는 <http://www.fta.go.kr/cn/doc/1/> 참조 [2017년 9월 10일 최종방문].

112) 시장접근에 관해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과 제한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GATS 제XVI.1조). 여

XVII.1조¹¹³⁾(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¹¹⁴⁾

특히 중국의 여행알선 대행업체에 의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 판매금지조치는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서비스 영업의 총 수(total quantity), 또는 서비스 총산출량(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시장접근에 관한 GATS 제XVI.2조(b, c호)와 ‘한-중 FTA’ 제8.3조 제2항(나, 다호)에 위반된다.¹¹⁵⁾

3. 시사점과 대응방안

1) 시사점

한-중 통상분쟁의 현황에 대한 상기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 기서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허용은 외국의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자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한-중 FTA’ 제8.3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 113)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 이외에는, 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서비스 및 공급자에게도 국내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의 경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GATS 제XVII.1조). 즉 각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조치를 하든 각국의 재량에 속하나, 일단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대해서는 동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조건 및 제한) 이외의 차별조치를 취하게 되면 협정상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에 위반된다. ‘한-중 FTA’ 제8.4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 114) 다만 ‘한-중 FTA’ 서비스양허표에서 중국은 여행알선 대행서비스의 경우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none”)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Mode 3)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다만 “합작투자 또는 완전지분소유 여행알선 대행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중 FTA, 부속서 8-가-1,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중국), 77-32면 참조). 따라서 합작투자나 완전지분소유 형태가 아닌 기타 형태의 중국내 여행알선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115) GATS 규정상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민, 전계논문, 10~33면 참조.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심각성에 대해 과대평가해서도 아니되겠지만,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우리 정부당국이 관련 기업과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일이다.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안보능력의 향상은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우리나라의 경제통상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사드배치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정부의 후속성명에서 보다시피 사드문제는 잠정적으로 봉합된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중국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국가 핵심이익을 유지하고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방적인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최근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자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재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당국은 향후 사드배치와 유사한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고 우리의 외교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대만, 일본, 베트남, 노르웨이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정부당국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중국의존도를 지양해서 수출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해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과거 타국에 대해 취했던 경제보복조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중간재(기계장비 등)를 제공하는 국가(독일 등)에 대해서는 경제보복조치를 자제했던 사례를 유념하여, 중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중간재 품목을 확대·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현안(인권,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위안부와 사드문제 등 국제현안에 있어 내부통합을 제고함으로써 대외협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영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대응체제에 불과한 사드는 국제법상 효과적인 자위권적 조치로서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영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면, 사드 운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의 국제공조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면,¹¹⁶⁾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 또한 국가안보의 효용성 제고와 실용주의적 통상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사드배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후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나, 총 9차례나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계속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의 확고한 핵개발 의지를 고려해 볼 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다.

사드배치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자국의 핵심가치/이익이라고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적절히 반영하여 (예컨대,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를 북한영역으로 한정하되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사드를 철회하는 절충안 등을 제시하여)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드 추가배치 완료 이후의 돌이킬 수 없는 한중 우호관계의 파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이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G2 국가로서 책임있는 정치적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 한국 또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드운용 방식 및 정책에 적절히 반

116) Brianni Le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38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34 (Special Issue, Winter 2017), 7. 37(사드배치는 파괴적인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평).

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호혜적인 무역투자확대에 따른 경제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생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임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무역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자적 해결보다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WTO 협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무역규제조치에 대해서는 WTO 관련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련 WTO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국과 체결한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입각한 양자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무역규제 관련 조례와 WTO 협정 모두에 세부규정이 없는 경우 '한-중 FTA'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으로는 WTO 협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안(특히 <표 4-2>의 ⑩, ⑪)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국제분쟁 발생시 양자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은 약소국에 불리하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자국의 주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법적 해결보다는 외교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¹¹⁷⁾ '미국-개질휘발유 사건',¹¹⁸⁾ 2000년 '한중 마늘분쟁 사건'¹¹⁹⁾ 등에서 보다시

117) 최승환,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 『통상법률』, 통권 제13호 (1997. 2), 128면.

118) 동 사건에서 베네수엘라는 '대기정화법'(CAA)에 근거한 미국환경보호국(EPA)의 휘발유규칙(Gasoline Rule)상의 환경기준(기준치 설정방식)이 수입휘발유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

피, 협상력이 열세인 약소국은 WTO 회부와 같은 국제법에 따른 다자적 분쟁해결방식이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WTO 회부 카드는 정치외교 문제와 통상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한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¹²⁰⁾ 중국정부의 부당한 보복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려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사드 경제보복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¹²¹⁾

예컨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 영해를 침입한 중국 선장을 일본정부가 구속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對日 수출을 금지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함으로써 승소평결을 받았고,¹²²⁾ 결과적으로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금지조치를 철회시키는

써 '1994년 GATT' 제3조 4항(내국민대우)을 위반하였으며 제20조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평결을 패널과 항소기구로부터 받아냄으로써 자국산 휘발유에 대한 미국법 상의 차별적인 대우를 시정받는데 성공하였다. *U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29 Jan. 1996 and WT/DS2/AB/R, 20 Apr. 1996 참조.

119) 2000년 6월 1일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한국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중국정부가 55배 이상이나 되는 규모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야기된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간 외교협상을 통해 2000년 7월 15일 타결되었다. 한국산 제품(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는 한중 마늘협상에서 중국 측에 유리한 합의서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한중 마늘분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승환,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2000. 8), 83-108면 참조.

120)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인 자창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중국정부의 사드 대응과 관련해서 "짚은 경제제재는 중국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외투자 유치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문제는 경제로, 군사문제는 군사로, 정치문제는 정치로 대응하는데 가장 좋다"고 조언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6/2017031600154.html [2017년 6월 23일 최종방문].

121) 일본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희토류 수출금지)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여 승소하였으며, 필리핀 또한 2012년 남중국해에 있는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분쟁시, 중국이 필리핀 관광을 중단하고 필리핀산 바나나 통관을 거부하자, 2013년 동 영유권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2016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아 내는데 성공하였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7&M=04&D=03&ID=2017040300097 [2017년 6월 23일 최종방문].

122)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Mode 1〉 과 〈Mode 2〉에 해당하는 서비스무역형태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있어 양적 제한조건을 전혀 유보하지 아니한 시청각 서비스(〈표 4-2〉의 ㉑)와 여행관광 서비스 관련 부문(〈표 4-2〉의 ㉒)에 관련된 중국의 對韓 통상규 제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³⁾ WTO 회부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이 글에서 검토된 WTO 회부 요건(정부조치의 존재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도록 하여, 향후 중재패널이 설치될 경우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 및 민간기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시나 위임 또는 기타 관여 사실을 적절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대응방안¹²⁴⁾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은 i) 수출입, 통관 관련 증빙서류 구비요건의 충족, ii) 중국 국내법상의 적법성 요건 충족, iii) 중국 국내법상의 국내적 구제 활용, iv) ISD 중재 회부, v) 수출입,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거래 다변화 모색 등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다.

WT/DS431, 423, 433/AB/R, 7 Aug. 2014.

123) WTO 회부나 ISD 제소를 통해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송 기호, “ISD·WTO로는 사드보복 해결 못한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8일자, 31면 참조. 사 드문제에 관련된 중국의 정책은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에 입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 는 것이라는 중국의 공상치엔(龚向前) 교수는 통상분쟁 해결은 통상법체제 내에서 사드문제는 국제법상의 협상을 통해 각각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Xiangqian Gong, “THAAD and China's Trade Policy with South Korea,” *China and WTO Review* 169 (Yijun Press, 2017, 3), pp. 170,172.

124) 이하는 주로 최승환,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특징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과 법무』 통권 제17호 (2017. 12), 8-11면 참조.

첫째, 2016년 11월부터 개시된 한국산 화장품, 비데, 식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통관 및 수입금지조치는 수출입 및 통관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관세사와 회계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구비서류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한다. 예컨대 2016년 11월 수입통관이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 19건 중에서 13건이 수입상의 서류미비 때문이었다.

둘째, 위생검역과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고려하여 관련 중국 국내법상의 변경된 정보와 요건을 사전에 입수하여 관련 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위생검역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WTO ‘위생검역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위생검역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당국에 제공하고 필요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정부간 협의와 한중 FTA, WTO 회부 등)를 요청하도록 한다.

셋째, 고품질, 저가격, 디자인 개발, 현지화 강화 등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국산업연구원이 2016년 6월 18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i-KIET 산업경제이슈』 제19호)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일본과 독일 브랜드에 비해 상표이미지가 낮은데다 중국 로컬자동차의 경쟁력이 가격, 품질, 안전성 등에서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중국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한 것은 단순히 사드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므로 품질개선과 가격인하, 중국 현지에 맞는 모델 개발, 새로운 거래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넷째, 중국 국내법상의 국내적 구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한국산 제품과 한국인 투자자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자의적인 차별조치에 대해 2008년에 발효된 중국의 반독점법을 활용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중국정부의 권리남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인 이른바 행정독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은 ‘한중 FTA’ 투자분쟁해결절차규칙(제12.12조)을 원용해서 투자자-국가간 국제투자중재(이하 “ISD 투자중재”)에 회부하도록 한다.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규제로 인한 투자피해에 대해 ISD 절차규칙을 원용할 수 있다. 예컨대 소방안전시설의 미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 중국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 조치라 하더라도,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ISD 투자중재’에 회부하는 분쟁해결절차규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출입,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에 있어 다변화를 모색하도록 한다. 예컨대 센카쿠열도의 영해를 침입한 중국선장의 구금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인도, 베트남, 호주 등과 협력해 희토류 광산 개발, 산학연이 공동으로 희토류 대체기술과 재활용기술 확보함으로써 희토류 수입물량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2016년 5월 이후 단행된 중국당국의 대만 관광제한조치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이른바 신남향정책을 통해 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남아시아 6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존도를 낮추고 대만관광객을 예전보다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2014년 중국과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영유권 분쟁 발생시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받았던 베트남은 한국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중국수출 비중을 줄여 경제보복위기를 극복하였다. 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인사인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대해, 중국정부가 노르웨이산 연어수입을 6년간 금지한바 있는데, 2011년에는 중국시장에서 노르웨이산 연어의 점유율이 90%에서 30%로 떨어졌으나, 노르웨이 정부는 EU, 한국시장 등을 통한 수출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최근의 미-중 통상분쟁과 시사점

1. 미-중 통상분쟁의 현황과 전망

1) 개 관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최대 수입상대국이며 제3위 수출상대국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유발국으로, 2015년 기준으로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3,808억 달러)의 49.6%를 차지한다.¹²⁵⁾

〈표 4-3〉 미국 행정부의 무역규제 유형 및 근거

발동 가능한 무역규제조치	법적근거	담당기관	발동요건
추가관세 부과, 수입쿼터 할당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b)조	상무부	수입증가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추가관세 부과, 수입쿼터 할당	1974년 통상법 제122조	대통령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관세인상과 기타 수입제한 등 통상보복 조치	1974년 통상법 제301~307조	USTR	통상협정상의 미국 권익 침해

미국의 대중 통상분쟁은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 재량의 규제,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의 국내법원 및 WTO 제소, WTO 협정 위반 감시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이 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관찰대상국(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중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대한 구제조치 차원에서 중국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한 제재 시행 등이 가능하게 된다.¹²⁵⁾

특히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 재량의 규제는 행정부에 위임된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b)조, ‘1974년 통상법’ 제122조, ‘1974년 통상법’ 제301~307조 등이 있다 (〈표 4-3〉 참조).

125) 정환우,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KOTRA 사업단 (2017. 4), 6면

126) 상거서, 13-20면 참조.

예컨대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b)조에 따라 상무부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대통령은 상무부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 또는 조정(adjustment)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해당국가와의 협의가 18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협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7년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제232조에 의거해 철강(주로 중국산 철강)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 처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4월 19일 이미 제232조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제232조에 의거한 상무부의 주요 조사 내용은 i) 철강수입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로 국내 철강산업의 안보 요건이 위협받는지 여부, ii) 철강수입이 정부 재정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iii) 철강수입이 경제복지와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이다. 제232조에 따르면 관련 조사는 최장 270일 동안 진행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에 의해 조사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¹²⁷⁾ 2018년 1월 현재까지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b)조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사건은 총 28건에 달하나, 국가안보 위협이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8건이며, 실제로 대통령이 특정한 수입제한조치(예컨대 1982년의 리비아산 석유금수조치)가 실시된 경우는 5건에 달한다 (〈표 4-4〉 참조).

‘1974년 통상법’ 제122조에 따라 대통령은 심각한 국제수지를 조정하기

127) 정철 외 7인, “미국 트럼프행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KIEP, vol. 17, No.18 (2017. 5. 12), 7면; 김은영·정혜선,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Focus, 제6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2), 11-12면.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추가관세 또는 수입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만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은 미국이 가입한 통상협정이 국제수지 위기에 따른 수입쿼터 설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

‘1974년 통상법’ 제301~307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i) 통상협정상의 미국의 권리가 부정되고 있는 경우, ii) 외국의 법률(act), 정책(policy) 또는 관행(practice)이 통상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양립하지 않는 경우, iii) 통상협정에 근거한 미국의 이익을 부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당해서(unjustifiable)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하였을 경우 그 국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301조상의 보복조치를 취해야만 한다(mandatory action).¹²⁸⁾ 또한 USTR은 iv) 외국의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이 불합리하거나(unreasonable) 차별적이어서(discriminatory)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 USTR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discretionary action).¹²⁹⁾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USTR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하고 실현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보복조

128) 여기서 ‘부당’하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그와 부합되지 않는 법률·정책·관행을 말하는데, 이에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기업설립의 기회, 지적재산권보호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제301조(a)(1), (d)(4)).

129) 여기서 ‘불합리’란 국제법상의 미국의 권리에 반드시 위반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달리 불공정하고(unfair) 불평등한(inequitable) 법률·정책·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에는 무역상대국의 수출육성정책, 노동권침해, 미국상품 및 서비스구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공기업 포함)의 ‘조직적 반경쟁활동’(systematic anticompetitive activities)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차별적’이란 미국의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부정하는 법률·정책·관행을 의미하는데, 이에에는 수출보조금, 수입규제, 보험시장의 폐쇄 및 차별, 고관세, 불합리한 소매가격, 광고상의 차별 등이 포함된다. 상기 보복조치는 미국통상에 대한 부담 또는 제한과 가치에 있어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제301조(b), (d)).

치에는 i) 관세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ii)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기타 수입제한조치, iii) 관련당사국과의 보상 또는 불공정무역관행 등의 개선 등을 위한 협정의 체결, iv)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기업에 대한 승인의 취소 또는 새로운 조건의 부과 등이 포함된다(제301조(c)).¹³⁰⁾ USTR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01조에 의한 특정 보복조치를 실시한다. USTR은 일정한 경우 동 조치의 실시를 180일 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또는 해당 국가만을 상대로 취할 수 있다. 또한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분야는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인해 청원사유를 제공한 물품이나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제301조(c)(3), 제305조(a)).¹³¹⁾

〈표 4-4〉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개시 및 조치 시행현황

조사요청 연도	산 업	조사요청자	위험판정	시행조치
1963	망간	민간 협회	×	없음
1964	텅스텐	민간 협회	×	없음
1964	미끄럼방지 베어링	민간 협회	×	없음
1965	시계	대통령	×	없음
1968	크롬, 망간	민간위원회	×	없음
1969	미니어처	민간 협회	×	없음
1972	초고압 전력회로	민간 협회	×	없음

130) '1994년 UR협정이행법'은 불공정무역관행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등 미국의 특혜관세 프로그램상의 적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특혜프로그램에 의한 특혜대우를 철회제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USTR에 추가로 부과하였다(제314조(b)).

131) '1994년 UR 협정이행법'은 물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제314조(a)(1)).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

조사요청 연도	산 업	조사요청자	위협판정	시행조치
1973	석유	정책위원회	0	없음
1975	석유	재무장관	0	없음
1978	너츠, 볼트, 철강나사	대통령	×	없음
1978	석유	재무장관	0	없음
1979	석유	재무장관	0	없음
1981	유리선 화학제조기구	민간 협회	×	없음
1981	크롬, 망간	민간 협회	×	없음
1981	너츠, 볼트, 철강나사	국방장관	×	없음
1982	리비아산 석유	대통령	0	리비아 석유금수조치
1987	철강절단기	민간 협회	미판정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1987	미끄럼방지 베어링	민간 협회	×	없음
1987	석유	정부 기관	0	에너지산업구조 개선계획
1988	플라스틱 틀 기계	민간 협회	×	없음
1988	우라늄	에너지장관	×	없음
1991	기어	민간 협회	×	없음
1992	내부회로 세라믹	민간 협회	×	국방부-상무부 협동계획
1994	석유	민간 협회	0	없음
1991	석유	통상장관	0	없음
1992	철강	국회의원	×	없음
2017	철강	대통령	판정 미공개	미결정
2017	알루미늄	대통령	판정 미공개	미결정

* 출처: 유지영, “국가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통권 제138호 (2017. 12), 20면.

2)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구제 관련 분쟁 현황과 평가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에 의해 제소당한 통상분쟁은 2018년 1월 현재 총 21건이며,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는 11건에 달하는데, 이중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5건은 위에서 소개된 중국—X-ray 장비 사건(DS425), 중국—스테인레스철강 사건(DS454), 중국—전기강판 사건(DS414), 중국—닭제품 사건(DS427), 중국—자동차 사건(DS440)이다.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사례에 해당하는 11건의 통상분쟁 중에서 기타 6건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건으로 분쟁해결절차 진행 도중에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로 철회되었거나(DS358, DS387, DS419, DS450), 패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DS489, DS519)이다.

특이한 점은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동 6건(즉 철회, 중단, 진행건수)의 분쟁사례는 반덤핑관세 조치가 아닌 주로 중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DSB에 회부된 점이다. 그리고 상기 11건의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은 반덤핑관세 및/또는 상계관세가 원용된 사례들이나 세이프가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WTO에 회부된 무역관련 통상분쟁사례 11건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총 21건 통상분쟁의 52.4%에 달한다(〈표 4-5〉 참조).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적용에 있어 명료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거나, 피해 산정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표 4-5〉 중국-미국간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현황

(2018. 1 현재)

피제소국/ 제소국	총 제소 건수	무역구제 관련 분쟁건수 (철회, 중단, 진행 건수)	특 이 사 항	무역구제 분쟁의 비율
중국/ 미국	21건	11건(6건),	총8건 중 1건은 패널 구성 단계. 세이프가드 분쟁은 없음	52.4%
미국/ 중국	10건	8건	세이프가드 분쟁 1건 포함	80.0%

반면 중국이 ‘제소국 자격으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은 8건(DS368, DS379, DS449/이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DS422, DS471, DS515/이상 반덤핑관세, DS437/이상 상계관세, DS252/이상 세이프가드)에 달한다. 8건 중에서 1건(DS515)은 협의 단계가 진행 중이다. 즉 WTO에 제소된 미국과 중국 간의 총 10건의 통상분쟁 가운데 무역구제가 차지하는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수동적인 피제소국 입장이 아니라 ‘제소국 입장에서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WTO를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우호적인 외교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했던, 중국이 2007년에 와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상계관세부과에 대해 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에 들어와 중국과 관련한 WTO 통상분쟁 회부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09년이 ‘중국 WTO

분쟁해결 발흥의 해'라고 일컬을 정도로 적어도 선진국을 통한 통상분쟁 해결에 있어 중국은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다.¹³²⁾

3) 전망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미국정부는 상무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무역구제조치 건수와 강도를 높여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리라 전망된다. 예상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i) 상무부의 자체조사 개시, ii) 불리한 입수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적극 활용, ii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불인정 등이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은 '미국-반덤핑 방법론 사건'(DS471)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73개의 조사절차에서 AFA를 적용하여 반덤핑관세율을 극대화시킨 바 있다.¹³³⁾ 특히 관련 국내산업의 제소가 없는 경우에도 상무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절차를 개시해서 중국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치실행 건수도 확대하리라 예상된다.

132) 서창배, 전계논문, 445면 참조.

133) 장승화,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 11), 9면. 미국이 AFA를 적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이밖에도 침실용 가구(2004. 11 확정조치, 2013 재심), 냉동 및 통조림 새우(2004. 12 확정조치, 2013.4 재심), 다이아몬드 공구(2006. 5 확정조치, 2013. 6 재심), 오프로드용 공기타이어(2008. 7 확정조치, 2013. 4 재심), PET 필름(2008. 9 확정조치, 2013. 6 재심), 유정용 강관(2010. 4 확정조치, 2012. 12 재심), 직물제 리본(2010. 7 확정조치, 2013. 2 재심), 그래픽프린트용 코팅지(2010. 9), 알루미늄 입출물(2011. 4), 마루용 나무(2011. 10 확정조치), 실리콘 셀(2012. 12) 등이 있다. 박진달·윤미숙, 「세계무역구제조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4. 9. 10), 58면.

그러나 무역구제 조치는 사안의 성격상 덤핑조치가 취해진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특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상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전체에 대해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전면적인 또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으며 중국도 상응하는 보복수단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2009년 중국은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산 자동차, 닭고기, 평판압연강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대응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구제조치의 견수와 규제 강도를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서, 중국이 상응하는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될 개연성이 상존한다.

중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현재 미국정부는 중국을 시장경제지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의 국내가격 대신 제3국 가격 등 대체가격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덤핑 마진을 부과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으나,¹³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을 비시장경제지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요구하는 중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34) *US-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515/1 G/L/1169 G/ADP/D115/1, 15 Dec. 2016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각주 75 참조).

2. 중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역구제조치 남용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방식은 다자적 대응방식, 양자적 대응방식, 일방적 무역제재 방식으로 구분해서 검토·평가하기로 한다.

첫째, 다자적 대응방식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중국의 무역관행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상기 〈표 4-5〉에서 보듯이,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에 있어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보다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향후에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다자적 대응방식은 국제통상거래에서 예측가능한 규칙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적 대응방식은 특히 협상력이 강한 선진국의 경우 실리적 차원에서 선호되는 분쟁해결방식인데,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공정무역질서를 용이하게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적 해결방식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양자적 해결방식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주의적 공정무역을 제창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제한 철폐와 시장개방을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셋째, 일방적 무역제재 방식은 다자적 대응방식을 통한 해결이 미국에 불리하거나 양자적 대응방식을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선진국에 의해 많이 활용되는 전략인데, 특히 미국과 같은 무역강국은 통상법 제301조

와 무역확대법 제232조를 포함한 자국 국내법에 입각하여 일방적 무역제재 발동을 위협해서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방식을 활용한 선례가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제재 조치의 발동 위협 등과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3. 시사점

미중 통상분쟁의 현황에 대한 상기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17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 통상관계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기존 통상정책의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를 암시하고 있다. 즉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 발동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수단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전면적인 또는 강력한 무역제재는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부분이 한국산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제품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통상분쟁의 배경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 무역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통합과 시장진출 및 해외투자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고려해 볼 때, 미국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무역제재의 활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나,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되며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양자적 해결보다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WTO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 관련 규정에 입각한 양자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제5장 결 론

중국의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는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구제 관련 조항과 함께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시 무역구제 관련 국내법규에 대해서도 관련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체로 상기 무역구제법규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구제법규들은 관련 WTO 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명료성이 미비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를 남용하고 국제통상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시 반드시 분쟁해결기구(DSB)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차별적인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무역구제 관련 분쟁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당한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 중 최종 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모두 5건인데,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제소된 2건(중국-X-Ray 장비사건, 중국-스테인레스 철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

건(중국-전기강판 사건, 중국-닭제품 사건, 중국-자동차 사건)은 모두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제소된 것이다. 2018년 1월 현재 중국 상무부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된 사건은 없다. 중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DSB에 회부된 사건에서 패널 및/또는 상소기구는 중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고, 중국 정부는 이행수준에 있어 제소국의 이의제기로 이행패널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중국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사례(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 포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 결과와 자국의 국제법적 이익을 유지하고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방적인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최근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자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재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당국은 사드배치와 유사한 경제보복조치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고 우리의 외교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년 이후 중국과 관련된 WTO 통상분쟁 건수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반덤핑제소에 대해 중국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간의 중국의 WTO 분쟁해결 정책은 선진국(미국, EU 등)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입각한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양자간 협의 및 외교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협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통상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 정부당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는 첫째,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지침의 결여로 인한 무역구제 관련 조례 의 자의적 해석과 통상분쟁 개연성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무역구제제도의 운용시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중국 조사기관에 요청하도 록 한다. 둘째, 무역구제 관련 조례와 관련 WTO 협정에 세부지침이 결여 된 경우, ‘한-중 FTA’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원용하도록 한다. 셋째, 무역 구제 관련 조례와 관련 WTO 협정에 세부지침이 결여된 경우, 관련 판례 를 적극적으로 원용하거나 구체적인 절차규칙을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한다. 넷째,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허용하는 중국의 무역구제법규는 보복조치의 발동에 관한 절차 및 제한과 ‘상응한 보복조치’의 수준 등에 관한 기준 및 세부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DSU)에서 금하고 있는 일 방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국내법 규정이라 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한 다.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협정’과 ‘분쟁해결양해’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 규칙을 고려하면서 관련 협정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일방적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중 FTA’ 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한중 무역구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다. 여섯째, 중국의 무역구제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관련 조사과정에 한국정 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최근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포함한 일방적 경제보복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자국의 핵심이익을 유지하고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방적인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최근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자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재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당국은 사드배치와 유사한 경제보복조치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고 우리의 외교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상정책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제재의 활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나,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되며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무역규제에 대해서는 양자적 해결보다는 WTO 분쟁해결 기구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WTO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 관련 규정에 입각한 양자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효백, 『G2 시대 중국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 김은영·정혜선,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영향』, Trade Focus, 제6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2.
- 박월라 외 4인,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20, 2011. 12. 30.
- 박진달·윤미숙, 『세계무역구제조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4. 9. 10.
- 신승훈, 『중국 WTO 제소, 미중 통상전쟁 본격 접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9.
- 이춘삼, 『중국통상법』, 대왕사, 2004.
- 이효영,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7-3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10.
- 정철 외,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1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정환우,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KOTRA 사업단, 2017. 4.
- 제현정·이근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Trade Focus, 제40호, 한국무역협회, 2016. 11.
- 최낙균·김정곤·박순찬,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1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최송자, 『중국무역구제제도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 한선희 외 5인, 『주요 교역대상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무역위원회, 2011. 12.
- 한재진,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6-28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
- _____, 『사드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제17-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7. 3. 7.
- 무역투자연구원,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 2007.
- 법무부, 『WTO 농산물무역분쟁사례연구』, 2003.
- 한국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제59권, 2017년 가을호, 2017. 9.

2.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기현, “수입조건 변경, 통관지연, 바이어 연락 두절 등 대중 무역으로 신고 봇물”, 『함께하는 FTA』, 통권 제59호, 산업통상자원부, 2017. 4.
- 김희정, “중국의 한한령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2. 21.
- 노승혁,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에 관한 일고찰”, 『무역구제』, 통권 제22호, 2006.
- 박민규·왕광영, “중국 보조금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73호, 2007. 2.
- 박월라 외 4인,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1. 12. 30.
- 마광·응가로, “WTO의 원자재 보조금 규범 및 중국의 실행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 연구』, 제14권 제1호, 2016. 3.
- 서창배, “중국의 WTO 분쟁사례 연구”, 『중국법연구』, 제29집, 2017. 2.
- 신성식·최혜범,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2011. 12.
- 우신보(박은혜 역), “사드문제와 한·중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정”, 『차이나리뷰』, 제1권, 2016. 12.

- 유예리, “WTO 체제하에서 중국의 현행 농업보조금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11집, 2009. 6.
- 유지영, “국가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통권 제138호, 2017. 12.
-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집 제2호, 2017. 6.
- 이승영,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체계와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제28집, 2004. 6.
- 이임자·조용원, “한한령조치가 국내 소비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i-KIET 산업경제 이슈』, 제19호, 산업연구원, 2017. 5. 22.
- 이재민, “THAAD 배치와 중국 정부의 對韓 관광산업 제한조치: GATS 협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7. 7.
- 장승화,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국제경제법 연구』, 제15권 제3호, 2017. 11.
- 장은정, “중국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의 이해”, 『중국법연구』, 제30집, 2017. 5.
- 제현정, “미국의 보호주의 융단폭격”, 『무역구제』, 제58권, 2017년 여름호.
- 최송자,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2005. 6.
- 최승환·심어진, “한중 마늘분쟁 이후 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무역구제』, 2010. 10.
- 최승환, “경제적 강제로서의 수출규제의 합법성”,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1992. 12.
- _____, “WTO 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제1호, 1996.
- _____,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2000. 8.
- _____,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2006. 12.
- _____,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3호, 2017. 9.

- _____,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특징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과 법무』, 통권 제17호, 2017. 12.
- 최원목, “한·중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절차관련법규의 WTO협정예의 합치성”, 『무역구제』, 2005. 10.
- 산업은행, “사드배치와 한중관계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Weekly KDB Report』, 2017. 3. 20.
- KOTRA, 2016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 KOTRA,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17. 7.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늘어난다…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위클리 통상뉴스(Weekly Trade News), 2015.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Baldwin, D.A.,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Hufbauer G. and J. Schot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2. 논문 및 기타 자료

- 简基松, “关于单边经济制裁的‘司法性’与‘合法性’探讨”, 『法学』, 제1호, 2007.
- Bowett, D.W., “Economic Coercion and Reprisals by States,” 13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1972.
- _____,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 Coercion,” 16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45, 1976.
- Fuchs, A. and N. Klann,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9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64.

- Glaser, B.S., D.G. Sofio, and D.A. Parker, "The Good, the THAAD, and the Ugly: China's Campaign Against Deployment, and What to Do About It," *Foreign Affairs*, Feb. 15, 2017.
- Gong, Xiangqian, "THAAD and China's Trade Policy with South Korea," 3 *China and WTO Review* 169, Yijun Press, 2017.
- Harrison, Bruce, "China's Response over Thaad in S. Korea," 32 *Chinese American Forum* 10, June 2017.
- Lee, Brianni,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38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34, Special Issue, Winter 2017.
- Reilly, James, "China's Unilateral Sanctions," 35 *The Washington Quarterly* 21, Fall 2012.
- Seidl-Hohenveldern, I., "The United Nations and Economic Coercion," 18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9, 1984-85.
- Zhao, Tong, "Sanction Experience and Sanction Behavior: An Analysis of Chinese Perception and Behavior on Economic Sanctions," 16 *Contemporary Politics* 263, 2010.
- ICTAD Reporting, "WTO Panel Finds in US' Favour in China Automobile Duties Dispute," *Bridges Weekly*, Vol. 18, No. 19, 28 May 2014.

3. 패널 및 상소보고서

- China—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China—Broiler Products")*, WT/DS427/R, 25 Sep. 2013.
- China—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China—Automobiles")*, WT/DS440/R, 18 June 2014.
- China—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China—GOES")*, WT/DS414/R,

- WT/DS414/AB/R, 16 Nov. 2012.
- China—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X-Ray Security Inspection Equipmen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25/R, 24 April 2013.
- China—GOE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14/RW, 31 July 2015.
-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 Aug. 1990.
- China—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WT/DS/454/AB/R (Japan), WT/DS460/AB/R (EU), 14 Oct. 2015.
-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 WT/DS431, 423, 433/AB/R, 7 Aug. 2014.
-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Panel Report, WTO/DS291, 292, 293/R, 29 Sep. 2006.
-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Panel Report, WTO/DS44/R, 31 Mar. 1998.
-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73/R, 7 Mar. 2005, para. 8.2.
- US—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Germany*, AB Report, WTO/DS213/AB/R, 28 Nov. 2002, para. 81.
-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WT/DS296/AB/R, adopted 27 June 2005.
-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WT/DS248, 249, 251, 252, 253, 254, 258, 259/AB/R, 10 Nov. 2003.
- US—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515/1 G/L/1169 G/ADP/D115/1, 15

Dec. 2016.

US—Measures Relating to Zeroing and Sunset Reviews, WT/DS322/AB/R, 2007.

US—Prelimina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on Coated Free Sheet Paper from Chin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368/1, 18 Sep. 2007

US—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WT/DS177/R(New Zealand, DS178/AB/R(Australia), 16 May 2001.

U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29 Jan. 1996 and WT/DS2/AB/R, 20 Apr. 1996.

부록: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규

강문경¹³⁵⁾ 역, 최승환¹³⁶⁾ 감수

I. 무역구제 관련 법률과 조례

- 1.1 대외무역법 / 167
- 1.2. 반덤핑조례 / 184
- 1.3. 반보조금조례 / 199
- 1.4. 세이프가드 조례 / 214

II.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相关规章)

<반덤핑 관련 시행세칙(反倾销相关规章)>

- 2.1.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221
- 2.2. 반덤핑 조사입안 잠정규칙 / 226
- 2.3. 반덤핑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 236
- 2.4. 반덤핑설문조사잠정규칙 / 241
- 2.5. 반덤핑조사 표본추출 잠정규칙 / 248
- 2.6. 반덤핑 정보공개 잠정규칙 / 252
- 2.7. 반덤핑조사 공개정보열람 잠정규칙 / 255
- 2.8. 반덤핑 가격약속 잠정규칙 / 258
- 2.9.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 265

135)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13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10.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 270
- 2.11.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 274

<보조금 관련 시행세칙(反补贴相关规章)>

- 2.12.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277
- 2.13.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 282
- 2.14.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 292
- 2.15.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 299

<세이프가드 관련 시행세칙(保障措施相关规章)>

- 2.16.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 304
- 2.17.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312
- 2.18.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 316

<산업피해 관련 시행세칙(产业损害相关规章)>

- 2.19. 산업피해조사 공청규칙 / 320
- 2.20.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규정 / 325
- 2.21. 반보조금산업피해조사규정 / 335
- 2.22.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규정 / 345

I. 무역구제 관련 법률과 조례

1.1 대외무역법¹³⁷⁾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를 거쳐 제정되었음.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거쳐 개정하였음.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에 관한 제12부 법률의 결정에 관한 개정》에 의해 개정하였음)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경영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적용한다.

본 법에서 대외무역이란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의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본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대외무역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평하고 자율적인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한다.

137) 편집자 주: 대외무역법 조항 중 밑줄친 조항은 무역구제와 관련이 있는 조항임.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분야에서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타 체결국·참가국에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대등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적 금지·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해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대외무역경영자

제8조 본 법에서 대외무역 경영인이란 법에 의거하여 상공등록 또는 기타 개업 수속을 하고 본 법과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9조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인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규정하는 등록을 하고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을 하고 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규정한다. 대외무역경영인이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해주지 아니 한다.

제10조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본 법과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외공정도급과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기관은 상응하는 자질(資質)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의 수출입업무는 오직 권한을 위임받은 기업이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부 수량의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를 비수권한 기업이 경영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과 수권한 경영기업의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조정하고 공표한다.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12조 대외무역 경영인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외무역경영인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유관부서에 대외무역 사업활동과 관련된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마땅히 제공자를 위하여 상업기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14조 국가는 화물 및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행정부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 모니터링의 필요에 준하여 자유

로이 수출입하는 일부 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를 실시하고 당해 목록을 공표한다.

자동허가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에 있어 바이어·출하인이 세관의 통관수속 과정에서 사전에 자동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위탁한 기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자동허가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 한다.

수출입이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위탁한 기구에 계약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다음의 원인에 근거하여 관련 화물·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사회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 (2)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3)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4)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 가능성이 있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5)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 용량의 한계로 수출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6)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7)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 (8) 모든 형태의 농업·목축업·어업제품에 대하여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9)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10)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
- (1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는 그 밖의 경우.

제17조 국가는 핵분열·핵융합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무기·탄약 또는 기타 군용물자와 관련된 수출입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시(戰時)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화물·기술의 수출입 분야에 있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본 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기술목록을 제정·조정·공표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와 회동하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본 법 제16조와 제17조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목록 이외의 특정화물·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허가증 등

의 실시방식으로 관리한다.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쿼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수입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국가는 일부 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화물의 쿼터·관세쿼터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가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공개·공정·공평 및 효율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1조 국가는 통일적인 화물합격평가제도를 실시하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제품에 대해 인증·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22조 국가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원산지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3조 문화재와 야생동물·식물 및 그 제품 등은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서 한 약속에 근거하여 기타 체결국·참가국 시장진입을 허가하고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25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본 법과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서비스무역을 관리한다.

제26조 국가는 다음의 원인에 준하여 관련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사회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
- (2)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3)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하거나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 (4) 국가의 외환수지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 (5)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
- (6)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제27조 국가는 군사와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 및 핵분열·핵융합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시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서비스무역분야에서 있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본 법 제26조·제27조 및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서비스무역 시장진입목록을 제정·조정·공표한다.

제5장 대외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9조 국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일정 기간 동안 침권자가 생산·판매한 관련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피허가자가 허가계약서 중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강제적으로 일괄적인 허가를 진행하거나 허가계약서에 배타적인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등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어 대외무역의 공정한 경쟁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아니 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온 화물·기술 또는 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게 충분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본 법 및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당해 국가 또는 당해 지역의 무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32조 대외무역활동 중에는 반독점과 관련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독점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대외무역활동 중에서 독점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반독점과 관련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앞 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33조 대외무역활동 중에 부정당한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내통하여 입찰하거나 허위광고를 하거나 상업적인 뇌물수수를 하는 등의 부정당한 경쟁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대외무역활동 중에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반부정당경쟁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앞 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당해 경영인의 관련 화물·기술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34조 대외무역활동 중에는 다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1) 수출입 원산지표기를 위조·변조 및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수출입 허가증·수출입쿼터증명 또는 기타 수출입증명문건의 위조·변조 또는 매매
- (2) 수출환급세 편취
- (3) 밀수
- (4)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인증·검사·검역의 회피
- (5)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5조 대외무역경영인은 대외무역 사업활동 중에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37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자율적으로 또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1)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 산업 및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
-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장벽
- (3) 법에 의거하여 반덤핑·반보조 또는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 이전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
- (4) 대외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 (5) 대외무역 중의 국가안전이익과 관련된 사항
- (6) 본 법 제7조·제29조 제2항·제30조·제31조·제32조 제3항·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 (7) 기타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쳐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38조 대외무역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조사는 서면설문·청문회개최·현지조사·위탁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처리를 재정하며 아울러 이를 공고한다.

제39조 유관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대외무역조사를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 및 당해 부서의 업무인원은 대외무역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획득한 국가기밀과 상업기밀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8장 대외무역 구제

제40조 국가는 대외무역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적절한 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41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이미 육성되어 있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손해를 위협하거나 또는 이미 육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반덤핑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제3시장에 수출되어 국내에 이미 육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의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당해 제3국 정부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거나 당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수입한 제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수출국이나 지역의 전문보조를 받고 이미 육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 또는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반보조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 손해에 대한 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 수입제품수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동종의 제품 생산 또는 당해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세이프가드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함과 아울러 당해 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기타 국가나 지역의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동종 또는 당해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하여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 제3국의 수입규제로 모종의 제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유입이 대량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국내 산업에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의 산업에 장애를 주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당해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조약·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이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당해 조약·협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이익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를 보게 하거나 조약 또는 협정의 목표 실현을 저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해 국가나 또는 지역의 정부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관련 조약·협정에 의거하여 관련 의무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4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본 법 및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 회담 및 분쟁을 해결한다.

제49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화물수출

입·기술수출입·국제서비스무역의 긴급경보체제를 구축하여 대외무역 과정의 돌발 및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본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무역구제조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반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대외무역의 촉진

제51조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촉진체제를 구축·개선한다.

제52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필요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를 구축·개선하며 대외무역 발전기금 리스크기금을 설립한다.

제53조 국가는 수출입 신용대출·수출신용보험·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4조 국가는 대외무역 공공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무역경영인과 기타 사회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경영인의 국제시장의 개척을 장려하며 대외투자·대외공정도급 및 대외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6조 대외무역경영인은 법에 의거하여 유관협회·상업연합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유관협회·상업연합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역과 관련된 생산·판매·정보·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하며 자율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과 관련된 구제조치를 신청하고 회원과 업

계의 이익을 수호하며 정부의 유관부서에 대외무역과 관련된 건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촉진활동을 진행한다.

제57조 중국 국제무역 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와의 연계를 개진하며 전람회 개최하고 정보제공·자문서비스와 기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58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사업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제59조 국가는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제10장 법률책임

제60조 본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권 없이 임의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는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법행위자의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의 종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취득한 기타 국영무역관리화물 수출입종사의 수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 수출입금지화물을 수출입하였거나 수출입이 제한되는 화물을 허가 없이 임의로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이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수출입이 금지된 기술 또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기술을 허가없이 임의로 수출입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벌

한다.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이하인 경우 1만위안이상 5만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나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전(前) 두 조항이 규정하는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결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수출입쿼터 또는 허가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 하거나 불법행위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 화물 또는 기술의 수출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 금지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거나 허가없이 임의로 제한된 국제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이하인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불법행위자가 전항이 규정하는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3조 본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문는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불법행위자가 전항이 규정하는 행정 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된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4조 본 법 제61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대외무역활동의 중사가 금지된 경우 금지기한 내에 세관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내린 금지결정에 근거하여 당해 대외무역경영인의 화물수출입 관련 통관 수속을 처리하여주지 아니 하며 외환관리부서나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결재·외환매매수속을 처리하여주지 아니 한다.

제65조 본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사적부정행위 또는 직권남용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본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무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법을 위반하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뢰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66조 대외무역경영의 당사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관리사업부서가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67조 군수품 핵분열과 핵융합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 및 문화제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거한다.

제68조 국가는 변경지역과 국가의 변경지역과 인접한 지역 간의 무역 및 국경지역주민간의 무역에 대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단독관세지역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0조 본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반덤핑조례

국무원령 제401호

현재 공포하는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4년 3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의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을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시키며 아울러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실질적 피해위험을 발생 또는 국내산업의 건립에 실질적인 저해를 야기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한다.

제2장 덤핑과 피해

제3조 덤핑(倾销)이라 함은 정상적인 무역과정 중에서 수입제품이 그 정상 가격의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함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4조 수입제품의 정상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 중, 비교가능 가격이 있는 경우 그 비교가능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2)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 중, 판매되지 않았거나 또는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동종제품이 적당한 제3국(지역)에 수출된 불변가격 또는 동종제품의 원산국(지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이윤을 가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수입제품이 원산국(지역)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은 경우 전관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확정한다. 그러나 제품이 수출국(지역)을 통과할 뿐, 수출국(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출국(지역)에 불변가격이 없는 경우 원산국(지역)에서의 동종제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제5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수입제품이 실제 지불된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 (2) 수입제품이 수출가격이 없거나 또는 가격이 확실치 않을 경우 그 수입제품이 독립적인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그 수입제품이 독립적인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입시의 상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상무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제6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그 정상가격보다 낮은 부분을 덤핑정도라고 한다.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불변요인을 고려하여 공평,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덤핑 정도의 확정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전부의 불변 수출교역의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며 또는 매 교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

수출가격이 구매자, 지역, 시기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여 전관규정에 의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경우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단일 수출교역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제7조 피해라 함은 덤핑이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내산업 건립에 실질적인 저해를 야기함을 말한다.

피해의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그중 농산물의 반덤핑 국내산업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8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야기한 피해 확정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한다.

- (1) 덤핑수입제품의 양, 여기에는 수입제품의 절대수량 또는 국내동종제품과 비교할 때 생산 또는 소비된 양의 대량 증가여부, 또는 덤핑수입제품의 대량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 (2) 덤핑수입제품의 가격, 여기에는 덤핑수입제품의 가격 삭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의 억제, 압박 등의 영향 발생을 포함한다.

- (3)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주는 영향
- (4)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에서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 재고상황
- (5)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기타의 요인

실질적 피해위험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고발, 추측 또는 지극히 낮은 가능성에 근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덤핑이 국내산업에 야기한 피해 확정 시,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비덤핑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덤핑 때문인 것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덤핑수입제품이 두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고 아울러 동시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덤핑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영향은 누계 평가할 수 있다.

- (1) 매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덤핑수입제품의 덤핑 정도가 2%보다 작지 않고 아울러 수입량이 결코 무시할 수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 (2) 덤핑수입제품간 및 덤핑수입제품과 국내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 실시가 적절한 경우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한개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 총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3% 미만인 몇 개 국가(지역)의 총 수입량이 동종 제품 총 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제10조 덤핑수입제품의 영향 평가는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확정하여야 한다.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군 또는 범위의 생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내 동종제품의 전부의 생산자를 말한다.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부의 총생산량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내생산자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내생산자자체가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인 경우 국내산업외로 배제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국내의 한 지역시장 생산자가 당 시장에서 그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제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당 시장 동종제품의 수요가 주요하게 국내 기타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동종제품이라 함은 덤핑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간주한다.

제3장 반덤핑 조사

제13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무부에 반덤핑조사의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 (2)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제품이 수출국(지역)또는 원산국(지역) 국내시장 소비자의 가격정보, 수출가격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3) 국내동종제품의 생산수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 (4)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내용

제15조 신청서는 다음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덤핑이 존재
- (2)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 (3) 덤핑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의 존재

제16조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내 당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 신청서내용 및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입안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안조사결정 전 관련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 중에서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본 신청은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지를 표시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25%미만인 경우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18조 특수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반덤핑조사의 서면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덤핑과 피해 및 양자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안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아울러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수출국(지역)정부 및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통칭 함)에게 통지한다.

입안조사의 결정을 일단 공고하고 나면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출국(지역)정부에 제공하여야한다.

제20조 상무부는 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측으로부터 상황을 요해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측에 의견과 논거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작요원을 관련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련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조사에 이해관계측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이해관계측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하게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파악한 사실과 장악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제22조 이해관계측은 제공한 자료의 누설이 엄중하게 불리한 영향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무부에 당 자료의 비밀유지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유지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땅히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자료를 비밀유지자료로 처리하여야하며 동시에 이해관계 측에 공개할 수 있는 당 자료의 개요의 제공을 요구한다.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측의 동의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제23조 상무부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측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 피해와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초심결정을 하고 아울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초심결정에 의하여 덤핑,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상무부는 마땅히 덤핑 및 덤핑정도,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판결을 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최종 판결 결정 전 상무부는 마땅히 최종 판결결정이 근거한 기본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반덤핑조사는 입안조사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다음 상황이 있는 경우 반덤핑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무부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 (2) 덤핑, 피해 또는 양자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3) 덤핑 정도가 2% 미만인 경우
- (4) 덤핑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피해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5) 상무부가 반덤핑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 또는 부분 국가(지역)로부터 수입된 피조사제품에 전관 (2), (3), (4)호에 열거한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덤핑조사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장 반덤핑 조치

제1절 임시 반덤핑 조치

제28조 초기 결정에 의하여 덤핑이 성립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의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임시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
- (2)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형식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임시 반덤핑관세액 또는 제공한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형식의 담보금은 초심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덤핑 정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임시 반덤핑관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형식의 담보제공은 상무부가 결정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해관은 공고결정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0조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기한은 임시 반덤핑조치 결정 공고 규정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 입안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는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절 가격 약속

제31조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경영자는 반덤핑조사기간 상무부에 가격변경 또는 덤핑가격의 수출을 정지한다는 가격 약속을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약속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강압적인 가격약속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 수출경영자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격약속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안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경영자가 수입제품을 계속하여 덤핑할 경우 상무부는 피해위협의 출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확정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수출경영자가 제출한 가격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아울러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고 임시 반덤핑조치 또는 반덤핑관세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반덤핑조사 결정을 중지 또는 종료할 경우 상무부가 공고한다.

상무부가 가격약속을 접수하는 않는 경우 마땅히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 초심결정 결정을 하기 전에 가격약속을 제안하거나 또는 가격약속을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 본 조례 제33조 제1관의 규정에 의하여 반덤핑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경영자의 요청에 응해 상무부는 마땅히 덤핑과 피해에 대

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여야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 또는 피해의 부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가격약속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덤핑과 피해의 긍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가격약속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35조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약속 이행 관련 상황과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

제36조 수출경영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반덤핑조사의 회복을 즉각 결정할 수 있다. 이미 장악한 가장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임시 반덤핑조치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약속 위반 전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절 반덤핑관세

제37조 최종결정에 의하여 덤핑이 성립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공공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8조 반덤핑 세는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 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해관은 공고 규정의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9조 반덤핑관세는 최종결정 공고일 이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한다. 그러나 본 조례 제36조, 제43조, 제44조 규정의 상황은 제외한다.

제40조 반덤핑관세의 납세인은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이다.

제41조 반덤핑 세는 수출경영자의 덤핑 정도에 근거하여 각각 확정한다. 심사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경영자의 덤핑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여야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에 적용하는 반덤핑 세를 확정하여야한다.

제42조 반덤핑관세액은 최종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덤핑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최종결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관세는 이미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한 기간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위험이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차 실질적 피해판정을 초래하게 될 상황 하에서 이미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관세는 임시 반덤핑조치 기간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반덤핑관세를 이미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임시 반덤핑관세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않는다.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임시 반덤핑관세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환하거나 또는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하는 경우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단, 입안조사 전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1) 덤핑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덤핑 이력이 있거나, 당

제품의 수입경영자가 수출경영자의 덤핑실시를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를 리가 없고 아울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덤핑수입제품이 단기간 내 대량 수입되고 아울러 곧 실시될 반덤핑 관세의 보완효과를 엄중하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후 전항 나열의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등기 등의 반덤핑관세 추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 최종 결정에 의하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또는 최종결정에 반덤핑관세 추징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징수한 임시 반덤핑관세, 이미 수취한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는 해제하여야한다.

제46조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는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액이 덤핑 정도를 초과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무부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심사, 확인 후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반환결정을 하며 해관이 집행한다.

제47조 수입제품이 반덤핑 세를 징수당한 후, 조사 기간내 중화인민공화국에 당 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신 수출경영자는 반덤핑 세를 징수당한 수출경영자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에 덤핑 정도의 단독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마땅히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기간 중 본 조례 제28조 제1관 제(2)호 규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

제48조 반덤핑관세의 징수기한과 가격약속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반덤핑관세의 징수종료가 덤핑 과피해의 계속발생 또는 재차의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확정된 경우 반덤핑관세의 징수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반덤핑관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응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응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반덤핑관세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한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격약속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결정을 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제51조 재심절차는 본 조례의 반덤핑조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재심기한은 재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2조 재심기간 중,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53조 본 조례 제25조에 의한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례 제4장에 의한 반덤핑관세 징수여부의 결정 및 추징, 세액 반환, 새로운 수출경영자에 대한 징세결정에 불복한 경우, 또는 본 조례 제5장에 의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본 조례에 의한 공고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근거, 결과와 결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한다.

제55조 상무부는 적당한 조치를 통하여 반덤핑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56조 어떠한 국가(지역)를 막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 국가(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상무부는 반덤핑관련의 대외협상, 통지와 분쟁해결을 책임진다.

제58조 상무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공고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중의 반덤핑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1.3. 반보조금조례

국무원령 제 402호

현재 공포하는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4년 3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질서와 공평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에 보조사실이 존재하고 아울러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피해를 야기하거나 실질피해위험을 발생, 또는 이미 수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방해를 야기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반보조금조치(상계조치)를 취한다.

제2장 보조와 피해

제3조 보조금이란 수출국(지역)정부 또는 기타 모든 공공기관이 제공한, 접수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정원조 및 모든 형식의 수입, 또는 가격 지원을 말한다.

수출국(지역)정부 또는 모든 공공기관을 이하 수출국(지역)정부라 통칭한다.

본조 제1관에서 말하는 재정 원조라 함은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 (1) 수출국(지역)정부가 지출금, 대출금, 자본주입 등의 형식으로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출금 담보 등의 형식으로 잠재적으로 자금 또는 채무를 직접 양도하는 경우
- (2) 수출국(지역)정부가 받아 들여야 하는 수입을 포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3) 수출국(지역)정부가 일반 사회간접시설이외의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국(지역)정부가 화물을 구매한 경우
- (4) 수출국(지역)정부가 자금조달기구에 대한 자금 지급을 통하여 또는 사영기구에 대한 위탁, 명령을 통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한 경우

제4조 본 조례에 의한 조사 실시와 반보조 조치의 보조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보조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1) 수출국(지역)정부가 명확하게 확정된 일부 기업, 산업이 취득한 보조
- (2) 수출국(지역)법률,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한 일부 기업, 산업이 취득한 보조
- (3) 특정 구역 내의 기업, 산업을 지정하여 취득한 보조
- (4)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취득한 보조, 여기에는 본 조례 첨부 1의 수출보조 목록에 열거된 각종 보조가 포함된다.
- (5) 본국(지역)제품 사용으로 수입제품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보조
보조 전문성 확정시, 보조접수기업의 수와 기업의 보조 접수 액수, 비율, 시간 및 보조지급 방식 등의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6조 수입제품의 보조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1) 무상지급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기업이 실제 접수한 금액을 계산한다.
- (2) 대출금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본 기업이 정상적인 상업대출조건하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와 당 대출금의 이자차액을 계산한다.
- (3) 대출담보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와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실제 지불한 이자 차액을 계산한다.
- (4) 자본투입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기업이 실제 접수한 자본액수를 계산한다.
- (5) 화물 또는 서비스제공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당 화물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시장가격과 기업이 실제 지불한 가격 차이를 계산한다.
- (6) 화물구매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정부의 실제지불 가격과 당 화물의 정상적인 시장가격 차이를 계산한다.
- (7) 수취하여야 하는 수입을 포기 또는 수취하지 않는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기업이 실제 납부한 금액차이를 계산한다.

전관에 나열한 형식 이외의 기타의 보조는 공평, 합리의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제7조 피해라 함은 보조가 이미 수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거나 실질적 피해위험 발생 또는 국내산업수립에 실질적 방해를 야기함을 말한다.

피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그 중, 농산품의 반보조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8조 보조가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 확정 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보조가 무역에 야기하게 될 영향
- (2) 보조수입제품의 수량, 여기에는 보조수입제품의 절대적인 수량, 또는 국내 동종제품과 비교할 때 생산 또는 소비된 수량의 대량 증가 여부, 또는 보조 수입제품의 대량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 (3) 보조수입제품의 가격, 여기에는 보조수입제품의 가격 삭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의 억제, 인하 등의 영향 발생을 포함한다.
- (4) 보조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인과 지표에 미치는 영향
- (5) 보조수입제품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능력과 수출능력, 조사대상제품의 재고 상황
- (6) 국내산업피해를 야기하는 기타의 요인

실질피해위험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고발, 추측이나 지극히 낮은 가능성에 근거하여서는 안 된다.

보조가 국내산업에 야기한 피해 확정 시,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피해 야기의 비보조성 요인을 보조에 귀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조수입제품이 두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었고 아울러 동시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보조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야기한 영향을 누적 평가할 수 있다.

- (1) 매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미량 보조에 속하지 않고 아울러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양이 아닌 경우
- (2) 보조 수입제품간의 경쟁조건 및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계 평가 실시가 적당한 경우

미량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에 미달인 보조를 말한다. 단, 발전도상국(지역)에서 수입된 보조수입제품의 경우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에 미달인 보조를 말한다.

제10조 보조수입제품의 영향 평가는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확정되어야 한다.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군 또는 범위의 생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 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부의 생산자,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부총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단, 국내생산자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 사이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스스로 보조제품 또는 동종제품의 수입경영자인 경우 예외로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 일개 지역시장의 생산자가 당 시장에서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제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당 시장 동종제품의 수요가 주요하게 국내 기타 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동종제품이라 함은 보조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 보조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근사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한다.

제3장 반보조 조사

제13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은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무부에 반보조 조사의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 (2)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 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 수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 (4)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내용

제15조 신청서는 다음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보조가 존재한다.
- (2)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 (3) 보조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제16조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

일내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했는지 여부, 신청서내용 및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입안조사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심사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입안조사 결정 전 보조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국가(지역)정부에 협상의 요청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중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당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반보조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생산량의 25%에 미달인 경우, 반 보조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18조 특수한 상황하에서 상무부는 반보조조사 서면신청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조와 피해 및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안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아울러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수입경영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이해관계자이라 통칭함)과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한다.

입안조사결정을 공고한 후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출국(지역)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상무부는 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확인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황을 요해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의견과 논거제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작요원을 관련 국가(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단, 관련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 상무부가 조사 실시 시 관련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장악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22조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는 제공한 자료의 누설이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무부에 당 자료의 비밀유지처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유지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제공의 자료를 비밀유지자료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공개가능한 당자료 개요의 제공을 요구한다.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상무부는 신청인,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당 안전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여야한다. 단,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반보조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제품 국가(지역)정부에 계속적인 협상 추진의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상은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한 조사실시와 반보조조치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25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피해와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초심결정을 하며 아울러 공고한다.

제26조 초심결정에서 보조, 피해 및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확정된 경우, 상무부는 보조 및 보조금액,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결정을 하고 대외 공고하여야 한다.

최종결정전 상무부는 최종결정이 근거한 기본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반보조 조사는 입안조사 결정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다음 상황이 존재할 경우, 반보조조사는 종료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무부가 대외공고한다.

-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 (2) 보조, 피해와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3) 보조금액이 미량보조인 경우
- (4) 보조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피해가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미소한 경우
- (5) 관련 국가(지역)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협의를 달성하여 계속적인 반보조조사의 실시가 필요해진 경우
- (6) 상무부가 계속적인 반보조조사의 실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 또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조사대상제품에 전관 제(2),

(3), (4), (5)호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보조조사는 종료하여야 한다.

제4장 반보조조치

제1절 임시조치

제29조 초심결정에서 보조가 성립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반보조 조치는 담보로서 보증금 또는 담보서의 징수를 임시 반보조 세 형식으로 채택한다.

제30조 임시 반보조조치는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대외 공고한다. 해관은 공고규정의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1조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기한은 임시 반보조조치 결정공고 규정의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반보조 입안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내 임시 반보조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안 된다.

제2절 승 낙

제32조 반보조 조사기간 수출국(지역)정부가 보조의 취소, 제한 또는 기타의 관련 조치를 약속, 또는 수출경영자가 가격수정에 관련 약속을 할 경우, 상무부는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정부에 관련 가격약속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강압적으로 약속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 수출경영자, 수출국(지역)정부가 약속을 하지 않거나 관련 가격약속 건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보조안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경영자가 수입제품을 계속하여 보조할 경우, 상무부는 피해 위협의 보다 큰 발생가능성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상무부는 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또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보조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고 임시 반보조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상무부가 약속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상무부는 보조 및 보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긍정적인 초심결정을 하기 전, 약속을 추진하거나 또는 약속을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수출경영자가 약속을 한 상황에서 해당국(지역)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무부는 약속을 추진하거나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제35조 본 조례 제34조 제1관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후 수출국(지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상무부는 보조와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야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와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또는 피해에 부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약속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보조와 피해의 긍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약속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36조 상무부는 약속이 이미 접수된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정부에 약속이행의 관련 상황,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아울러 확인 심사한다.

제37조 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반보조 조사 의 즉각적인 회복을 결정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임시 반보조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단, 약속위반전 수입된 제품은 예외로 한다.

제3절 반보조세

제38조 협상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하에서 최종 결정에서 보조가 성립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반보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보조세의 징수는 공공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9조 반보조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대외 공고한다. 해관은 공고규정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40조 반보조세는 최종결정 공고일 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한다. 단, 본 조례 제37조, 제44조, 제45조 규정의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제41조 반보조세의 납세인은 보조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이다.

제42조 반보조세는 수출경영자의 보조금액에 따라 각각 확정하여야 한다. 실제 조사를 받지 않은 수출경영자의 보조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에 적용할 반보조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3조 반보조세액은 최종 결정에서 확정된 보조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최종결정에서 실질피해가 존재하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임시 반보조조치를 취한 경우, 이미 실시된 반보조 조치 기간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서 실질피해위험이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실질피해판정을 하게 될 상황 하에서 이미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한 경우, 이미 실시된 임시 반보조 조치기간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서 확정된 반보조세가 보증금 또는 담보서 담보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않는다. 보증금 또는 보증서 담보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 다음 3가지 상황이 병존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반보조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 (1) 보조수입제품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대량 증가
- (2) 이러한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봉할 수 없는 피해 야기
- (3) 이러한 제품이 보조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제46조 최종결정에서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확정했거나, 또는 최종결정에서 반보조세추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 반보조조치 실시 기간에 수취한 보증금은 반환하고 담보서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5장 반보조세와 약속의 기한 및 재심

제47조 반보조세의 징수기한과 약속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재심에 의하여 반보조세의 징수를 종료하면 보조와 피해의 계속적인 또는 재차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확정된 경우, 반보조세의 징수 기한은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반보조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반보조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한동안의 합리적인 시간 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자의 요청과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반보조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계속적인 약속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한동안의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자의 요청과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계속적인 약속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반보조세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대외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약속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하고 아울러 대외 공고한다.

제50조 재심절차는 본 조례의 반보조조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재심기한은 재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1조 재심 기간 중, 재심절차는 반보조조치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52조 본 조례 제26조에 의한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례 제4장에 의한 반보조세의 징수여부 결정 및 추징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본 조례 제5장에 의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 본 조례에 의한 공고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근거, 결과와 결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한다.

제54조 상무부는 적당한 조치를 통하여 반보조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55조 어떠한 국가(지역)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하여 기시적인 반보조 조치를 취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 국가(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상무부는 반보조 관련 대외 협상, 통지와 분쟁해결을 책임진다.

제57조 상무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8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중 반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1.4. 세이프가드 조례

국무원령 제403호

현재 공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세이프가드조례》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4년 3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로 동류제품 생산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국내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이하 특별히 지명한 것 이외에는 “피해”라 통칭함)을 야기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세이프가드를 취한다.

제2장 조 사

제3조 국내산업과 관련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세이프가드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즉시 심사하고 입안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서면신청이 없으나 국내 산업이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로 피해를 받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안조사 결정은 상무부에서 공고한다.

상무부는 입안조사 결정을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위원회(이하 세이프가드 위원회라 칭함)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그 중,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및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회동하여 진행한다.

제7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라 함은 수입제품 물량의 절대적 증가 또는 국내 생산에 대비한 상대적 증가를 말한다.

제8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로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확정함에 있어서 경우 다음 관련 요소를 심사하여야 한다.

- (1) 수입제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비율과 증가물량
- (2) 증가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
- (3)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 수준, 시장 점유비중, 생산율, 설비 이용률, 이윤과 결손, 취업 등 면에 끼친 영향을 포함한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제품의 영향
- (4)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기타 요소

중대한 피해 위협 확정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발,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증가 외의 요소로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상무부는 조사기간 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심사한 관련 요소 등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 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류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전부 생산자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 일류 제품 혹은 직접 경쟁제품 총 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제11조 상무부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사이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무부는 수입경영자, 수출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 의견과 근거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는 설문조사 형식이나 청문회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는 자료제공자가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 상무부는 비밀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비밀유지 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공자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자료로 처리하는 동시에 자료제공자에게 비밀이 아닌 당해 자료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로 처리하는 자료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14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와 피해조사 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상무부에서 공표한다.

상무부는 조사결과 및 관련 상황을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초보적 재결결정 또는 최종 재결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수입제품의 수량 증가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초기 결정에서 확정된 경우 외경무부, 국가경제위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는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3장 세이프가드 조치

제17조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수입제품 수량증가에 대한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산업에 보완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인정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초보적 재결 결정을 내리고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임시 세이프가드는 관세 인상 형식을 취한다.

제18조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함에 있어서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 일부터 집행한다.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시 세이프가드 실시기간은 임시 세이프가드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최종 결정에서 수입제품 수량이 증가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확정하였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의 실시는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쿼터를 제한하는 등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21조 관세인상 형식의 세이프가드를 취할 경우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물량제한 형식을 취할 경우 상무부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결정 및 관련 상황을 즉시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쿼터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한 후의 수입물량이 최근 대표적 3개 연도의 평균 수입물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단 중대한 피해를 방지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동한 수준의 쿼터제한 조치를 취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쿼터제한 조치로 관련 수출국(지) 또는 원산국(지)들 간의 쿼터 할당이 필요할 경우 상무부는 관련 수출국(지) 또는 원산국(지)들과 쿼터 할당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다.

제23조 세이프가드조치는 제품의 원산국(지)을 불문하고 수입중의 제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4조 세이프가드는 국내산업의 중대한 피해 방지와 보완 및 국내산업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제25조 세이프가드 실시 전 상무부는 관련 제품 수출경영자와 실질적 이익이 있는 관련 국가(지역)정부에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최종 결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아니 할 경우 이미 징수한 임시관세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세이프가드 기간과 재심

제27조 세이프가드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세이프가드 실시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피해 방지, 보완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국내 관련 산업이 조정 중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 (3) 대외 통지, 협상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
- (4) 연장 후의 조치가 연장 전의 조치에 비해 엄하지 아니할 경우.

1개 세이프가드의 실시기간과 연장기간은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세이프가드 실시 기한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실시 기간 내에 고정된 시간간격을 두고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제29조 세이프가드 실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상무부는 실시기간 내에 당해 조치에 대한 중간 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복심 내용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정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30조 관세인상 세이프가드를 취한 경우 상무부는 재심 결과에 근거하고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 조치의 보류, 취소 또는 가속완화 등 건

의를 제출하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쿼터제한 또는 기타 형식의 세이프가드를 취할 경우 상무부는 재심결과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쿼터제한조치 보류, 취소, 또는 가속완화 등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제31조 동일 수입제품에 대하여 재차 세이프가드를 취할 경우 그 전회에 실시한 세이프가드와의 시간적 간격은 그 전회 세이프가드 실시기간보다 짧지 않고 최소로 2년이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며 동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실시기간이 180일 또는 180일 미만일 경우 전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당해 수입제품 세이프가드 실시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고
- (2) 당해 세이프가드 실시일로부터 5년 내에 동일 제품에 대해 2차 이상의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장 부 칙

제32조 어떠한 국가(지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차별적 세이프가드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당해 국가(지구)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관련 대외 협상, 통지 및 분쟁 해결을 책임진다.

제34조 상무부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Ⅱ. 무역구제 관련 시행세칙(相关规章)

〈반덤핑 관련 시행세칙(反倾销相关规章)〉

2.1.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3호

제1조 반덤핑조사의 공평, 공정,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주관하는 반덤핑 조사과정중 시행되는 덤핑재정공청회에 적용한다.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수출입공정무역국(이하 “수출입공정무역국”)은 본 규칙에 의거하여 덤핑재정공청회를 시행한다.

제4조 덤핑재정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비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프라이버시에 관련된다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수출입공정무역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공청회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출입공정무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본 규칙상 이해관계자라 함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수출국(지역)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과 개인을 말한다.

제8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에 공청회개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 (1) 공청회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기타 상황
- (2) 신청사항
- (3) 신청이유

제9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자의 공청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청회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인을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공청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청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 (2) 공청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
- (3) 각 이해관계자들이 공청회 시작 전 등록 시간, 장소 및 관련 요구사항
- (4) 기타 사항

제11조 각 이해관계자는 공청회 시행 통지를 받은 후 통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출입공정무역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공청회 통지 때 확정된 등록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시간, 장소, 공청회 사회자, 공청회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하며 등록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공청회의 진행에 대한 사회를 본다.
- (2) 공청회 참가인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 (3) 공청회 질서를 유지한다.
- (4) 각 이해관계자 측에 질문을 한다.
- (5) 각 이해관계자 측이 보충증거 제출을 약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6) 공청회 중단 혹은 종결 결정
- (7) 공청회중 결정해야 할 기타사항

제14조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는 법정 대표자나 주요책임자가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고 1명 혹은 2명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와서 공청회에 출석한다;
- (2) 공청회 규율을 준수하고 공청회 사회자의 안내에 따른다;

제16조 공청회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1)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시작을 선포하고 청문회 규율을 낭독한다;
- (2) 공청회 참가자를 확인한다;

- (3) 이해관계자가 진술한다;
- (4) 공청회사회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질문한다;
- (5) 이해관계자 최종 진술을 한다;
- (6) 사회자가 공청회 종결을 선포한다.

제17조 공청회는 조사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며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제18조 공청회는 기록을 해야 하고 공청회사회자, 기록인, 공청회에 참가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사인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사인이나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 청문회사회자는 이 사항을 기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19조 다음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의 결정을 거쳐 청문회진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공청회 신청인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행위로 인해 청문회 연기 혹은 취소신청을 서면으로 하였을 때;
- (2) 반덤핑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 (3) 기타 부득이한 지연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20조 공청회 개최를 연기해야 할 이유가 해제되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공청회과정을 즉각 회복해야 하며 등록 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칙이 정한 통지방식은 대외경제협력부 공고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2조 공청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이다

제2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본 규칙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24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2. 반덤핑 조사입안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8호

제1장 총칙

제1조 반덤핑 조사 신청 및 입건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본 법규를 제정하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이하 “외경무부”) 수출입공정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시행한다.

제3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입건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입건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2장 신청인자격

제4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 (이하 “신청인”) 은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국내 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나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가리킨다.

제6조 신청인의 생산량이 국내동종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50%미만이긴 하지만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와 신청을 반대하는 국내생산자 가운데 신청지지자의 생산량이 신청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의 총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또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동

종제품 총 생산량의 2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 신청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조항 제1항에 신청 지지자의 생산량을 확정할 때 신청인의 생산량을 당연히 계산해야 한다.

제7조 국내 산업이 매우 분산되어 생산자의 수량이 거대한 경우, 외경무부는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식을 채용하여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생산자가 수출상이나 수입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자체가 수입 제품을 조사신청한 수입상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국내 같은 지역 시장의 생산자가 그 시장에서 자신의 전부 또는 전부에 가까운 동종제품을 판매하며, 그 시장의 동종제품의 수요가 대부분 국내 기타지역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신청

제10조 반덤핑조사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외경무부에 정식으로 입안 신청하여 반덤핑조사를 진행할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합법적 수권인이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제11조 반덤핑조사신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 관련정보

- (2) 조사 신청하는 수입제품의 이미 알고 있는 생산자, 수출상, 수입상
- (3)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적인 설명 및 양자 비교
- (4) 덤핑 및 덤핑 마진
- (5) 국내 산업의 피해 현황
- (6)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
- (7) 신청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12조 신청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연락담당자 등 관련사항
- (2)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 대리인의 명칭과 신분 등 사항을 설명하고 수권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신청을 제기한 직전 3년 간 신청인이 생산한 동종제품의 생산량 및 국내 동종제품 총 생산량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 (4)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리스트, 만약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들이 어떤 협회나 상회를 구성한 경우, 그 협회나 상회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 우편 번호, 연락 담당자 등 관련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조사 신청한 수입제품의 이미 알고 있는 생산자, 수출상, 수입상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기초 설명
- (2)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이미 알고 있는 생산자, 수출상, 수입상의

명칭, 법정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우편번호 연락 담당자 등의 관련 사항

제14조 수입제품 조사신청,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서술 및 양자 비교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상세설명은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제품 용도, 시장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세칙 일련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2)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원산국(지역) 혹은 수출국(지역)
- (3) 국내 동종제품의 상세설명은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제품용도, 시장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4)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는 제품의 물리적 특징, 화학적 성능, 생산기술, 대체성, 가격과 용도 등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 수출가격에 대해서 신청인은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신청직전 12개월 사이에 실제 지불한 혹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증거자료는 실제거래가격, 견적서, 가격표, 세관통계 데이터, 대표성이 있는 기관 또는 간행물의 통계데이터 등 방식으로 제공한다.

제16조 정상 가치에 대해서 신청인은 외국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소비에 적용되는 가비교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가비교가격이 없거나 가비교가격을 얻지 못하면 신청인은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구성가격 혹은 제3국에 수출하는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구성가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때 그 제품의 생산원가와 합리적비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포함해야 하고, 실제 구성가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생산요소와 그 요소가 수출국(지역)에서의 가격 또는 국제시장의 통행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상술한 증거자료는 실제거래가격, 가격표, 혹은 대표성이 있는 기관 또는 간행물의 통계 데이터 등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가격조정과 가격비교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상가격, 수출가격의 판매조건, 법규, 세금징수, 무역단계, 수량, 물리적 특징 등의 측면에서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되도록 이면 같은 무역단계, 동시간의 매출, 출고전의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은 덤핑마진에 대하여 초보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추정은 조정 후 정상가격의 가중평균치에서 조정 후 수출가중평균치를 뺀 후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타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국내 산업 피해 상황은 국내 산업 피해의 유형(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 위협 혹은 국내산업 건립의 실질적 방해),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량변화 및 가격변화,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가격 영향, 국내 산업에 연관된 경제적 요소와 지표에 대한 영향 등의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이유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절대적 수량 혹은 상대적 수량,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증가 상황, 신청을 제기한 직전 3년간의 수입 수량과 변동폭, 상승한 수량변동폭의 곡선도표 등
- (2)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신청 직전 3년간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 평균가격, 평균가격변동도표 등
- (3)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 가격의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 대한 영향은 국내 동종제품가격의 감소,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 감소 및 이를 억제할 상황, 국내 제품 가격의 변동치에 주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 (4)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관련된 경제지표나 요소에 대한 영향은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 설비이용률의 실제 하락과 잠재적 하락, 국내가격의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현금유동, 취업, 임금, 자금조달 혹은 투자능력 및 재고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어떤 개별적인 지표, 요소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제21조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위험을 이유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 신청인은 아래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대폭 성장할 가능성, 수출국(지역) 현재 가지고 있는 수출능력이나 잠재수출능력, 수출국(지역)의 재고 등 상황
- (2) 본 법규 제20조제4호에서 열거한 요소나 지표의 명확한 예견 및 압박한 추세

제22조 국내산업의 건립에 실질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제기한

경우 신청인은 본 법규 제20조, 제21조에서 열거한 증거 외에 국내산업 발전가능성의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산업건립계획 및 관련 실제실행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23조 신청인은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끼침을 주장한 후, 증거자료 제출 시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개별적으로 확정을 못할 경우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최소범위의 제품그룹 혹은 범위에 생산 확정을 해야 한다.

제24조 덤핑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과 국내산업의 피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논증
- (2) 덤핑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방식의 변화, 국외, 국내생산자의 무역을 제한한 행위와 그들 사이의 경쟁, 기술발전 및 국내산업의 수출실적과 생산성 등 국내산업 피해 영향에 대한 설명.

신청인이 상술한 어떤 요소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설명이 필요하다.

제25조 신청인은 본 장에서 규정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증거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26조 반덤핑조사신청과정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비밀유지 신청을 해야 하며, 비밀자료에 대해서 신청인은 안전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기밀개요를 제출하여

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비기밀개요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반덤핑조사 신청서와 증거자료는 중국어 인쇄체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국가에 통일된 규정용어가 있을 경우 규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자료의 외국어원본 전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관련된 부분의 중국어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반덤핑조사신청서는 비밀문건(만약 신청인이 비밀유지신청을 한 경우)과 공개문건으로 나뉜다. 비밀문건과 공개문건은 모두 원본 1부, 부분 6부이며, 공개문건은 원본 1부, 부분 6부를 제출한 외에 이미 알고 있는 조사신청한 수입제품의 수출국정부의 수량에 따라 부분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 조사신청한 수입제품의 수출국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적당히 감소시킬 수 있지만 5부 이상은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자에게 신청서와 증거자료가 포함된 전자 데이터 저장매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청인은 우편 혹은 직접송달 등 방식으로 서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수출입공정무역국에 교부해야 한다.

제31조 신청인이 정식으로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교부하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서명하고 수령해야 한다. 서명수령일은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받은 날이다.

제4장 입 안

제3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설문지 혹은 현장실사 등 방식으로 신청서와 증거자료 중 신청인의 자격,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 등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3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서와 증거자료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반덤핑조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무역 위원회의 입건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제34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서와 증거자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거자료 부분 1부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전달 교부하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적어도 20일안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연구하고 반덤핑조사입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본 법규 제 3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제기한 반덤핑조사신청에 조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조정 혹은 보완을 하지 않거나 요구한 내용과 시간에 조정 혹은 보충을 하지 않을 경우 외경무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6조 외경무부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조사신청을 공개할 수 없다.

제37조 외경무부가 입건을 결정하고 반덤핑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고를 내야 한다.

제38조 외경무부가 입건공고를 내기 전에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39조 입건공고는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1) 신청서 개요와 외경무부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 (2) 조사시작일
- (3) 조사제품과 수출국(지역)명칭
- (4) 조사기간
- (5) 조사기관이 현장실사를 진행한 의도
- (6) 이해관계자의 결과에 대해 불응소
- (7) 이해관계자에게 허락된 의견제출시한
- (8) 조사기관의 연락처

제40조 일단 입안결정이 발표되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서 공개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수출상과 수출국(지역)정부에 제공한다. 만약 조사가 많은 수출상에 연관될 경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수출국(지역)정부에만 신청서공개부분을 제공한다.

제41조 반덤핑조사 입안결정 발표일은 입안날짜이다.

제5장 부칙

제42조 외경무부는 덤핑과 피해 그리고 양자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경제위원회 동의를 거친 다음 자체적으로 입건하고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본 법규는 외경무부에서 해명을 담당한다.

제44조 본 법규는 2002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2.3. 반덤핑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3호

제1조 반덤핑조사 현장실사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지정한다.

제3조 본 규칙이 말하는 현장실사는 외경무부가 반덤핑조사과정중 공작인원을 파견하여 관련 수출국(지역)에 가서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 및 완전성을 검증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반덤핑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제4조 외경무부는 반덤핑조사 중 충분히 협조한 관련수출국(지역)의 수출업체, 생산업체에만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제5조 현장실사는 주요하게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검증한다.

- (1)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제출한 답안지에 언급한 모든 정보와 자료
- (2)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외경무부 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보충답안지에 언급한 정보와 자료
- (3)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외경무부에 제출한 관련정보와 자료
- (4) 외경무부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보와 자료

제6조 외경무부는 사건의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현장실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외경무부는 일반적으로 예비 재정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지만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예비 재정 전에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8조 외경무부는 현장실사하기로 결정하한 후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그 소재국(지역)정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외경무부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동의를 얻은 현장실사는 외경무부에서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협상된 검증일 등 정보를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그 소재국(지역)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그 소재국(지역)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외경무부는 현장실사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현장실사 전 외경무부는 구체적인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실사 팀은 외경무부 책임 하에 조직되며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사를 담당하는 정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특수한 경우에 외경무부는 비정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지만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그 소재국(지역)정부에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비정부전문가는 비밀보장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실사 팀은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전에 검증이 필요한 일반적 정보와 진일보하여 수집해야 할 정보를 피감 수출업체와 생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실사 팀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전에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에 구체적인 검증문제리스트를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 피감 수출업체와 생산업체는 답안지와 보충답안지에 제공되는 정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실사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전 문항에서 언급한 증거와 자료의 최초기록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데이터형식으로 존재한다면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는 앞에서 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상 운행되고 그 전자데이터도 복사나 복제가 가능함을 보증해야 한다.

제15조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는 실사과정에서 실사 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최초에 답안지를 준비한 책임자와 기타 주요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시로 실사 팀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제16조 실사에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혹은 실사 팀이 사용을 동의한 기타 언어이다.

제17조 실사 팀은 사건의 복잡한 정도를 보고 전면실사 혹은 표본추출 실사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8조 현장실사는 사전에 통지한 범위 안에서 진행가능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 실사 팀이 획득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실사가 종결되면 외경무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감 수출업체와 생산업체에 실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외경무부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황개요를 밝힐 수 있지만 피감 수출업체와 생산업체의 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실사를 통과한 답안지와 보충답안지에 제공된 정보와 자료 및 실사

과정 중에 더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외경무부가 덤핑과 덤핑마진을 재정하는 의거가 된다.

제2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외경무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최적의 정보를 이용하여 덤핑과 덤핑마진을 확정할 수 있다.

- (1)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현장실사를 거부할 경우
- (2)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그 소재국(지역)정부가 현장실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3) 실사 팀이 제기한 합리적인 요구에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 (4)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실사를 지연시켜서 실사를 기한 내에 완성 하지 못한 경우
- (5) 실사 과정에서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존재할 경우
- (6) 피감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속이거나 기만한 행위가 존재한 경우
- (7) 기타 현장실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존재한 경우

제22조 반덤핑조사는 수출가격 추정에 연관되거나 외경무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경무부가 관련 피 조사제품의 국내수입업체에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사방법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23조 관련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그 소재국(지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외경무부는 공작인원을 파견하여 해당 수출국(지역)에 가서 반덤핑조사 설문지를 해석해줄 수 있다.

제24조 본 규칙은 외경무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5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 반덤핑설문조사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반덤핑설문조사가 규범화되고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칭함)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지정한다.

제3조 본 규칙은 외경무부가 조사 설문지 방식을 통해 덤핑과 덤핑마진을 확정하기 위한 반덤핑조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하다.

제4조 본 규칙이 말하는 조사 설문지는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외경무부가 응소를 신청한 피 조사국가(지역)생산업체 혹은 수출업체(이하 “응소회사”로 칭함)에 발부한 서면 문제리스트이다.

제5조 응소회사는 외경무부의 요구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조사 설문지에 열거된 문제에 답해야 하고 조사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설문지 발부

제6조 피조사 국가(지역)의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반덤핑 입안일부터 20일 이내에 입안공고의 요구에 따라 외경무부에 응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응소신청을 한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응소 신청할 때 인쇄체 간체 중국어형식으로 아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1) 응소신청을 하게 된 계기
- (2) 응소회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 (3) 조사기간 내 중화인민공화국에 수출한 피 조사제품의 총 수량과 총 금액. 응소신청문건은 응소회사의 도장날인이나 혹은 법정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응소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개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전송할 경우에 대리변호사의 성명, 연락처,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위치, 권리위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 조사설문지는 응소신청 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응소회사에 발부해야 한다.

제9조 만약 응소회사가 많을 시 외경무부는 표본 추출의 방식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표본에 선정된 응소회사에만 조사 설문지를 발부할 수 있다.

표본추출조사에 포함된 응소회사에 대해서 외경무부는 설문지 발부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답변지 요구사항

제10조 응소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 지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 지는 조사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제11조 응소회사는 답변지 작성시 조사 설문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조사 설문지에 명시된 사건조사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응소회사는 조사 설문지에 열거된 문제를 답변 시 문제의 제목을 먼저 기재하고 제목 아래에 직접 답변하면 된다.

제13조 답변지는 인쇄체 간체 중국어형식으로 규정에 따라 기입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자료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시 외국어원본격식에 따라 중국어번역본을 제공하고 외국어원본 혹은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응소회사는 답변지에 사용된 증거자료의 유래와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답변지에 관련된 모든 매출전표, 회의기록, 재무보고 및 기타 문건은 회사의 답변지에 첨부할 것을 요구된 것 이외에는 모두 실사를 위해 구비해놓아야 한다.

제15조 답변지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거래증거자료는 거래발생의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며, 모든 거래의 증거자료는 거래절차에 따라 정리하며 거래의 증거자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응소회사는 설문지요구에 따라 관련 무역회사 혹은 기타 회사의 답변기입이 필요할 경우에 조사 설문지를 복사하여 전달하고 해당 관련무역회사 또는 기타회사는 설문지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답변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답변서 제출

제17조 조사 설문지의 답변지는 설문지발부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외경무부에 송달해야 한다.

제18조 응소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답변서 제출기한 7일전에 외경무부에 답변서 지연제출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지연신청과 지연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외경무부는 설문지 제출기한 4일전에 지연청구를 신청한 응소회사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지연신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연기는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응소회사가 답변서에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기밀유지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기밀유지의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기밀유지를 신청할 경우, 비기밀개요를 한부 제공해야한다. 비기밀개요는 충분한 의미의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기밀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비기밀개요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외경무부는 기밀유지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기밀유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비기밀개요가 제19조 제2항의 요구를 만족하지 않을 때 혹은 응소회사가 제공한 비기밀개요의 이유가 불충분할 때 응소회사에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응소회사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수정 후 비기밀개요가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외경무부는 그 자료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제21조 답변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나는 기밀유지 정보가 들어있는 완전한 답변서, 또 하나는 공개정보만을 포함한 답변서이다. 응소회사는 각 답변서 메인페이지에 비밀답변서인지 공개답변서인지를 밝혀야 한다. 공개답변서에 기밀유지부분이 있을 때 “[]” 로 표시해야 하며 상응한 비기밀개요의 순번을 표시해야 한다.

제22조 응소회사는 공개답변서와 비밀답변서의 중국어원본 각 1부, 중국어 복사본 각 4부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답변서는 적절하게 제본하여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답변서 본문과 첨부한 증거자료는 순서에 따라 페이지수를 표시해야 한다. 답변서는 본문 목록과 첨부서류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첨부서류는 순번을 잘 표시해야 한다.

제23조 응소회사는 답변서의 요구에 따라 증명서신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응소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설명해야하고 응소회사법정대표자 혹은 그 위탁대리인이 공식 서명하여야 한다.

외경무부는 증명서신을 첨부하지 않은 답변서는 접수 처리를 할 수 없다.

제24조 응소회사가 제공한 서면 답변서와 데이터 도표는 설문지요구에 따라 컴퓨터 플로피 디스켓, CD 혹은 외경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타 전자데이터저장장치로 제공해야 한다.

전자데이터저장장치의 내용은 답변서의 격식과 완전 일치하여야 하며, 도표 중 계산이 필요한 데이터는 계산 공식을 보류해야 한다.

제25조 응소회사는 제출한 전자데이터저장장치에 대해 바이러스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바이러스감염이 되어서 조사에 방해될 경우 외경무부는 획득 가능한 사실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일반적으로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특히 거래와 재무데이터가 포함된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응소회사는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응소회사가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규칙의 요구에 따라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이 규칙의 요구에 의하여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응소회사에 불합리한 금액 이외의 부담을 줄 경우 응소회사는 설문지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경무부에 서면신청을 하여 요구에 따라 전자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경무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동의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27조 응소회사는 답변서를 중화인민공화국 개업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대리전송 혹은 대리변호사가 관련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답변서에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유효 권리위탁서와 해당 변호사의 유효한 개업증서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 설문지의 답변 지는 당일 17:00시전에 설문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도착 혹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일은 외경무부가 답변서를 받은 날짜이다.

제5장 부칙

제29조 반덤핑조사과정에서 외경무부는 응소회사에 보충조사 설문지를 발부할 수 있고 보충정보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보충조사 설문지의 발부, 답변, 제출 등 사항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30조 외경무부는 수입업체에 조사 설문지를 발부할 수 있다. 수입업체에 조사 설문지를 발부, 답변, 제출 등 사항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31조 응소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 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 규칙의 요구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 지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외경무부가 실사진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하게 방해했을 때, 외경무부는 획득 가능한 사실과 현재 보유한 최적의 자료에 의거하여 예비재정 혹은 최종 재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제32조 본 규칙은 외경무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33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5. 반덤핑조사 표본추출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반덤핑조사에 대한 공평, 공정,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지정한다.

제3조 외경무부는 전면조사에 기초하여 모든 응소 수출업체 혹은 생산업체에 개별적 덤핑마진을 확정한다. 그러나 수출업체, 생산업체, 제품모델 혹은 거래과다로 인해 모든 수출업체, 생산업체에 단독으로 덤핑마진을 확정하거나 혹은 모든 제품모델,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덤핑조사의 적시 완성을 방해하는 경우 외경무부는 표본추출방법을 채택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외경무부는 표본 추출 시 획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통계학의 유효한 표본추출방법 혹은 수출량에 의거하여 조사샘플을 선택한다.

제5조 외경무부에서 선택한 조사샘플은 대표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2장 수출업체 혹은 생산업체의 표본추출

제6조 외경무부는 응소신청 등록상황에 근거하여 수출업체와 생산업체를 선정하거나 후보업체를 결정한다.

제7조 외경무부는 초보적으로 수출업체, 생산업체 선정 및 후보를 결정한 후, 즉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선정에 평론을 발표할 수 있다.

제8조 외경무부는 되도록이면 선정에 동의한 수출업체, 생산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가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경무부의 선택은 방해받지 않는다.

제9조 외경무부는 선정되었거나 후보로 결정된 수출업체나 생산업체에만 조사 설문지를 발부하고 선정되었거나 후보로 결정된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는 설문지요구에 따라 즉시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선정되지 않았거나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외경무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외경무부는 선정된 수출업체와 생산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선정된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경무부는 후보 수출업체, 생산업체로 해당 수출업체, 생산업체를 대체시킬 수 있다.

제13조 단독심사를 받지 않은 응소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덤핑마진은 선정된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에 의해 결정된다.

제14조 가중평균 덤핑마진계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제해야 한다.

- (1) “0” 덤핑 마진
- (2) 2% 미만의 소량 덤핑 마진
- (3)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제21조에 따른 덤핑 마진

제15조 외경무부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제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덤핑마진의 확정을 명확하게 요구한 수출업체, 생산업체에 개별적인 심사를 하되 덤핑조사의 적시 완성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단독심사를 진행한다.

제16조 응소하지 않은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제 21조에 의해 확정한다.

제3장 제품모델의 표본추출

제17조 외경무부는 응소한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답변서를 받은 후 만약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피 조사제품의 모델 종류가 많을 때 외경무부는 표본추출의 방식을 채택하여 부분적인 제품 모델을 선택하여 해당 응소 회사의 피 조사제품 덤핑과 덤핑마진을 확정할 수 있다.

제18조 외경무부는 초보적으로 제품 모델을 선정한 후 즉시 각 이해관계자측에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모델선정에 대한 평론을 발표할 수 있다.

제19조 외경무부는 되도록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동의하는 제품 모델을 선택하고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외경무부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0조 피 조사제품의 덤핑마진은 선정된 제품모델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에 의해 확정된다.

제4장 거래의 표본추출

제21조 외경무부는 응소한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답변 지를 받은 후 만약 피조사제품의 국내 판매 혹은 수출판매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을 시 외경무부는 표본추출방식을 채택하여 부분거래를 선정하여 피 조사제품의 정상적 가치를 확정한다.

제22조 외경무부는 표본추출을 진행 시 통계학의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경무부는 선정할 거래를 결정할 때 관련 응소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본 피 조사제품의 정상가격 혹은 수출가격은 선정된 거래의 가중 평균치에 의해 확정된다.

제5장 부 칙

제25조 통계학의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은 등거리 추출, 무작위 추출 혹은 기타 적당한 통계 표본 추출방법이다.

제26조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외경무부에서 담당한다.

제27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6. 반덤핑 정보공개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8호

제1조 반덤핑 조사의 공평, 공정, 공개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본 규칙이 공개라고 말하는 것은 외경무부가 반덤핑 조사과정 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이해관계자의 덤핑 및 덤핑 폭을 심사하여 결정할 때 채택하는 기본 데이터, 정보, 증거 및 이유를 고지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제4조 공개는 초기 의결 공표 후의 공개, 현장 실사 결과의 공개와 최종 의결이 나기 전의 공개를 포함한다.

제5조 초기 의결 공표 후의 공개와 최종 의결이 나기 전의 공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상가격 영역 : 정상가격에 대한 인정,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채택한 거래 데이터 및 조정데이터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채택하지 않은 데이터 및 그 이유 등
- (2) 수출가치 영역 : 수출가격에 대한 인정, 수출가치가 채택하는 거래 데이터 및 조정데이터의 산출, 수출가치를 산출할 때 채택하지 않은 데이터 및 그 이유
- (3) 원가영역 : 생산원가를 인정하는 데에 채택하는 데이터, 각 항목 비용의 할당방법 및 채택한 데이터, 이윤의 예측, 비 정상항목의 인정 등

(4) 현재 가진 최적 정보의 사용 및 이유, 단 기타 이해관계자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것은 제외한다.

(5) 반덤핑폭의 산출방법

(6) 외경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정보

제6조 공개는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7조 외경무부는 반덤핑조사 초기 의결의 공지 및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제8조 외경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를 한 후, 그 이해관계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제공해야 하며, 초기 의결 및 공개의 관련사항에 대해 논평하여야 한다.

이 논평은 서면형식으로 규정한 시간 내에 외경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외경무부는 현지 조사가 끝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조사받은 수출업체, 생산업체에게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조사받은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협력했는지의 여부
- (2) 조사받은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제공한 데이터, 정보와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
- (3) 조사받은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거짓말 및 기만행위를 했는지의 여부
- (4) 조사받은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위치하는 국가(지역)에서의 업그레이드된 정보 수집 상황
- (5) 외경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관련 정보

제10조 외경무부는 최종 의결을 내기 이전, 공개를 할 때에 공개되는 이해 관계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공개하는 관련사항에 대해 논평하여야 한다.

이 논평은 서면형식으로 규정한 시간 내에 외경무부에 제출한다.

제11조 재심 영역에 언급된 정보의 공개는 본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칙의 해석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을 진다.

제13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7. 반덤핑조사 공개정보열람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9호

제1조 반덤핑 조사의 공평, 공정,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실시한다.

제3조 본 규칙이 정보 열람의 공개는, 반덤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외경무부가 지정한 지역에 가서 조사, 열람, 필사, 아울러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 안전에 대해 제출한 기타 기밀이 아닌 정보, 서류를 복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조 외경무부는 각 이해관계자의 열람과 안전 조사와 관련된 전체의 정보 공개를 허락한다.

제5조 본 규칙은 제4조가 지정한 열람가능한 정보 공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청인이 제출한 반덤핑 조사신청서의 기밀이 아닌 문서
- (2) 국외 수출상과 생산업체가 응소하여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 답변서의 기밀이 아닌 문서
- (3) 이해관계자가 외경무부에 제출한 기타 기밀 아닌 정보
- (4) 관련 이해관계자가 외경무부에 제출한 청구는 답변서 제출 연기, 피조사 국가(지역)의 추가, 소급과세, 가격제출의 약속, 공청회 개최, 재심 등의 신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5) 기타 이해관계자가 위 조항의 신청에 대해 제출한 의견 및 논평 중 언급된 기밀 아닌 정보
- (6) 외경무부의 이 조의 제(4)호 중에서 제기한 신청에 대한 답변
- (7) 외경무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접견한 개요
- (8) 외경무부가 공표한 공고, 통지
- (9) 외경무부가 현지 심사를 진행한 개요;
- (10) 외경무부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열람가능한 비기밀정보.

제6조 이해관계자가 외경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기밀로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기밀 정보인 경우, 외경무부에 제공하는 이 부분의 정보에 대해 기밀처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기밀 정보의 비기밀개요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공개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밀정보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외경무부는 그것이 공개정보라고 여기고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전체 안전의 조사과정 중, 각 이해관계자는 외경무부의 업무시간 내에 외경무부로 가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이해관계자가 공개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미리 외경무부의 관련 실무자와 연락을 취하고 아울러 열람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이해관계자가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 외경무부의 관련 실무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문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해관계자는 열람한 공개정보를 필사, 복사할 수는 있으나 그 문서를 빌려갈 수는 없다.

제11조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을 진다.

제12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8. 반덤핑 가격약속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제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반덤핑 조치를 합리적이고, 유효하게 조치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 공평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실시한다.

제3조 본 규칙이 말하는 가격약속이란, 응소한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외경무부에 자발적으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덤핑가격으로 피조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중지하기를 원하고 아울러 외경무부에서 조사 중지, 종결 할 것을 받아들인 것을 가리킨다.

제2장 가격약속의 제출

제4조 응소된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외경무부에게 가격약속을 제기할 수 있다. 외경무부도 응소된 수출업체, 생산업체를 향해 가격약속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외경무부는 관련 수출업체, 생산업체에게 가격약속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거나 가격약속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그 덤핑 및 덤핑 폭의 확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가격약속의 제기는 초기 의결 후 45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덤핑과 피해에 대한 확정적인 초기 의결 전에, 외경무부는 수출업체, 생산업체에게 가격약속을 제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관련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제기하는 가격약속은 기밀정보를 포함하며, 외경무부를 향해 기밀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그 기밀정보의 비 기밀개요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외경무부는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제기한 가격약속을 받은 후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기밀 아닌 문서를 제공하고 그 논평을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가격약속의 접수 또는 거절

제10조 외경무부 가격약속을 접수할 지 여부를 고려할 때 아래 요소들을 심사해야 한다.

- (1) 덤핑이 초래하는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가의 여부
- (2)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감독, 조정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 (3)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익에 부합한가의 여부
- (4)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 (5) 외경무부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요소

제11조 외경무부는 조사기간에 충분히 협력한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제기한 가격약속만 받아들인다.

제12조 외경무부가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제출한 가격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국가경무위와의 상의를 거친 후에 가격약속을 제출한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반덤핑조사를 중지 혹은 종결하는 결정은 외경무부가 공지해야 한다.

제13조 외경무부가 가격약속을 접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곧 약속을 거절하는 이유를 그 수출업체, 생산업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그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격약속을 거절하는 결정과 이유에 대한 최종 의결 과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4장 가격약속의 내용, 유효기 및 감독집행

제14조 가격약속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제품범위
- (2) 참고가격은 가격의 확정, 가격인상 방식, 가격인상폭, 단계별 조정 등을 포함 한다.
- (3) 보고의무
- (4) 현장실사를 받아들이는 명확한 의사 표시
- (5) 가격약속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보장
- (6) 외경무부가 포함해야 한다고 여기는 기타내용

제15조 약속한 가격상승폭은 초기 의결이 확정된 덤핑 폭과 상응해야 하며, 만약 가격 상승폭이 덤핑 폭보다 낮다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제거될만한 경우 가격 상승폭이 덤핑 폭보다 낮을 수 있다.

제16조 가격약속은 반덤핑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기로 결정하여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17조 외경무부는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통해 가격약속의 이행에 대해 감독한다.

- (1) 가격약속을 제출한 수출업체, 생산업체는 정해진 기간에 수출한 실제 수량과 가격, 수입업체 명칭을 포함한 약속 이행과 관련한 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2) 정해진 기간에 세관의 실태조사에 대해 약속한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중화인민공화국에 피조사제품을 수출한 데이터
- (3) 약속을 한 수출업체, 생산업체에 대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현장 실사
- (4) 약속을 한 수출업체, 생산업체를 향한 국내수입상의 이해, 실태조사 관련 상황
- (5) 외경무부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기타 방식.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 후에, 관련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청구 또는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조사기관은 덤핑과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 본 규칙 18조에 근거하여 계속 조사한 경우, 만약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과 피해의 긍정판정을 내린다면 가격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제20조 본 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계속 조사한 경우, 만약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과 피해의 부정판정을 내린다면 관련 수출상, 생산업체의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의 부정판정을 내린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덤핑조사는 중지되어야 하며,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가격약속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계속 조사하는 경우, 만약 가격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덤핑 또는 피해가 존재한다는 확정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서야 외경무부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 가격약속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가격약속의 취소, 철회 및 위반

제22조 외경무부가 만약 계속 가격약속을 집행하는 것이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이 가격약속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외경무부는 효력 발생을 취소하기 전 합리적인 시간 안에 가격약속을 내린 수출업체, 제조업체에게 본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출업체, 제조업체에게 이에 대한 논평을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가격약속을 내린 수출업체, 생산업체는 가격약속의 유효기간 내의 임의 시기에 약속을 철회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미리 외경무부에 제기해야 한다.

제25조 외경무부가 가격약속 결정의 취소를 결정하거나 약속을 행한 국외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가격약속을 철회하는 경우, 외경무부는 세관에 통지하여 취소나 철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원래의 초보 의결에 따라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게 하며, 아울러 곧 반덤핑 조사를 재개한다.

원래의 반덤핑 조사가 이미 완결되었고 아울러 최종적으로 그 수출업체, 제조업체에게 덤핑 폭을 확정하였다면, 발생 효력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날부터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제26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가격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 (1) 약속의 가격보다 낮게 수출한 경우
- (2) 약속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약속 이행과 관련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3) 외경무부의 그 제공받은 수치와 기타 정보에 대해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
- (4) 제공받은 수치와 기타 정보에 심각한 거짓이 존재하는 경우
- (5) 뚜렷한 회피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 (6) 기타 가격약속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27조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가격약속을 위반할 경우, 외경무부는 곧 반덤핑조사를 재개하고 아울러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에 근거하여, 곧 임시 반덤핑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만약 최종 의결에서 덤핑이 존재한다고 확정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덤핑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아울러 임시 반덤핑 조치 실시 전 90일 내에 수입하는 피조사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금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가격약속 위반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최종 의결이 확정된 반덤핑관세가 임시 반덤핑관세 보다 높거나 납부한 보증금 금액 보다 높은 경우, 차액부분은 보충 징수해야 하며, 최종 의결한 반덤핑관세가 임시 반덤핑관세보다 낮거나 납부한 보증금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부분은 환급해줘야 한다.

제28조 수출업체, 생산업체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만약 반덤핑 조사가 이미 완결되었고 아울러 가격약속을 위반한 국외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덤핑 폭을 확정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해야 하며, 아울러 반덤핑관세 징수 전 90일 내에 수입하는 피조사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가격약속 위반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 가격약속은 관련 수출국(지역)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 가격약속은 효력 발생 7일 내에 WTO 반덤핑 대책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제32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9.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8호

제1조 신수출업체 재심의 공평, 공정,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 공평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본 규칙은 원래의 반덤핑 조사 기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피조사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지만 사건에 연루된 국가(지역)의 수출업체, 생산업체(이하 “신수출업체”)에 적용한다. 원래의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발생된 후 그 반덤핑 세율의 재심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4조 신수출업체인 재심 신청자는 원래의 반덤핑 조사기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피조사제품을 수출한 적 있는 수출상, 생산업체와 연관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

만약 신수출업체인 재심 신청자는 무역업체로서 앞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도 그 공급업체도 원래의 반덤핑 조사기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피조사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는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위에서 언급한 수출업체, 생산업체와 연관관계를 가져선 아니 된다.

제5조 신수출업체인 재심 신청인은 반드시 원래의 반덤핑 조사기간 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실제로 피조사제품을 수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앞 조항이 언급한 수출은 일정한 수량에 도달해야 하고, 정상 수출가격을 확정하는 기초를 구성하는 데에 충분해야 한다. 이 수량은 피조사제품의 정상 상업 교역량에 따라 확정한다.

제6조 만약 원래의 반덤핑 조치가 반덤핑관세인 경우,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수출에는 신수출업체의 재심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신수출업체인 재심 신청인은 원래의 반덤핑조사 최종의결의 효력 발생 후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시간은 실제 수출 후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원래 반덤핑 조사기간 후 최종의결 전의 실제 수출에 대해 제기한 신청은 앞 조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원래의 반덤핑 조사가 최종 결의를 낸 후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실제 수출일자는 영수증 일자에 따라 확정한다.

제8조 신수출업체의 재심 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기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수권인이 정식으로 서명해야 한다.

제9조 신수출업체의 재심 신청은 아래 열거한 증거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 (2) 회사 구조 및 관련기업 명칭
- (3) 신청 전 6개월 내에 피조사제품의 국내 판매의 평균 가격, 교역 건수, 총금액,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수출의 평균 가격, 교역 건수, 총금액, 제3국(지역)에 대한 수출의 평균 가격, 교역 건수 주기별 총금액
- (4) 중화인민공화국이 피조사 제품을 수출한 계약서, 영수증, 출고증, 지불 증서의 복사본 및 수입상의 반덤핑관세 납부의 증서
-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

제10조 신청서는 기밀문서(신청인이 기밀신청을 제기한 경우)와 공개문서로 구분해야 한다. 기밀문서와 공개문서는 모두 1매의 원본, 6매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외경무부는 신수출업체의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근무일 기간 내에 최초의 반덤핑 조사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초의 반덤핑 조사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14일 내에 입안하여 재심할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2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증거 및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근무일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만약 외경무부가 입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외경무부가 입안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입안 공지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피조사제품의 서술 묘사
- (2) 조사받은 수출상, 생산업체 및 그 소속국가(지역) 명칭
- (3) 입안 시기
- (4) 재심조사 시기
- (5) 이해관계자의 논문 발표, 관련 문서 제출의 시한
- (6) 조사기관의 현장실사 진행에 대한 의향
- (7) 이해관계자의 비협조에 따른 대가
- (8) 조사기관의 연락처

제15조 외경무부는 입안공지 발표 전에 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은 공지 발표의 날부터 신청인이 수출한 피조사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징수를 중지해야 한다. 단, 신청인의 피조사제품의 수입상에게 원래의 반덤핑 의결 과정에서 ‘기타 회사’에 적용하는 반덤핑 세율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해야 한다.

제16조 신수출업체의 재심 조사기간은 재심 신청 제출 전 6개월이다.

제17조 외경무부는 필요한 경우 신수출업체인 재심 신청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의 절차는 《반덤핑 설문조사 잠정 규칙》을 준수한다.

제18조 수입제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반덤핑 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제4,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19조 수출가격은 수입제품이 처음 개별 구매인에게 재판매되는 가격을 근거로 추정하며, 만약 신청인이 충분한 증거와 증명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덤핑관세는 이미 적절하게 이 가격 및 추후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외경무부는 추정하고자 하는 수출가격을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 세액을 빼선 안 된다.

제20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문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 현장실사의 절차는 《반덤핑 조사 현장실사 잠정 규칙》을 준수한다.

제21조 신수출업체의 재심에는 초기 의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 단, 외경무부는 초기 조사의 결론을 내린 후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초기 결론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논평을 제기하고 보충문서를 제출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초기 결론이 공개된 후, 새 수출상인 재심 신청인은 15일 내에 외경무부에 가격약속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외경무부는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가격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국가 경무위와의 상의를 거친 후에 재심 조사의 중지 혹은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세관에 통지하여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새 수출상이 수입한 피조사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징수를 중지 한다.

재심 입안 후에 가격약속의 효력 발생 전에 이 새 수출상이 수출한 피조사 제품은 지불한 보증금 금액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

제24조 새 수출상의 재심조사는 입안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제25조 외경무부는 재심 기한 만료 15일 전에 국무원 관세 세척위원회에 재심 신청인의 반덤핑관세에 적용되는 건의를 제기해야 하며 아울러 재심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관세 세척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공지를 발표해야 한다.

제26조 재심의결에서 반덤핑이 존재함을 확정한 경우, 재심입한 후 의결을 내리기 전에 재심 신청인이 수출한 피조사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 징수를 소급해야 한다.

재심의결의 반덤핑관세가 이미 지불한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 차액부분은 받지 아니하며, 이미 지불한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부분은 환급해야 한다.

제27조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제28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10.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22호

제1조 반덤핑관세환급의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수출입 공평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반덤핑 제품의 수입업체는 증거와 증명을 가지고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의 금액이 실제 반덤핑 폭을 초과한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외경무부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세금 환급의 제기는 실제 반덤핑관세를 제기한 후 3개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반덤핑 조사의 입안 후 최종 의결 전에 수입한 피조사 제품에 대해서 제기한 관세환급 신청은 앞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여전히 반덤핑 조사 최종의결 후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5조 관세환급 신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아울러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 수권자는 정식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 세금 환급신청은 아래에 열거한 증거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인 및 그 공급업체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 (2) 신청 전 6개월 내의 피조사 제품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 교역 건수, 총금액,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수출의 평균 가격, 교역 건수, 총금액, 제3국(지역)에 대한 수출의 평균 가격, 교역 건수, 총금액

- (3) 신청 전 6개월 내의 피조사 제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의 수치
- (4) 덤핑 폭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각종 조절 및 덤핑 폭의 초보 계산결과
- (5) 그 세금 환급을 신청한 피조사 제품에 대한 수입계약서, 영수증, 출고증, 지불증서의 복사본 및 신청인의 반덤핑관세 납부증서
- (6)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

제7조 제6조 (1)에서 (4)호까지의 원래의 반덤핑 조사 설문지가 요구하는 내용 및 형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첨부하는 증거, 문서는 반덤핑 조치가 적용하는 모든 제품의 모델 번호의 수치를 포함해야 한다. 수출가격은 신청인의 공급업체의 대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제8조 관세환급의 신청이 여러개의 공급업체와 관련되는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업체가 수출업체, 생산업체와 연관 관계가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증거, 서류를 수입업체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세환급 신청은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성명을 포함해야 한다.

앞 조항이 지칭하는 성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피조사 제품의 덤핑 폭이 이미 내려갔거나 혹은 제거되었으며 또한 관련 증거와 문서는 규정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세금환급 신청을 제기한 30일 내에 수출업체, 제조업체가 직접 외경무부에 즉시 제출한다.

수출업체, 생산업체는 규정기간 내에 신청인의 성명에 따라 증거,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경무부는 관세환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서는 기밀문서(만약 신청인이 기밀신청을 제기한다면)와 공개 문서로 구분해야 한다. 기밀문서와 공개문서는 모두 1매의 원본, 6매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외경무부는 《반덤핑 조사 현지심사 잠정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업체가 제출한 증거, 문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현지 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해관계자가 심사를 거절한다면, 외경무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의결을 내리거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외경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제4조,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한 제품의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반덤핑 폭을 확정한다.

제13조 수출가격은 수입제품이 처음 개별 구매인에게 재판매되는 가격을 근거로 추정하며, 만약 신청인이 충분한 증거와 증명을 지니고 있다면, 반덤핑관세는 이미 정당하게 이 가격 및 이후의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경무부는 추정하고자 하는 수출가격을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 세액을 감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외경무부는 심사를 거쳐 반덤핑 폭과 원래의 판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내려가지 않았다면, 외경무부는 관세환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외경무부가 신청을 거절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외경무부는 관세환급 신청의 날부터 12개월 안에 관세환급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외경무부는 관세환급 심사 기한 만료 15일 전에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 관세환급 건의를 제기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관세 세칙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신청인과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관세환급액은 원래의 반덤핑 조사가 확정한 덤핑 폭과 새로 확정한 덤핑 폭 간의 차액이다.

제19조 관세환급 신청의 조사결과는 원래의 반덤핑 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심사를 거쳐 외경무부가 덤핑 폭이 올라간 것을 발견한다면, 자주 적으로 중간 재심의 시작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칙은 외경무부가 해석에 책임진다.

제22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11.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37호

제1조 반덤핑 업무의 공평, 공정,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반덤핑 입안 공지 및 반덤핑 의결 공지(이하 “반덤핑 공지”) 속에 반덤핑 입안 조사의 제품 범위와 반덤핑 조치의 제품범위(이하 반덤핑 제품범위로 약칭)를 확정하고, 세관은 공지가 규정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3조 반덤핑 제품의 범위조정은 외경무부와 관련된 대외공지에 모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관은 공지가 규정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4조 외경무부의 반덤핑 공지 제품의 범위 조정 절차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반덤핑 공지 제품 범위의 조정 절차는 신청 순서와 외경무부의 신청수리, 조사, 결정 및 공지의 정차를 포함한다.

제5조 신청 절차

- (1) 반덤핑 입안 공고 후,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품조사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공지가 규정한 시간 내에 또는 외경무부의 동의를 거쳐 연장된 기한 내에 외경무부를 향해 제품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 (2) 반덤핑 초기의결의 공지 후에, 관련 이해관계자는 반덤핑 조치를 적

용하는 제품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공지가 규정한 시간 내에 또는 외경무부의 동의를 거쳐 연장된 기한 내에 외경무부를 향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제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3) 본 규칙이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반덤핑 신청인, 국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직, 개인을 가리킨다.

(4) 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제6조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신청인의 명칭 및 약력, 조정을 신청하는 제품
- (2)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 이유의 상세 설명 및 관련 증거
- (3) 조정 신청 제품의 상세 묘사와 설명. 제품은 아래와 같은 순서와 차례대로 묘사한다; 관세항목번호, 물리적 특징, 화학적 특성 등 이 제품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정도의 묘사; 위에서 언급한 묘사 방식으로 이 제품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상세히 제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조정을 신청한 수입제품과 국내의 동종제품과의 다르거나 다른 점의 상세 묘사와 설명
- (5) 국외 생산업체, 수출상, 수입업체 및 후속 사용자
- (6)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합법적인 수권자의 날인 또는 서명

제7조 접수 및 심사, 조사, 결정과 공지 절차

- (1) 외경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심사하고, 제6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접수하여 심사 한다
- (2) 외경무부는 설문지, 현장실사, 공청회 등 방식을 통해 신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 한다

- (3) 외경무부는 신청내용의 합리성과 반덤핑 신청인을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며 제품의 조사와 설명의 상황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논증을 할 수 있다.
- (4) 위에서 언급한 절차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제품의 범위 조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 외경무부는 반덤핑 제품범위에 대해 조정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최종 의결의 공지 속에 대외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 (5) 외경무부는 제품범위의 조정 신청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자의 제출문서에 근거한 심사 또한 제품범위의 조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8조 반덤핑 재심과 관련하여 언급할 경우, 제품범위의 조정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9조 본 규칙의 해석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제10조 본 규칙은 발표한 날로부터 제30일째에 실시한다.

〈보조금 관련 시행세칙(反补贴相关规章)〉

2.12. 39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0호

제1조 반보조금조사의 공평, 공정,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보조금 조사과정중에 개최하는 보조금재정공청회에 적용한다.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수출입공정무역국(이하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구체적으로 보조금재정공청회를 조직한다.

제4조 본 규칙에 의하면 공청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비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프라이버시에 연관된다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의 신청에 의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만약 수출입공정무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본 규칙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반보조금 조사의 신청인, 이미 알

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과 개인을 말한다. 이해관계국(지역)정부라 함은 수출국(지역)정부와 원산국(지역)정부를 말한다.

제8조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에 공청회개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 (1) 공청회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기타 상황
- (2) 신청사항
- (3) 신청이유

제9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의 공청회개최 서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인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 (2)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유
- (3) 각 이해관계자들이공청회 시작 전 등록할 시간, 장소 및 관련요구
- (4) 기타 공청회 관련사항

제11조 각 이해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후 고지한 내용과 요구에 근거하여 수출입공정무역국에 등록하고 공청회에서 발언요지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공청회 공지 때 확정된 등록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시간, 장소, 공청회사회사, 공청회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하며 등록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공청회사회자는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공청회의 진행에 대한 사회를 본다.
- (2) 공청회 참가인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 (3) 공청회 질서를 유지한다.
- (4) 각 이해관계자 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질문을 한다.
- (5) 각 이해관계자 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보충증거 제출여부와 이미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감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6) 공청회의 중단 혹은 종결 결정
- (7) 공청회중 결정해야 할 기타사항

제14조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는 법정 대표자나 주요책임자가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고, 1명 혹은 2명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와서 공청회에 출석한다.
- (2) 공청회 규율을 준수하고 공청회사회자의 안내에 따른다.
- (3) 공청회사회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한다.

제16조 공청회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1)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시작을 선포하고 청문회 규율 낭독

- (2) 공청회 참가자를 확인
- (3)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 진술
- (4) 공청회사회자가 이해관계자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질문
- (5) 이해관계자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 최후진술
- (6) 사회자의 공청회 종결 선포

제17조 공청회는 조사기관에 정보 수집을 제공하고 각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며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제18조 공청회는 기록되어야 하고 공청회사회자, 기록인,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 정부는 현장에서 사인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 정부가 사인이나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 청문회사회자는 이 사항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19조 다음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출입공평무역국의 결정을 거쳐 청문회 진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공청회신청인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행위로 인해 청문회 연기 혹은 취소 신청을 서면으로 했을 때
- (2) 반보조금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 (3) 기타 연기 또는 취소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20조 공청회 개최를 연기해야 할 이유가 해제되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공청회를 즉각 회복해야 하며 등록 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칙이 정한 통지방식은 대외경제협작부의 공고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2조 공청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이다

제23조 본 규칙의 해석은 대외무역경제협작부가 책임 진다

제24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13.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반보조금 조사의 신청 및 입안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의 수출입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직권에 의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신청인 자격

제4조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은 대외경제무역부에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국내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제6조 신청인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50%에 달하지 않지만, 만약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생산자 중에서 신청을 지지하는 자들의 생산량이 지지 및 반대하는 자들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동시에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25%보다 낮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이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다.

본 조 제1항 지지자들의 생산량을 확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생산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국내 산업이 지극히 분산되어 있어 생산자의 수량이 아주 많을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는 통계학상 효과적인 표본 채취 방식을 채택하여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자신이 조사를 신청한 제품 또는 동종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9조 국내 한 지역시장의 생산자는 해당 시장에서 자신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해당 시장이 동종제품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역의 생산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신청

제10조 반보조금 조사 신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한다. 신청서는 정식으로 대외경제무역부에 입안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를 명시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 반보조금 조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1) 신청인 및 이미 알고 있는 국내 생산자의 상황 설명
- (2) 조사신청 수입제품,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및 양자의 비교
- (3) 이미 알고 있는 수출업자 또는 국외 생산업자, 수입업자의 상황 설명 및 수출국(지역)
- (4) 국내산업의 상황 설명
- (5) 보조금의 상황 설명
- (6) 국내 산업이 피해 받는 상황 설명
- (7) 보조금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의 논증
- (8)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항

제12조 신청인의 상황 설명은 신청인의 명칭,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법정 대표자 및 그 연락 담당자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이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명칭과 신분 등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수권위임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국내 생산자의 상황 설명은 이미 알고 있는 국내 생산자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기타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제13조 조사신청 제품의 상황 설명은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시장 상황 및 해당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관세 관세코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의 상황 설명은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및 시장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양자의 비교는 물리적 특징, 화학성질, 생산기술, 대체성 및 용도 등에 대한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알고 있는 수출업자 또는 국외 생산업자의 상황 설명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국가, 명칭,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수입업자의 상황 설명은 수입업자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기타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제15조 국내 산업의 상황 설명은 신청 제기 전 3년간의 국내 동종 제품의 매년 생산량, 신청 제기 전 3년간의 신청인의 매년 생산량 및 해당 신청인이 국내 총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 상황 설명은 보조금의 존재, 성격, 보조금액과 단위 제품 보조금의 계산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출국(지역)의 보조금 지급 법률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단위 제품이 받을 보조금금액의 추산 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내 산업 피해 상황 설명은 주로 국내 산업 피해 유형(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산업 형성에 대한 실질 저해), 조사신청 수입제품의 수량 변화와 가격변화,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 대한 영향, 국내 산업과 관련된 경제 요인 및 지표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질적 피해를 이유로 신청할 때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조사신청 수입제품의 신청 제기 전 3년간의 절대 수입 수량,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에 비례한 수량의 증가 상황
- (2) 조사신청 수입제품의 신청 제기 전 3년간의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 평균가격, 평균가격 변동 추이 등

- (3) 조사신청 수입제품의 신청 제기 전 3년간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상황은 국내 동종제품 가격의 삭감 상황,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한 상황, 국내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수치 등을 포함한다.
- (4) 조사신청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산업의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율, 투자수익, 설비이용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 현금 흐름, 취업, 임금인상, 자금 조달 또는 투자 능력, 재고 등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조사신청한 수입제품이 농산물인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부담을 가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개별 요소가 해당되지 않을 시, 신청인의 설명을 요한다.

제19조 피해의 위협을 이유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피해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조사신청 수입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의 대폭 증가율 또는 증가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수출국(지역)의 현재 상황 및 잠재적 수출 능력, 재고 상황 등
- (2) 본 규칙 제18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표 또는 요소 지표상 현저하게 예측가능하며 임박한 변화추세.

제20조 국내 산업 건설에 대한 실질적 저해를 이유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제19조에서 규정한 증거 외에 추가적으로 국내 산업의 건설 계획 및 실제적인 실시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국내 산업의 피해 증거는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확정해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 제품을 포함한 제일 좁은 제품 그룹이나 범위의 생산을 포함시켜 확정해야 한다.

제22조 보조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논증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비보조금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위축, 소비방식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자의 자유 거래 제한과 그들 간의 경쟁, 기술 발전, 및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과 노동생산성 등 요소가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상술한 개별 요소가 해당되지 않을 시, 신청인이 설명을 해야 한다.

제23조 신청인은 본 장에서 규정한 증거자료를 제출 시 증거의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제24조 신청함에 있어 기밀자료와 관련된 경우, 신청인은 기밀유지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동시에 사안의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밀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기밀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비기밀개요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증거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신청인은 해당 증거자료의 외국어 전문과 관련된 부분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반보조금 조사 입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국어 인쇄체의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국가의 통일된 용어가 있는 것은 규범적인 단어를 채택해야 한다.

제27조 반보조금 조사 신청은 기밀문서(신청인이 기밀 신청을 한 경우)와 공개문서로 나뉘어야 한다. 기밀문서는 원본 1부, 복사본 6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문서는 원본 1부, 복사본 6부 외에도, 이미 알고 있는 조

사 신청한 수입 제품의 수출국(지역)의 수량에 따라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나 만약 이미 알고 있는 조사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의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적당하게 줄이되 5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28조 신청인은 신청 시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요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증거의 전자 데이터 저장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은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우편 송달, 직접 송달 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수출입공정무역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신청인이 정식으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수령하고 서명해야 한다. 수령 서명한 날짜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받은 날짜이다.

제4장 입안

제31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조사 입안 또는 조사 불입건을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신청 공개 문서와 기밀 문서 각각 1부를 전달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20일 있어야 한다.

제33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심사 후, 신청인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조정 또는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요구에 따라 조정 또는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4조 대외경제무역부가 신청인의 반보조금 입안 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5조 초보적인 조사에 따라 신청이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할 경우, 조사 입안을 결정하기 전, 대외경제무역부는 입안 결정 전에 수출국(지역) 정부를 요청하여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해야 한다.

수출국(지역) 정부의 협의 거절은 반보조금 조치의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6조 대외경제무역부와 수출국(지역)의 협이가 일치한 의견으로 합의에 성공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금 조사의 입안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7조 수출국(지역)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적당하게 반보조금 입안 기한을 연장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은 60일 내에 끝나야 한다.

협이가 실패하거나 60일 내에 협이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반보조금 조치의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8조 입안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대외경제무역부는 공고를 하지 않지만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 대외경제무역부가 입안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조사 신청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심사를 통해 입안 조사를 결정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가 공고를 하고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기타 이해 관계 조직, 개인과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 한다.

제41조 입안 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1) 신청서 개요 및 대외경제무역부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 (2) 조사 제기 근거 자료의 요약 설명
- (3) 조사 제기한 날짜
- (4) 조사 제품 수출국(지역)
- (5) 조사 제품
- (6) 조사 기간
- (7) 조사 기관의 실시 조사 의향
- (8) 이해관계자의 불응소 결과
- (9)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시한
- (10) 조사기관의 주소 및 연락 방식

제42조 입안 조사의 결정은 공포하면,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서의 공개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수출업자와 수출국(지역) 정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반보조금 조사의 입안 날짜는 입안 조사 결정 공고 날짜이다.

제44조 특수한 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가 반보조금 조사 서면신청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조금과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

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국가경무위(商国家经贸委)를 통한 후, 자의적으로 입안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결정한 입안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장악한 증거가 본 규칙 제3장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5조 자의적으로 결정한 입안 절차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조 본 규칙의 해석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담당한다.

제47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2.14.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협약부령 제16호

〈반보조금설문조사잠정규칙〉은 2002년3월13일 제5차 대외경제무역부부무회의 심의 통과, 현재 발포하여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

대외경제무역협약부부장 石广生 2002년3월13일

제1장 총칙

제1조 반보조금 설문조사가 규범적이고 질서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경제무역협약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가 지정한 수출입공평무역국에서 본 규칙을 실시한다.

제3조 본 규칙은 대외경제무역부가 보조금 및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반보조금 조사이다.

제4조 본 규칙이 지칭하는 설문조사는 반보조금 조사 중에서 대외경제무역부가 응소한 피조사 국가(지역)의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이하 응소 회사)를 상대로 배포하는 서면 문제리스트이다.

제5조 응소회사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요구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설문조사에서 열거한 문제를 응답해야 하고, 설문조사에서 요구한 정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설문 배포

제6조 피조사 국가(지역)의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반보조금 조사 입안 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안 공고의 요구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에 응소 접수를 해야 한다.

제7조 응소 접수하는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대외경제무역부에 응소 접수 시 인쇄체 간체중문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1) 응소 접수의 의사표시
- (2) 응소 회사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인, 연락처와 연락 담당자
- (3) 조사 기한 내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출한 피조사 제품의 총 수량, 총금액
응소접수 문서에는 응소회사의 날인과(또는) 그 법정 대표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신청서를 중화인민공화국 개업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 변호사의 성명과 연락처, 소속된 로펌 및 그 주소를 제시해야 하고, 위임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설문조사는 응소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근무일) 내, 응소 회사에 배포해야 한다.

제9조 응소하는 회사가 많아 대외경제무역부가 표본 추출하는 방식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설문조사는 표본 추출로 선정된 응소 회사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만약 표본 추출과 관련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설문 배포 기한과 관련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응답 요구

제10조 응소 회사는 규정된 시간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응답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응답 문서는 설문조사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응소 회사는 설문에 응답할 때 설문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서면 형식으로 설문조사에서 명시한 조사 인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응소 회사는 설문조사에서 열거한 문제를 응답할 때 우선 문제의 제목을 열거하고, 제목아래에 직접 답해야 한다.

제13조 응답 문서는 인쇄체 중문간체의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의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외국어 원본의 형식으로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고, 외국어 원본 또는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응소 회사는 응답 문서에 증거자료의 출처와 근원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응답 문서와 관련된 판매문서, 회의기록, 재무보고서와 기타 문서는 요구에 따라 회사의 응답 문서에 첨부해야 하고, 복사본을 보류하여 대조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15조 응답 문서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는 거래 발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한 건의 거래마다 증거자료가 거래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하고, 해당 거래의 증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응소 회사가 설문조사의 요구에 따라 설문 조사의 복사본을 관련 무역회사 또는 기타 회사에 기입하도록 전달할 때, 해당 관련 무역회사 또는 기타회사는 설문조사의 요구에 따라 독자적으로 응답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답안 제출

제17조 설문조사의 응답 문서는 설문조사 배포일로부터 37일 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전달해야 한다.

제18조 응소 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응답 기일 내에 완성할 수 없을 경우 설문 제출 마감 기한 7일 전에 대외경제무역부에 응답 문제 제출 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기 신청 및 연기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설문 제출 마감 기한 4일 전에 연기 신청한 응소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기 신청 요구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연기는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9조 응소 회사가 응답 문서에 기밀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처리 신청을 해야 하고, 비밀처리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비밀처리 정보에 대하여, 비기밀개요를 한 부 제공해야 한다. 비기밀개요는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이해관계인이 기밀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기밀개요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무역부는 비밀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비기밀개요가 제19조 제2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응소 회사가 비기밀개요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응소 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응소 회사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수정 후 비기밀개요가 여전히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해당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21조 응답 문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해야 하며 한 가지는 기밀정보를 포함한 완전한 응답 문서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개 정보만 포함된 응답 문서이다. 응소 회사는 응답 문서 첫 페이지에 기밀 응답 문서 또는 공개 응답 문서를 명시해야 한다. 공개 응답 문서에서 기밀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 】”호로 표시해야 하고, 상응한 비기밀개요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응소 회사는 공개 응답 문서와 기밀 응답 문서 원본 각 1부, 중국어 복사본 각 4부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응답 문서는 반드시 적절하게 제본해야 한다. 응답 문서 정본과 첨부된 증거자료는 모두 순서대로 페이지수를 표시해야 한다. 응답 문서는 응답 문서 목록과 첨부파일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첨부파일마다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23조 응소 회사는 응답 문서의 요구에 따라 증명 서신을 제공해야 하고, 응소 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선언해야 하며, 응소 회사 법정대표인 또는 위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증명서신을 첨부하지 않은 응답 문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24조 응소 회사가 제공한 서면 응답 문서와 데이터 도표는 설문 요구에 따라 컴퓨터 플로피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타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의 내용은 응답 문서 중의 형식과 완전 일치해야 하고, 도표중의 데이터가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계산 공식까지 보류해야 한다.

제25조 응소 회사는 제공한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가 바이러스가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조사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고, 대외경제무역부는 확인한 사실과 기존 최고의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 데이터 매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히 거래와 재무상황의 전자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하지 않는 응소 회사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응소 회사가 전자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에 따라 전자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 규칙의 요구에 따라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응소 회사에 불합리적인 추가 부담을 가져다 줄 경우 응소 회사는 설문조사 배포 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대하여 서면 신청을 제기하여 요구에 따라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 접수 후 5일 내에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27조 응소 회사의 응답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업변호사가 대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 변호사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응답 문서에는 유효한 변호사 위임서 및 해당 대리 변호사의 유효한 개업증명서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설문조사의 응답 문서는 마감일 당일 17:00전에 우편 또는 직접적으로 설문조사에 명시된 주소에 송달하여 한다.

송달일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응답 문서를 수령한 날짜다.

제5장 부칙

제29조 반보조금 조사에서 대외경제무역부는 응소 회사에 대하여 보충 설문조사를 배포하여, 추가적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적 설문조사의 배포에 대하여, 답변 및 제출 등 사안은 본 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0조 응소 회사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응답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응답 문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대외경제무역부가 대조 검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획득 가능한 사실과 현존 최고의 자료에 따라 초보 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입안 조사 공고 후 30일 내에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원산국(지역) 정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배포해야 한다. 설문조사의 배포, 회답 및 제출은 본 규칙을 참조한다.

제32조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담당한다.

제33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15.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협작부(2002년 제17호령)

반보조금조사 현지실사 잠정규칙》은 2002년 3월 13일 제5차 외경무부부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발표하고,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石广生 2002년 3월 13일

제1조 반보조금 조사 현장실사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경제무역협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실시한다.

제3조 본 규칙이 지칭하는 현장실사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직원을 관련 수출국(지역)에 파견하여 관련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대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금 조사 중에서 충분히 협력하는 수출국(지역)의 수출업자, 생산업자에 한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제5조 현지실사는 주로 관련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주로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제출한 응답 문서 중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자료
- (2)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대외경제무역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보충

응답 문서에 포함된 정보와 자료

(3)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대외경제무역부에 제출한 관련 정보와 자료

(4)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와 자료

제6조 대외경제무역부가 사건의 상황에 따라 현장실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대외경제무역부가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결정을 내린 후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초보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행하기도 한다.

제8조 대외경제무역부는 현장실사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받게 될 수출업자, 생산업자 및 소재국(지역) 정부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9조 대외경제무역부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현장실사가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동의를 얻으면, 대외경제무역부는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명칭, 주소 및 상의하여 결정한 대조조사 날짜 등 정보를 해당 소재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소재국(지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현지실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대외경제무역부는 현장실사 전에 구체적인 일정을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대조조사 팀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조직하고, 일반적으로 반보조금 조사 사건을 책임지는 정부인원으로 구성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는 비정부 전문가를 요청하여 대조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사전에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 및 해당 소재국(지역) 정부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비정부 전문가는 엄격하게 비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대조조사 팀은 현지실사 전에 확인이 필요한 정보의 일반 성질과 진일보 수집이 필요한 정보를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조조사 팀은 필요에 따라 현지실사 전에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에게 구체적인 대조조사 문제 리스트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는 응답 문서와 보충 응답 문서 중에서 제공한 정보에 관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보관 및 정리해 놓아 대조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상술한 증거자료의 원시 기록이 특정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는 대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해당 전자 데이터가 복사,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

제15조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는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조 조사 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최초 준비자료 및 응답 문서의 책임자와 기타 담당자를 배치하여 언제든지 대조조사 팀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사 업무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 또는 대조조사 팀이 동의한 기타 언어이다.

제17조 대조 조사 팀은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전면 대조 조사 또는 표본 추출 대조 조사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현장실사는 사전 통지된 범위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단 해당 범위는 대조 조사 팀이 획득한 정보와 자료에 따라 현장에서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 대조 조사가 끝난 후 대외경제무역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에게 대조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기타 이해관계 측의 요청에 따라 대조 조사 상황을 요약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단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기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대조 조사를 거친 응답문서 또는 보충 응답문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대조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보조금과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제21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외경제무역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접근 가능한 최고의 정보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1)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현장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 (2)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 소재국(지역) 정부가 현지실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3) 대조 조사 팀이 제기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 (4)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대조 조사를 지연시켜 대조 조사가 기한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 (5) 대조 조사에서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 등 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 (6) 피조사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명백한 사기,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 (7) 기타 현장실사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22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조사의 수요에 따라 관련 피조사 제품의 국내 수입업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대조 조사는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23조 수출업자, 생산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해당 소재국(지역) 정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는 직원을 해당 수출국(지역)에 파견하여 반보조금 설문조사를 해석할 수 있다.

제24조 본 규칙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해석한다.

제25조 본 규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관련 시행세칙(保障措施相关规章)〉

2.16.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부 총국령 제9호

2002년 2월 10일에 개최 된 장관 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조사 입안에 관한 잠정규칙〉〉 조항이 검토되고 승인되었으며 2002년 3월 13일에 발효된다.

부장 石广生, 2002년 2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 및 입안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본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대외무역및경제협력부 (이하 “MOFTEC”)는 수출입 공정 무역국을 지정하여 이 규칙의 실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3조 MOFTEC은 신청자의 신청으로 입안 결정을 내리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거나 자체 재량에 따라 자체입안 결정을 내리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신청

제4조 국내 산업과 관련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하 신청인이라 칭함)은 MOFTEC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MOFTEC이 세이프 가드 조사를 신청하고 신청인 또는 그의 법적 권한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확인하도록 정식 요청을 했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각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자 상황에 대한 설명
- (2) 조사 신청하는 수입 제품, 국내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에 대한 설명
- (3) 이미 알려진 조사 신청 수입제품의 수출국 (지역),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 관한 정보
- (4) 국내 산업 상황에 대한 설명
- (5)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수량 증가에 대한 설명
- (6)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
- (7) 수입 증가와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
- (8) 요청
- (9) 신청자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제7조 신청인의 정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 성명, 법정 대리인, 주소, 전화 번호, 우편 번호, 팩스 번호, 연락 담당자 등.

신청인이 위탁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 신청자는 대리인의 이름과 신원을 명시하고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수입 제품, 국내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수입 제품 조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는 이름, 유형, 사양, 제품 사용, 시장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 관세 코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국내 유사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이름, 유형, 규격, 제품용도, 시장 정보 등
- (3) 조사 신청 수입 제품과 국내(중국)의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 비교 :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생산 공정, 용도 및 대체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MOFTEC에서 판단하는 제공해야 할 다른 증거자료.

제9조 신청인은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지 이름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 알려진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수출업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국내(중국)산업 상황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이미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업체 및 연관협회, 상회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모든 생산업체의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국내생산 연간 총량
- (3)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신청인이 매년 생산한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량 및 국내 총생산 비중;
- (4) MOFTEC에서 판단하는 제공해야 할 다른 증거자료.

제11조 조사 신청 수입 제품 수량 증가 상황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매년 수입되는 제품의 수량과 양 (변경 곡선 차트에 표시)
- (2)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각 수출국(지역) 수출의 절대적 수량 및 각 국 (지역) 수출량의 조사신청 수입제품 총 수입량 비중
- (3)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조사 신청 수입 제품 및 국내 유사 제품 또는 직접 소비 제품의 총 국내 소비 비중을 수량 및 금액으로 설명
- (4) 수입 증가 원인 분석: 고려사항에는 지난 5 년간 제품에 부과 된 수입 관세,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또는 우대 및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수출기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5) MOFTEC에서 판단하는 제공해야 할 다른 증거자료.

제12조 신청인은 수출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된 객관적 및 계량 가능 요소 또는 지표, 특히 :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절대 값과 상대 값에 의해 수입의 비율과 양이 증가, 국내시장에서의 수입 비중 증가 그리고 판매, 생산, 생산성, 활용, 손익 및 고용 변화
- (2) 유사한 국내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가격에 대한 신청 조사 수입제품 가격의 영향에 관한 증거 자료
- (3) MOFTEC에서 판단하는 제공해야 할 다른 증거자료

제13조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조사 수입제품 수출국의 수출 능력, 재고현황 및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증거 자료
- (2) 본 규칙 제 12조 (1)호에서 제시한 요소 또는 지표들의 분명한 변화 추이.

제14조 신청자가 조사 신청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 제출 시 국내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을 단독 확인해야 한다. 국내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의 생산을 단독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내 유사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군 및 범위에 대하여 생산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제15조 수입 증가 및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출한 상기 자료를 분석하고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증명 시 수입 증가의 산업 피해에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해야 하며 이런 요소에는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 패턴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업체의 무역 관행 제한 및 그들 사이의 경쟁, 기술발전 그리고 국내 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을 등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신청인이 상기 개별 요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신청인은 신청서에 세이프가드 요구를 명시해야 하고 세이프 가드의 형식, 구체적 내용, 기한 및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은 임시 세이프가드의 실행을 동시 신청 시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친 심각한 피해 또는 미치고 있는 심각한 피해, 예를 들면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미칠 치명적 피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은 본 장에 제공된 증거를 제출 시 증거의 출처를 진술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서에 기밀 자료가 포함 된 경우 신청인은 기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밀 자료의 경우 신청인은 사건 다른 관계자에게 기밀 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비기밀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비기밀 개요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세이프 가드 조사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자료는 중국어 간체 인쇄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 통일 규범 용어를 가지고 있다면 규범적인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 한 증거가 외국어 인 경우 신청인은 자료의 외국어 전문을 제공하고 중국어 번역본의 관련 부분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신청 및 부가 증거 자료는 기밀문서(신청인이 기밀 신청한 경우)와 공개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기밀문 원본 1부, 사본 6부; 공개문서는 원본 1부, 사본 6부의 신청인은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의 수출국(지역)의 수량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 신청 수입 제품 수출국(지역) 수량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감량하되 최소 5부는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신청인은 수출입 공정 무역국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정보의 전자 데이터 매체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신청인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및 증거 자료를 수출입 공정 무역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신청인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수출입 공정 무

역국은 신청서에 서명한다. 수령일은 수출입 공정 무역국이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수령 한 날이다.

제25조 MOFTEC은 조사 및 공개 발표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제출 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입안

제26조 수출입 공정 무역국은 설문지 또는 현장 검증의 방식으로 신청서 및 증거자료 중 신청인의 자격과 조사 신청 수입 제품을 포함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MOFTEC는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요청 서면 신청서를 정식 접수 한 후 60일내에 입안결정을 내린다. 특별히 복잡한 상황일 경우 검토를 위한 기한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 공정 무역국은 본 규칙 제 27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의 조정이나 보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청인이 조정이나 보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요구에 따라 내용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보충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29조 MOFTEC에서 입안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입안 거부 결정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입안 거부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30조 MOFTEC에서 입안 결정을 내린 경우 입안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명시해야 한다.

(1) 조사 신청 수입제품의 명칭 및 설명

- (2) 조사 신청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 (3) 입안 의거 자료의 개요 및 설명
- (4) 세이프가드 조사 시작 일
- (5)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
- (6) 이해관계측에서 의견 제출을 허가하는 제시간
- (7) 조사 기관의 연락처.

제31조 MOFTEC는 입안 조사 결정을 내린 후 7일 (영업일 기준)내에 세계 무역기구 안전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세이프가드 조사의 입안 일은 입안 조사 결정 공고일로 지정한다.

제4장 직권입안

제33조 MOFTEC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서면 신청서를 받지 못했지만 국내 산업이 조사신청 수입제품 수량의 증가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 또는 위협을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자체 재량에 따라 직권입안 결정을 내리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 MOFTEC 자체입안,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시 관련 증거 자료는 본 규칙 제 2 장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5조 본 규칙은 해석은 MOFTEC에서 책임진다.

제36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에 발효된다.

2.17.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2년 제11호

제1조 세이프 가드조사의 공평, 공정,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이프가드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세이프가드 조사과정중 수입물량증가와 그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 적용한다.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수출입공정무역국(이하 “수출입공정무역국”) 구체적으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4조 본 규칙에 의하여 공청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비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프라이버시에 연관된다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만약 수출입공정무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본 규칙이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세이프 가드 조사의 신청인, 수출국(지역)정부, 원산국(지역)정부,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과 개인을 말한다.

제8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에 공청회개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 (1) 공청회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기타 상황
- (2) 신청사항
- (3) 신청이유.

제9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자의 공청회개최 서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한다.
- (2)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유
- (3) 각 이해관계자들이공청회 시작 전 등록할 시간, 장소 및 관련 요구 사항
- (4) 기타 공청회 관련 사항.

제11조 각 이해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후 고지한 내용과 요구에 근거하여 수출입공정무역국에 등록하고 공청회에서 발언요지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공청회 공지 때 확정된 등록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시간, 장소, 공청회사회자, 공청회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하며 등록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공청회사회자는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공청회의 진행에 대한 사회를 본다.
- (2) 공청회 참가인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 (3) 공청회 질서를 유지한다.
- (4) 각 이해관계자 측에 질문을 한다.
- (5) 각 이해관계자 측이 보충증거 제출여부와 이미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감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 (6) 공청회를 중단 혹은 종결 결정
- (7) 공청회중 결정해야 할 기타사항.

제14조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는 법정 대표자나 주요책임자가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고 1명 혹은 2명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와서 공청회에 출석한다.
- (2) 공청회 규율을 준수하고 공청회사회자의 안내에 따른다.
- (3) 공청회사회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한다.

제16조 공청회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1)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시작을 선포하고 청문회 규율을 낭독한다.
- (2) 공청회 참가자를 확인한다.
- (3) 이해관계자가 진술한다.
- (4) 공청회사회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질문한다.

(5) 이해관계자가 최후진술을 한다.

(6) 사회자가 공청회 종결을 선포한다.

제17조 공청회는 조사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며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제18조 공청회는 기록을 하여야 하고 공청회사회사, 기록인, 공청회에 참가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사인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사인이나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 청문회사회자는 이 사항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19조 다음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의 결정을 거쳐 청문회진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공청회신청인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행위로 인해 청문회가 연기 혹은 취소신청을 서면으로 했을 때
- (2) 세이프 가드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 (3) 기타 연기 또는 취소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20조 공청회 개최를 연기해야 할 이유가 해제되면 수출입공정무역국은 공청회를 즉각 회복해야 하며 등록 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칙이 정한 통지방식은 대외경제협력부 공고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2조 공청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이다.

제23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본 규칙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24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18.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대외무역경제협력부 2002년 제38호

제1조 세이프가드조치를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조례》의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이하 대외경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조례》의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입안 공지와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판정 공고(이하 세이프가드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세이프가드조치 입안 수사에 해당되는 제품 범위 및 세이프가드조치에 적용되는 제품 범위를 확정하고, 세관은 공고에 규정된 날로부터 즉시 실시한다.

제3조 세이프가드에 대한 공고가 실시되는 기간에 세이프가드 제품 범위의 대한 모든 조정은 대외경무부가 발표한 대외 공고 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세관은 공고되는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외경무부에 실시하는 세이프가드 공고에 나타나는 제품 범위에 대한 조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 공고에 나타나는 제품 범위에 대한 조정은 신청, 대외경무부의 접수, 조사, 결정 및 공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절차

- (1)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입안 공고를 발표한 후, 해당 이해당사자가 조사를 받을 제품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고에 규정된 시간

내에 혹은 대외경무부에 승인을 받아 연장된 시간 내에 조사 제품 범위 조절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 (2)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일차 판정 공고를 발표한 후, 해당 이해당사자가 조사를 받을 제품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고에 규정된 시간 내에 혹은 대외경무부에 승인을 받아 연장된 시간 내에 조사 제품 범위 조절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 (3) 본 규정이 지칭하는 이해당사자는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자, 해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 (4)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이름 및 신청자 개요, 조정 신청할 제품
- (2) 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이유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증거
- (3) 조정 신청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세번호, 물리적 특정, 화학적 특성 등, 해당 제품의 유일성 및 배타성을 드러낼 정도까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제품의 유일성 및 배타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4) 조정 신청할 수입제품과 국내에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 그리고 대체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 (5) 조정 신청할 수입제품의 5년내 수입량, 수입 금액 및 향후 3년 간 예측한 수입량

- (6) 해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후속 사용자(또는 업체)
- (7) 신청자의 법정 대표인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7조 접수, 조사, 결정 및 공고 절차

- (1) 대외경무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한다.
- (2) 대외경무부는 설문조사, 현장실사, 공청회 등 방식을 통하여 신청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3) 대외경무부는 신청 내용 및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을 제기한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이익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품에 대한 서술과 설명 등 상황에 대하여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논증을 진행할 수 있다.
- (4) 상술한 절차에 따라 대외경무부는 세이프가드 제품 범위 조정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공고를 해야 한다.
- (5) 대외경무부가 제품 범위 조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에 근거하여 제품 범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 (6)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최종결정이 실시된 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상술한 절차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고, 대외경무부가 공고한다.

제8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품 범위의 조정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9조 본 규칙은 대외경무부가 해석한다.

제10조 본 규칙은 공포된 후 30일부터 실시한다.

〈산업피해 관련 시행세칙(产业损害相关规章)〉

2.19. 산업피해조사 공청규칙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제44호

제1조 산업피해조사 공청 활동을 위해 공청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보조금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이프가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아래 “국가위원회”)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 가드 조사 단계에서 열리는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조사국은 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조직한다.

제4조 산업피해 조사 청취는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가 기밀과 상업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청회가 열린다.

제5조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 가드조사 의뢰인, 신청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산업 피해 및 인과 관계에 대해 산업 피해 및 그 인과 관계를 요구하고 아울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 가드의 조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공청회출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피해조사공청신청서는 공청회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및 연락방식, 신청 사항과 기타 유효한 사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조직하고 개최할 경우, 20일전에 개최사실을 밝히고, 공청사유, 시간, 주소, 해당 요구 사항 등은 공지나 서면으로 해당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이해 관계자는 산업피해조사공청회 공고문에 명시 된 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청회 발언 일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범용 언어 문자 정보 청원 10부를 준비한다.

제9조 공청 당사자들은 이미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공청회에 등록된 참가자이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를 제출한 신청자, 피신청인, 이해 관계자,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공청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 10일 전 공청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여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공청 진행자는 보통 3~5명, 그 중 1명은 수석 공청 사회자를 담당한다.

제12조 공청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회피해야 하며, 각 이해 관계자들은 그 공청진행자를 회피할 수 있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다.

- (1) 본 사건 이해관계자 측의 법정대표자나 혹은 이해관계자의 위탁대리인과 근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3) 본 사건과 이해관계자와 기타관계가 있으며 공청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회피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피 여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공청 진행자는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시행한다.

- (1) 공청회 사회를 본다.
- (2) 공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 (3) 공청 당사자에게 질문한다.
- (4) 공청 당사자에 대한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제시된 증거에 대한 검증여부 결정한다.
- (5) 중지 또는 연기 또는 종결을 결정한다.
- (6) 공청 질서 유지, 공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제지한다.
- (7) 공청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한다.

제14조 공청 당사자는 기타 법정 대표인과 혹은 주요책임자를 공청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을 위임하여 공청에 참가 할 수 있다. 대리인이 공청에 참석하려면 등록과 동시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공청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 (1) 제 시간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공청에 출석한다.
- (2) 공청 절차를 준수하고 공청 진행자에 안내에 따른다.
- (3) 공청 진행자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 (4) 제기한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

제16조 공청회 시작 전 공청회 진행자는 공청 당사자 신분 및 대리인 자격

을 확인 하고, 공청 규율을 낭독하고, 공청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 한다.

제17조 공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1) 수석 공청 진행자들은 공청회 시작을 선포하고, 사건의 개요를 낭독 한다.
- (2) 공청 신청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 한다.
- (3) 공청 당사자들이 진술한다.
- (4) 공청 당사자들이 마지막 진술을 한다.
- (5) 수석진행자는 공청회 폐회를 선언한다.

제18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산업 피해 조사 기관들은 공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각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9조 공청회는 기록을 작성해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청회 진행자는 공청 기록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공청 당사자들이 공청회에서 증언한 구두 발언과 진술은 공청회 종료 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 경제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보완 증거도 공청일인 10일 이내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다음과 같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

- (1) 공청 신청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청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
- (2) 기타 공청회 중단 상황

제22조 공청회 중단원인이 해결 된 후 공청회를 재개해야 한다.

제23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

- (1) 공청회 신청자가 공청신청을 철회했을 경우
- (2)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 (3) 기타 공청 중단 상황

제24조 제21조와 제23조에 근거하여 공청회가 중단 또는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공청 진행자 확정 전에는 국가경제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청 진행자가 확정 된 후에는 공청 진행자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본 규칙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해석한다.

제26조 본 규칙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실행한다. 동시 1999년 10월 27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업 피해 제정 공청 규칙〉이 폐지된다.

2.20.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규정

상무부령 2003년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의하여 (이하 “반덤핑조례”) 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덤핑조례에 따른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관련활동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이하 “상무부”)는 반덤핑 산업 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농산품에 관련 된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는 상무부와 농업부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제2장 피해 인정

제4조 피해라고 함은 덤핑이 이미 조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치거나 실질적 피해위협이 있거나 국내 산업 조성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 피해는 국내 산업에 이미 영향을 준, 소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가리킨다.

실질적 피해위협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예측가능한 실질적 피해와 긴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명확한 것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 요소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와 실질적 피해 위협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국내산업의 발전을 엄중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제5조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면 아래 사항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1)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과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
- (2)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6조 덤핑 수입제품 수량에 대한 심사는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적인 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는지 혹은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 혹은 소비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에 주는 영향을 심사할 때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 비교를 심사하고,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을 대폭 할인판매하는 지 여부 혹은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을 대폭 하락시켰는지 여부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 증대를 심각하게 억제하였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제7조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을 심사할 때 국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경제요소와 지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율, 투자 수익 상황 혹은 설비이용율의 실제 또는 잠재적 하락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현금의 유동성, 재고, 취업, 월급, 산업증가, 자금조달 및 투자능력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실제 혹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실질적 피해는 분명히 예견되는 것과 임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실질적 피해 위협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고발, 추측 혹은 극히 적은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아니 된다.

실질적 피해위험을 확정할 때 반드시 이하의 요소에 근거하여 심사해야 하나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제품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우
- (2) 수출업체가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수입원 시장에 진출한 덤핑수출이 실질적인 증가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 이러한 지표를 적용할 때에는 별도의 수출시장 추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3) 수입품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경우
- (4) 피조사 제품의 재고 상황

제9조 국내 산업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 요소를 확정할 때 제8조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국내산업 조성 및 기획 상황
- (2) 국내 수요의 성장 상황 및 그 영향
- (3)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
- (4) 덤핑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 시장에서의 발전 추세

제10조 동종제품이라고 함은 덤핑 수입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가리킨다. 동일한 제품이 없으면 덤핑 수입제품과 특성이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 제품으로 한다.

제11조 동종 제품을 확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생산 설비와 기술, 제품용도, 제품의 대체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 경로, 가격 등

제12조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 동종 제품 생산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만약 생산기술, 생산자의 매출과 이윤 등의 기준에 따라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과 기타 제품 생산에 대해서 단독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 그룹 또는 범위 내의 제품 생산에 따라 덤핑 수입 제품의 영향을 확정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제품 그룹이나 제품범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국내 산업을 결정할 때는 중국 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혹은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이지만 그러나 국내 생산자와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 자체가 덤핑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인 경우는 국내 산업에서 제외 된다.

앞서 언급한 관련이라고 함은 그 중 한쪽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한쪽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혹은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제14조 지역 산업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동종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해당 지역시장에서 판매한다.
- (2) 해당 지역시장의 수요는 전부 혹은 대부분이 국내 다른 지역의 동종 제품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3) 기타 요소

제15조 덤핑 수입 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었고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덤핑 수입제품에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을 누적 평가할 수 있다.

- (1) 각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 제품의 마진은 2% 이상이며,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닌 경우
- (2) 덤핑수입제품 간 및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경쟁 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라고 함은 한 국가(지역)에서 수입한 덤핑 수입제품이 동종제품 전체 수입량의 3%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3% 미만 일지라도 동종제품의 전체 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제16조 누적평가 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1) 국가별(지역별) 덤핑 수입품은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우
- (2) 국가별(지역별)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대체가능 정도, 특정 고객의 요구 사항 및 제품 품질 등에 관한 요소
- (3) 국가별(지역별)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이 동일 지역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실제 거래 가격

- (4) 국가별(지역별)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매 경로가 있는지와 시장 동시 출현 여부
- (5) 덤핑 수입제품 간 및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기타 경쟁 조건
- (6) 기타 요소.

제17조 상무부는 산업 피해 조사를 진행할 때 덤핑 수입제품의 사용자, 소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덤핑 사건의 산업 피해 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입건 조사 시작 전 3~5년이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9조 이해 관계자는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할 때 반보조금 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응소신청을 하고 응소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피해 조사 기간 내에 응소신청인의 생산 능력, 생산량, 재고 및 건설 및 증축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이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 물량 및 금액 등 상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이해 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피조사제품의 외국(지역)생산자,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 또는 이 제품의 생산자, 수출업자수입업자, 수입업자의 업종 조합 또는 기타 조직
- (2) 피조사제품의 원산국(지역), 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대표

(3)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혹은 본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의
업종 조합 또는 기타 조직

(4) 기타.

제21조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반드시 영업 허가증 등 등기 증명, 법정 대표자 신분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뢰해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명서류 및 권한위탁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경우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중국 직업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하며 권한위탁서, 변호사사무소의 영업허가증, 변호사개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상무부 반보조금 산업 피해 조사 대상에는 국내 생산자, 국내 수입업자, 내국인 구매자, 국내 최종 소비자, 국외 수출자 국외 생산자 등이 포함된다.

제23조 상무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산업, 재무, 경제무역,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상업부에서 설문 조사, 표본 추출, 공청, 기술 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산업 피해 조사를 진행 한다.

제25조 상무부가 이해 관계자에게 발부한 조사 설문지는 국내 생산자용, 국내 수입자용, 국외 생산자용, 국외 수출자용 등 기타 유형의 조사 설문지이다.

제26조 이해 관계자 측은 설문지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 혹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답안지 제출 마감일 7일 이전에 상무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장 승인 여부는 상무부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상무부는 이해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실사에 앞서 실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이해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혹은 조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지역)의 동의를 얻은 후 상무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지역)에 가서 관련제품의 생산능력, 자금 투입, 재고, 원산국 또는, 기업 간의 관계 등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상무부는 이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도 자발적으로 상무부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피해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 산업 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증거가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자료의 비기밀개요를 상무부에 제출하거나 이 자료의 기밀문서와 공개문서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기밀개요와 공개 문서는 반드시 비밀 정보의 실질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인 내용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 상무부는 관련 내용과 증거자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산업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들이 자료 및 관련 증거의 비기밀개요나 공개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비기밀개요나 공개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상무부는 그 자료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상무부가 만약 제공받은 자료가 비밀보장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자에게 비밀보장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산업피해 조사 과정에서 산업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엄중하게 방해하면, 상무부는 이미 획득된 사실과 획득 가능한 최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재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34조 산업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가 상무부에 어떤 문건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중국어로 된 원본 1식 5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상응한 파일 문서(컴퓨터 플로피 디스켓)를 1식 3부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상무부 산업피해 조사는 국가언어문자 담당 부서에서 규정한 규범화 된 중국어를 공식 언어와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문건이나 자료, 정보는 규범화 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로 되어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중국어번역본과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어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어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보지 않는다.

제36조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37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했던 《반 보조금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규정》(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2년 46호) 이 폐지된다.

2.21. 반보조금산업피해조사규정

상무부령 2003년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반보조금 산업피해조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이하 “반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반보조금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산업피해조사 관련활동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아래 “상무부”)는 반보조금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한다. 농산품에 관련된 반보조금 산업피해 조사는 상무부와 농업부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제2장 피해 인정

제4조 피해라고 함은 보조금이 이미 조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치거나 실질적 피해위협이 있거나 국내 산업조성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 피해는 국내 산업에 이미 영향을 준, 소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가리킨다.

실질적 피해위협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예측 가능한 실질적 피해와 긴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표명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요소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와 실질적 피해 위협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국내산업의 발전을 엄중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제5조 보조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면 아래 사항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1) 보조금 수입제품의 수량과 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에 주는 영향
- (2) 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조금 수입제품 수량에 대한 심사는 보조금 수입제품의 절대적인 수량이 대폭 증가했는지, 혹은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 혹은 소비수량이 대폭 증가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에 주는 영향을 심사할 때,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 비교를 심사하고, 보조금 수입제품의 가격을 대폭 할인판매 하는 지 여부 혹은 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을 대폭 하락시켰는지 여부,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 증대를 심각하게 억제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을 심사할 때, 국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경제요소와 지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율, 투자 수익 상황 혹은 설비이용율의 실제 또는 잠재적 하락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보조금의 크기, 현금 유동성, 재고, 취업, 월급, 산업증가, 자금조달 및 투자능력이 실제 혹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농산품에 관련된 사건은 정부지지계획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확정할 때 보조금의 성질과 무역에 초래되는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

제8조 실질적 피해는 분명히 예견되는 것과 임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 피해 위협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오직 고발, 추측, 혹은 극히 적은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피해위험을 확정할 때 반드시 이하의 요소에 근거하여 심사해야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보조금의 성질과 무역에 초래되는 영향
- (2)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수입제품의 대폭 증가율이 나타날 때
- (3)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수입제품 생산자의 생산능력 증대가 나타날 때. 이 지표를 채택할 시에는 기타 국가(지역)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증가된 수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 (4)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억제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가능성 여부
- (5) 피조사 제품의 재고 상황

제9조 국내 산업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요소를 확정할 때 아래의 요소를 반드시 심사해야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국내산업 조성 및 기획 상황
- (2) 국내 수요의 성장 상황 및 그 영향
- (3) 보조금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

(4) 보조금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 시장에서의 발전 추세

제10조 동종제품이라고 함은 보조금 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가리킨다.

동일한 제품이 없으면 보조금 수입제품과 특성이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한다.

제11조 동종제품을 확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생산설비와 기술, 제품용도, 제품의 대체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 경로, 가격 등

제12조 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 동종 제품 생산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만약 생산 공예, 생산자의 매출과 이윤 등의 기준에 따라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과 기타 제품 생산에 대해서 단독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 그룹 또는 범위 내의 제품 생산에 따라 보조금 수입제품의 영향을 확정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제품 그룹이나 제품범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국내 산업을 결정할 때는 중국 내 동종 제품의 모든 생산자 혹은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 그러나 국내 생산자와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 자체가 덤핑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인 경우는 국내 산업에서 제외 된다

앞서 언급한 관련이라고 함은 그 중 한쪽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한쪽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혹은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제14조 지역 산업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 (1)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동종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해당 지역시장에서 판매한다.
- (2) 해당 지역시장의 수요는 전부 혹은 대부분이 국내 다른 지역의 동종 제품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3) 기타 요소

제15조 보조금 수입 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었고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덤핑 수입제품에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을 누적 평가할 수 있다.

- (1) 각 국가(지역)의 보조금액이 소량의 보조금이 아닌 경우, 아울러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 (2) 보조금 수입제품 간 및 보조금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경쟁 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 언급한 “소량의 보조금” 이라고 함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발전도상국가(지역)의 보조금 수입제품의 “소량의 보조금”이라고 함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누적 평가 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1) 국가별(지역별)보조금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우
- (2) 국가별(지역별) 보조금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대체가능 정도, 특정고객의 요구 사항 및 제품 품질 등에 관한 요소까지 포함한다.

- (3) 국가별(지역별) 보조금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이 동일 지역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실제 거래 가격
- (4) 국가별(지역별) 보조금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매 경로가 있는지 여부와 시장 동시 출현여부
- (5) 보조금 수입제품 간 및 보조금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 간의 기타 경쟁 조건
- (6) 기타 요소.

제17조 상무부는 산업 피해 조사를 진행할 때 보조금 수입제품의 사용자, 소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보조금 사건의 산업 피해 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입건조사 시작 전 3~5년이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9조 이해 관계자 측은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할 때 반보조금 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응소신청을 한 후 응소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피해 조사 기간 내에 응소신청인의 생산 능력, 생산량, 재고 및 건설 및 증축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이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 물량 및 금액 등 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20조 이해 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피조사 제품의 외국(지역)생산자,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 또는 이 제품의 생산자, 수출업자수입업자, 수입업자의 업종 조합 또는 기타 조직

- (2) 피조사 제품의 원산국(지역), 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대표
-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혹은 본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의
업종 조합 또는 기타 조직
- (4) 기타.

제21조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반드시 영업 허가증 등 등기 증명, 법정 대표자 신분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뢰해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명서류 및 권한위탁서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경우 중국변호사 사무소와 중국직업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하며 권한위탁서, 변호사사무소의 영업허가증, 변호사개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상무부 반보조금 산업 피해 조사 대상에는 국내 생산자, 국내 수입업자, 내국인 구매자, 국내 최종 소비자, 국외 수출자 국외 생산자 등이 포함된다.

제23조 상무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산업, 재무, 경제무역,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제24조 상업 부에서 설문 조사, 표본 추출, 공청, 기술 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산업피해 조사를 진행 한다.

제25조 상무부가 이해 관계자에게 발부한 조사 설문지는 국내 생산자용, 국내 수입자용, 국외 생산자용, 국외 수출자용 등 기타 유형의 조사 설문지이다.

제26조 이해 관계자 측은 설문지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 혹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답안지 제출 마감일 7일 이전에 상무 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장 승인 여부는 상무부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상무부는 이해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실사에 앞서 실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이해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혹은 조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지역)의 동의를 얻은 후 상무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지역)에 가서 관련제품의 생산능력, 자금 투입, 재고, 원산국 또는, 기업 간의 관계 등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상무부는 이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도 자발적으로 상무부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피해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 산업 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증거가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자료의 비기밀개요를 상무부에 제출하거나 이 자료의 기밀문서와 공개문서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기밀개요와 공개 문서는 반드시 비밀 정보의 실질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인 내용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 상무부는 관련 내용과 증거자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산업 피해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들이 자료 및 관련 증거의 비 기밀개요나 공개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비 기밀개요나 공개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상무부는 그 자료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상무부가 만약 제공받은 자료가 비밀보장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자에게 비밀보장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산업 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엄중하게 방해하면, 상무부는 이미 획득된 사실과 획득 가능한 최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재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34조 산업 피해 조사를 응소 한 이해 관계자가 상무부에 어떤 문건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중국어로 된 정본 1식 5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상응한 파일 문서(컴퓨터 플로피 디스켓)를 1식 3부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상무부 산업피해 조사는 국가언어문자 담당 부서에서 규정한 규범화 된 중국어를 공식 언어와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문건이나 자료, 정보는 규범화 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로 되어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중국어번역본과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어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어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보지 않는다.

제36조 본 규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7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했던 《반보조금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규정》(국가 경제 무역 위원회 2002년 46호) 이 폐지된다.

2.22.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규정

상무부령 2003년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 세이프 가드 산업피해조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이프가드조례》(이하 “세이프가드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이프가드 조례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 관련 활동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산업 피해 조사를 담당한다. 농산품에 관련 된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는 상무부와 농업부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제2장 피해 인정

제4조 피해라고 함은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동종 제품을 생산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이 받은 전반적이고 중대한 손실이다.

심각한 피해위험은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이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수입 물량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험을 확인할 때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수입제품의 증가 상황, 수입제품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증가율과 증가량
- (2) 증가한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 (3)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산업의 생산량, 판매 수준, 시장 점유율, 생산율, 설비 이용률, 이윤과 손실, 취업 등 요소에 대한 영향을 포괄한다.
- (4)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기타 요소

심각한 피해위험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의거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제품 수출국가의 생산 능력, 재고상황, 수출 능력, 중국으로의 수출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고 고발, 추측 혹은 극히 적은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상무부는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할 때 확실한 증거와 국내산업 상황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각종 계량화 된 지표에 근거해야 하며 개별 지표에만 근거하여 판정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동종제품이라 함은 피조사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을 경우, 피조사제품과 특성이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제품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고 함은 피조사 수입 제품 동종 제품이 아니지만 피조사 수입제품과 비슷한 용도와 비교적 높은 대체가능성 있는 경우 직접경쟁관계의 제품이라고 말한다.

제8조 동종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제품을 확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생산 설비와 기술,

제품의 용도, 제품의 대체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 경로, 가격 등

제9조 상무부는 산업 피해 조사 시 수입제품 사용자, 소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세이프가드 안전의 산업피해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안조사시작 전 3~5년이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1조 이해 관계자는 세이프 가드 산업피해조사활동참여를 신청할 경우 세이프 가드 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조사활동 참여 신청을 하고 관련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세이프 가드 산업 피해 조사 중에 산업피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상응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이해 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피조사제품의 외국(지역)생산자,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 또는 이 제품의 생산자, 수출업자수입업자, 수입업자의 업종 조합 또는 기타 조직
- (2) 피조사제품의 원산국(지역), 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대표
- (3)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혹은 본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의 업종 조합 또는 기타 조직
- (4) 기타

제13조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반드시 영업 허가증 등 등기 증명, 법정 대표자 신분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뢰해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명서류 및 권한위탁서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경우 중국변호사 사무소와 중국직업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하며 권한위탁서, 변호사사무소의 영업허가증, 변호사 개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상무부 세이프가드 산업 피해 조사 대상에는 국내 생산자, 국내 수입업자, 내국인 구매자, 국내 최종 소비자, 국외 수출 자 국외 생산자 등이 포함된다.

제15조 상무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산업, 재무, 경제무역,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상업부에서 설문 조사, 표본 추출, 공청, 기술 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산업피해 조사를 진행 한다.

제17조 상무부가 이해 관계자에게 발부한 조사 설문지는 국내 생산자용, 국내 수입자용, 국외 생산자용, 국외 수출자용 등 기타 유형의 조사 설문지이다.

제18조 이해 관계자 측은 설문지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 혹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답안지 제출 마감일 7일 이전에 상무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장 승인 여부는 상무부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상무부는 이해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실사에 앞서 실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이해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혹은 조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지역)의 동의를 얻은 후 상무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지역)에 가서 관련제품의 생산능력, 자금 투입, 재고, 원산국 또는, 기업 간의 관계 등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상무부는 이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도 자발적으로 상무부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피해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산업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증거가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자료의 비기밀개요를 상무부에 제출하거나 이 자료의 기밀문서와 공개문서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산업 피해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들이 자료 및 관련 증거의 비기밀개요나 공개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비기밀개요나 공개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상무부는 그 자료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상무부가 만약 제공받은 자료가 비밀보장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자에게 비밀보장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산업 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엄중하게 방해하면, 상무부는 이미 획득된 사실과 획득 가능한 최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재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26조 산업피해 조사를 응소한 이해 관계자가 상무부에 어떤 문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중국어로 된 정보 5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상응한 파일 문서(컴퓨터 플로피 디스켓)를 3부 제출해야한다.

제27조 상무부 산업피해 조사는 국가언어문자 담당 부서에서 규정한 규범화 된 중국어를 공식 언어와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문건이나 자료, 정보는 규범화 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 중국어로 된 자료는 중국어 번역본 및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어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어로 되어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중국어번역본과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어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어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보지 않는다.

제28조 본 규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9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했던 《세이프가드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규정》(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2년 46호)이 폐지된다.

저자 소개

최승환 (崔昇煥)

최승환은 1990년 5월 미국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8년 8월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중법학회 회장, WTO 패널위원(후보자명부 등재), 중국 威海(中韓)중재위원회 중재원,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국제법」 (공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6), 「EU 보조금규칙 및 상계관세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WTO 농산물분쟁사례연구」 (법무부, 2003), 「GATS 해설서」 (공저: 법무부, 2000) 등이 있다.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 발행일 | 2018년 8월

| 발 행 | 법무부 국제법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 2110-3661~2
Fax. 02) 2110-0327

| 인 쇄 | 동광문화사 ☎ 02) 503-5165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996-14